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2026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군 인 연 금 기 금
군 인 복 지 기 금

2025.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제1장 202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

Ⅰ. 총괄 ····· 3

1. 세입·세출예산안 ····· 3
2. 기금운용계획안 ····· 4
3. 국고채무부담행위 ····· 5
4. 명시이월비 ····· 6
5. 참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 6

Ⅱ.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7

1. 세입예산안 개요 ····· 7
2. 세출예산안 개요 ····· 8

Ⅲ.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9

1. 군인연금기금 ····· 19
2. 군인복지기금 ····· 21

Ⅳ. 참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개요 ····· 23

1.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 23
2. 2026년도 BTL 정부지급금 ····· 23

제2장 검토의견 ····· 25

1. 총괄적 검토 ····· 27

(1) 국방 분야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계획 분석 ····· 27

(2) 국방인공지능 사업 추진체계 재검토 필요 ····· 32

(3) 드론 전력 안착을 위한 면밀한 사업 집행 필요 ····· 37

2. 일반회계 ····· 44

(1) 부사관 인건비(1101-152) : 국방부 소요 대비 과다 편성된 650억원 감액 필요 · 44

(2) 군무원인건비(1102-151) : 국방부 소요 대비 과다 편성된 554억원 감액 필요 · 47

(3) 건강보험부담금(1105-301) : 국방부 소요 대비 과다 편성된 252억원 감액 필요 · 51

(4) 기본급식(1231-301) : 군량곡 군수마크 예외적 미표시 개정 필요·민간 위탁급식의 장기계속계약 방식에 대한 법령적 보완 필요 ····· 55

(5) 민간조리원 운영(1231-305) : 잉여재원 민간조리원 처우개선사용 검토 필요 / 80명 미만 취사장 등 부대 조리자격증 병사 배치율 제고 노력 필요 ···· 63

(6) 기본피복(1241-301) : 피복류 시제품 제작예산 사전 편성 노력 필요 / 육군 베레모 보급중단 관련 집행관리 철저 필요 ····· 70

(7)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2131-301) : NPU 기반 영상감시체계 구축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 ····· 75

(8) 통신시설(2131-305), 경계 및 작전시설(2533-321) : 합동참모본부 통신실 환경개선공사 사업비 반영 필요 ····· 81

(9) 진료지원(2231-301) : 응급진료업무보조비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강화 필요 ····· 85

(10) 보건복지지원(2232-303) : 5년차 이상 여성인력에 대한 의무상담 폐지에 따른 해당 업무추진비 감액 필요 ····· 89

(11) 기동장비(2331-301) : 집행불능 예산 감액 필요 ····· 92

(12) 화력장비(2331-302) : 집행불능 예산 감액 필요 ····· 95

(13) 항공장비(2331-303) : 집행불능 예산 감액 필요 ····· 98

(14) 함정장비(2331-304) : 집행불능 예산 감액 필요 ····· 101

(15) 통신전자장비(2331-305) : 집행불능 예산 감액 필요 ····· 104

(16) 일반장비(2331-306) : 집행불능 예산 감액 필요 ····· 107

(17) 정밀측정장비(2331-308) : 집행불능 예산 감액 필요 ····· 111

(18) 정비장비(2331-309) : 집행불능 예산 감액 필요 ····· 114

(19) 특수장비(2331-307) : 집행불능 예산 감액 필요 ····· 118

(20) 병참물자(2332-302) : 체육비품 예산 연차별 보급계획 및 군별 배분계획 종합적 수립·관리 필요 ····· 121

(21) 화력장비(유지)(2333-306) :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감액조정 필요 · 124

(22) 함정장비(유지)(2333-308) : 함정 MRO 선행연구 조기 추진 등 ····· 127

(23) 수송활동(2336-301) : TMO지원 대상 휴가 확대 검토 필요 / 군차량 보험 장기계속계약 방식에 대한 법령적 보완 필요 / 미반영된 교육용 상용드론 보험료 증액 검토 필요 ····· 132

(24) 재난 및 안전관리(2337-301) : 안전교육 콘텐츠 적극적 제작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 필요 ····· 141

(25) 지상교육용탄약(2339-301) : 합리적인 사격훈련계획 수립 필요 …… 145

(26) 전력지원체계지원(2341-302) : 인건비 교부시 집행잔액 확인 철저 필요 / 내실 있는 구매요구서 작성 및 시장조사 능력 배양 교육 실시 필요 …… 149

(27)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R&D)(2341-500) : 국회 심의과정에 과제선정 기준, 우선 연구분야 및 성과지표·성과목표·사후관리 방안 등을 제출 필요 등 …… 157

(28) 국내외 전문군사교육(2432-304) : 과다편성된 해외대학 위탁교육사업의 과정비를 체재비로 조정 필요 …… 164

(29) 자기개발교육(2432-308) : 맞춤형 e북 지원 신설에 따른 효과적인 사업체계 구축 필요 …… 167

(30) 국방AI인재양성(2439-302) : 면밀한 사업준비를 통하여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의 체계적인 추진 필요 …… 171

(31) 정훈문화활동(2435-301) : 기존 사업과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병영 문화프로그램 시범 실시 필요 …… 176

(32) 공통교보재지원(2438-303) : 국방부의 국산 상용드론 도입 계획에 따른 적정 도입 물량·단가 논의 필요 …… 181

(33) 인사정책지원(2439-306) : 장애인고용의무 이행률 향상을 통한 연례적인 고용부담금 초과지출 재발 방지 필요 …… 186

(34) 병영생활관 (2531 - 301)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감안한 예산 감액 필요 …… 190

(35) 병영기본지원시설 (2531 - 304) : 신규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 예산의 과다 편성분 감액 필요 …… 194

(36) 관사 및 간부숙소 (2532-301) : 해병대 9여단 간부숙소 건축방식 변경

검토 필요 ····· 200

(37) 일반지원시설 (2533-303) : 군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 태양광 설비 도입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감독 필요 ····· 205

(38) 시설유지관리 (2536-301) : 계획보수 예산 편성 방식 개선 필요 ····· 211

(39) 동원훈련(2632-303) : 비상근 예비군 훈련보상비 현실화 필요 ····· 215

(40)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사업 및 지원비 (3751-301) : 국방 정보망 재해복구체계 강화 및 관련 예산 반영 필요 ····· 221

(41)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군사시설개선)(5131-302) :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액조정 필요 ····· 226

(42)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5134-302) : 파병부대 개인용품 현금지급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 집행 목적에 부합하도록 비목 변경 필요 ····· 231

(43) PKO 파병(5134-303) : 파견연장 동의안 국회 제출시 파견부대의 안전 보장 등 대책 포함 필요 / 국제연합 레바논(UNFIL) 철수에 따른 예산 감액조정 필요 ····· 239

(44) 무관부활동(5135-301) : 주재무관 소집회의 비대면 회의 활성화 필요 ·· 246

(45) 정책기획지원(5136-302) : 주한외국무관단 안보산업현장 견학 사업 비목변경 필요 ····· 250

(46) 한국국방연구원(R&D)(5137-301) : 보고서 발간시기 분산 필요 / 보고서 연구주제 편중 지양 필요 ····· 253

3. 국방 ·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57

(1)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4131-485) : 방첩사 폐지 결정에 따른 2026년도 사업비 전액 삭감 필요 ····· 257

(2) 부대개편 8차 (4131-489) : 국군고양병원 개편사업 설계지연에 따른 2026년 예산 감액 필요 ····· 261

4.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265

(1) 평택기지이전사업(4231-301) : 소요 인원 기준 정립과 사업관리용역비 산정기준 개편 필요 ····· 265

(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8610-860) : 예수원금 잔액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271

5. 군인복지기금 ·····275

(1) 재정운용 총괄 : 장병복지 향상을 위한 안정적 수익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275

(2) 장학사업(2239-646) : 신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교육지원금의 소관 세부사업 변경 필요 ····· 281

(3) 취업활동지원(2239-647) : 전반적인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성과지향적 사업개편방안 마련 필요 ····· 286

6. 군인연금기금 ·····290

(1) 군인연금기금: 연례적인 연금기여금 수입 과다 추계 등으로 인한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 ····· 290

제1장

2026년도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Ⅰ 총괄

1. 세입·세출예산안

○ 국방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2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2개 부문(병력운영과 전력유지 부문) 13개 프로그램으로 구분됨.

○ 국방부 소관 2026년도 총 세입예산안은 1조 2,704억원으로 2025년도 대비 47.1% 감소하였고,
총 세출예산안은 47조 90억원으로 2025년도 대비 3.4% 증가하였음.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회계	구분	2025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
		본예산(A)	추경			
합계	세입	2,401,887	2,401,887	1,270,440	△1,131,447	△47.1
	세출	45,473,154	45,612,652	47,008,916	1,535,762	3.4
일반회계	세입	329,476	329,476	381,782	52,306	15.9
	세출	43,400,743	43,540,241	46,120,258	2,719,515	6.3
국방·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	세입	1,500,274	1,500,274	530,390	△969,884	△64.6
	세출	1,500,274	1,500,274	530,390	△969,884	△64.6
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회계	세입	572,137	572,137	358,268	△213,869	△37.4
	세출	572,137	572,137	358,268	△213,869	△37.4

*자료: 국방부

○ 이를 회계별로 보면,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818억원으로 2025년도 대비 15.9%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은 46조 1,203억원으로 2025년도 대비 6.3% 증가하였음.

또한, 2026년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각각 5,304억원으로 2025년도 대비 64.6% 감소하였고, 2026년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각각 3,583억원으로 2025년도 대비 37.4% 감소하였음.

국방부 소관 2026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정부 총 세출예산안 624조 7,634억원의 7.5%에 해당하는 규모임.

2. 기금운용계획안

○ 국방부 소관 2026년도 기금으로는 군인연금기금과 군인복지기금이 운용되며, 군인연금기금의 수입 및 지출운용계획액은 2025년도 4조 6,052억원 대비 10.7% 증가한 5조 997억원이고, 군인복지기금의 수입 및 지출운용계획액은 2025년도 1조 118억원 대비 2.8% 감소한 9,833억원임.

국방부 소관 2개 기금의 총수입 및 총지출운용계획액은 2025년도 5조 6,170억원 대비 8.3% 증가한 6조 830억원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계획	2026계획안	증감액	증감률(%)
군인연금기금	수입	4,605,166	5,099,683	494,517	10.7
	지출	4,605,166	5,099,683	494,517	10.7
군인복지기금	수입	1,011,823	983,287	△28,536	△2.8
	지출	1,011,823	983,287	△28,536	△2.8
합 계	수입	5,616,989	6,082,970	465,981	8.3
	지출	5,616,989	6,082,970	465,981	8.3

*자료: 국방부

3. 국고채무부담행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	2026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국고채무부담행위	-	-	-	-

*자료: 국방부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따른 것[1]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 외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국방부 소관 202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은 없으며, 2025년도에도 없었음.

1) 「국가재정법」 제25조

4. 명시이월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	2026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명시이월비	-	-	-	-

*자료: 국방부

○ 명시이월비[2]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방부는 2026년도 명시이월비를 요구하지 않음.

5. 참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한도액	2026 한도액안	증감액	증감률(%)
BTL 한도액	227,200	-	△227,200	-

*자료: 국방부

○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요구는 없으며(신규사업 없음), 계속사업에 대한 BTL 정부지급금을 2026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함.

2) 「국가재정법」 제24조

Ⅱ 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	2026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일 반 회 계	329.476	381,782	52,306	15.9
특 별 회 계	2,072,411	888,658	△1,183,753	△57.1
◦ 국방·군사시설이전	1,500,274	530,390	△969,884	△64.6
◦ 주한미군기지이전	572,137	358,268	△213,869	△37.4

*자료: 국방부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818억원으로, 2025년도의 3,295억원에 비해 15.9%인 523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정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07조 4,468억원 대비 0.1%를 차지함.

○ 202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8,887억원으로 2025년도의 2조 724억원에 비해 57.1%인 1조 1838억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정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17조 3,167억원 대비 0.8%를 차지함.

2. 세출예산안 개요

(가)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
	본예산(A)	추경			
일 반 회 계	43,400,743	43,540,241	46,120,258	2,719,515	6.3
특 별 회 계	2,072,411	2,072,411	888,658	△1,183,753	△57.1
◦국방·군사시설이전	1,500,274	1,500,274	530,390	△969,884	△64.6
◦주한미군기지이전	572,137	572,137	358,268	△213,869	△37.4

*자료: 국방부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3]은 46조 1,203억원으로, 2025년도 43조 4,007억원에 비해 6.3%인 2조 7,195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07조 4,468억원 대비 9.1%를 차지함.

○ 202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887억원으로 2025년도의 2조 724억원에 비해 57.1%인 1조, 1838억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정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17조 3,167억원 대비 0.8%를 차지함.

3) 국방부 소관인 전력운영비를 말함.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①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규모

○ 2026년도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6조 1,203억원은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07조 4,468억원 대비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부(100조 3,507억원, 19.8%), 보건복지부(73조 9,253억원, 14.6%), 행정안전부(72조 7,424억원, 14.3%). 기획재정부(46조 1,900억원, 9.1%)에 이어 다섯 번째 규모임.

방위사업청을 포함한 국방비가 2026년도 정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로 2025년 본예산(12.9%) 대비 다소 증가하였음.

[국방비 일반회계 규모 비교]

(단위: 억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정부재정	4,214,160	4,462,422	4,462,422	4,495,267	4,495,267	4,736,594	4,969,658	5,074,468
◦국 방 비	546,112	570,143	570,143	594,244	594,244	612,469	612,986	662,947
·대재정(%)	13.0	12.8	12.8	13.2	13.2	12.9	12.3	13.1

*자료: 국방부
*국방비는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와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의 합임.

② 프로그램별 세출예산안 규모

○ 2026년도 일반회계는 병력운영 부문과 전력유지 부문으로 구분되며, 병력운영 부문 3개 프로그램과 전력유지 부문 1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프로그램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25 예산		2026 예산안(B)	증 감 (B-A)	
		본예산(A)	추경			%
계		43조 4,007	43조 5,402	46조 1,203	2조 7,196	6.3
병력운영비 소계		25조 3,516	25조 2,711	26조 4,704	1조 1,188	4.4
인건비	급여정책	18조 8,134	18조 7,329	19조 3,803	5,669	3.0
	연금기금 전출금 등	4조 88	4조 88	4조 4,518	4,431	11.1
급식 및 피복		2조 5,294	2조 5,294	2조 6,382	1,088	4.3
전력유지비 소계		18조 491	18조 2,691	19조 6,499	1조 6,008	8.9
국방정보화		8,068	8,045	8,309	241	3.0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1조 7,890	1조 7,890	2조 1,170	3,280	18.3
군수지원 및 협력		6조 6,119	6조 6,119	7조 1,303	5,184	7.8
군인사 및 교육훈련		8,653	8,653	1조 299	1,646	19.0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5조 986	5조 3,209	5조 4,507	3,521	6.9
예비전력관리		2,646	2,646	2,600	△46	△1.7
책임운영기관 운영		2,600	2,600	2,609	9	0.3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조 5,845	1조 5,845	1조 7,776	1,931	12.2
국방행정지원		7,013	7,013	7,396	383	5.5
복지기금 전출금(주거지원)		671	671	530	△141	△21.0

*자료: 국방부

○ 병력운영 부문 중 급여정책과 연금기금전출금 프로그램을 포함한 인건비는 4.4% 증액된 23조 8,321억원으로 편성되었음.

50만 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공백을 보완하고 간부 중심의 정예 군대로의 전환을 위해 부사관 428명(248억원), 군무원 171명(10억원)을 증원할 계획이고,

중위 및 중사 이하 초급간부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 복무 여건의 제공을 위해 기본급 단가를 정부의 공통 처우개선 수준보다 인상(정부의 공통 처우개선수준인 3.5% 대비 +2.5~3.1%[4])하여 편성함.(513억원)

○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 중 급식비는 6.3% 증액된 2조 528억원, 피복비는 2.1% 감액된 5,854억원이 편성됨.

급식비는 영내급식 단가를 일 14,000원으로 전년대비 1,000원 인상(일 13,000원→일 14,000원)하였으며, 훈련시 간부에게 영내급식 제공을 위한 예산을 현실화하여 증액(124억원→352억원) 반영하였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군외급식보조 매식비 단가를 1끼 7,000원에서 9,000원으로 단가를 인상하였음. 또한, 지역상생 장병특식 제공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8회로 확대하여 증액(119억원→234억원) 반영하였음.

피복비는 기능이 중첩되는 기존 다수의 방한피복 및 우의류를 고품질의 4종으로 통합·개선하기 위한 예산 1,135억원을 반영하여 장병 동계 복무여건 보장 및 전투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4) 하사·소위는 6.6%, 중사·중위는 6.0%, 다만 대상과 요율은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예정임. 또한, 장병 임무수행 여건 보장 및 작전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수피복·장구류 보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정책의 타당성 및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개인용품 보충보급 일부에 대한 현금 지원사업은 폐지(현품 지원사업은 유지)하였음.

○ 국방정보화 프로그램은 전년대비 3% 증액된 8,309억원으로 편성됨.

병력자원 감소 등 자원관리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대 및 작전 운영 자동화·무인화 개선과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고도화(1,002억→909억원)를 지속 추진하고, AI(122억원→279억원)·빅데이터(53억→76억원) 등 우수한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도입하는 국방 운영 첨단화 예산이 반영됨.

특히 BTL사업으로 진행되는 초고속·대용량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보 및 야전부대 정보통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국방광대역 통합망 고도화 운용 예산이 증액(953억원→1,197억원) 편성됨.

또한 사이버 공격기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각종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예산 794억원이 반영됨.

○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프로그램은 18.3% 증액된 2조 1,170억원이 편성됨.

장병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진료지원, 의무시설 개선, 의무물자·장비 보강 등 군의무 예산과 군 내 양성평등, 군 어린이집 운영 등 장병복지지원 관련 사업 예산이 반영됨.

특히, 병 전역시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병 내일준비지원사업’을 1조 6,587억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음.

○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예산은 7.8% 증액된 7조 1,303억원이 편성됨.

첨단장비의 가동률 보장, 작전능력 보강을 통해 현존전력이 100%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비유지에 집중 편성하고, 전투준비태세 확립을 위한 장비획득·물자·연료·교육용 탄약 등 필수소요 도입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음.

특히 신형 중형표준차량(2½톤, 5톤) 전력화를 위한 확대 보급 예산을 증액 반영(369억원 → 1,508억원)하였음.

또한, 장비 및 물자획득, 장비유지 등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단가 및 물량을 현실화하여 소요를 반영하였음.

○ 군인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19% 증액된 1조 299억원이 편성됨.

급변하는 미래 국방 과학기술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AI·드론 인재양성 예산이 확대·신규 반영되었고, 실전적이고 과학화된 교육훈련을 위한 첨단과학훈련 장비 도입과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 구축 예산이 지속 반영되었음. 또한, 훈련여건 보장을 위한 야외훈련장 화장실 개선 신규사업 예산 33억원이 반영됨.

전시 작전권 전환 대비 합동·연합 작전능력 향상 소요와 상시

전투태세 완비를 위한 부대훈련 예산은 2025년 대비 24억원 증액된 983억원이 반영됨.

또한, 장병 복무적응지원 및 임무여건 보장을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증원('24년660명→'25년700명→'26년740명)이 지속 반영되었고, 자기개발 기회확대와 선진 병영문화 조성 등을 위해 대학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과 독서·문화활동 등의 예산이 확대되었음.
한편, 안정적 초급간부 확보를 위한 장교·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확대와 장기복무유도를 위한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 신설예산 또한 반영됨.

○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은 1.1% 증액된 5조 1,678억원(전세대부 이자지원 포함)이 편성됨.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평형 관사 확보에 1,106세대 990억원(신규 432세대 481억원, 계속 674세대 509억원)을 반영하였고, 2026년까지 1인 1실 간부숙소 확보를 위해 11,149실 4,955억원(신규 788실 653억원, 계속 10,361실 4,302억원)을 반영함.

또한, 근무지내 관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직업군인의 안정적 주거마련을 위한 전세대부 이자지원 사업에 있어 복지기금 전출금으로 671억원을 반영함.

병사의 독립된 생활공간 보장 및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하기 위해 187동 782억원(신규 61동 82억원)을 반영하였음.

○ 예비전력관리 프로그램은 1.7% 감액된 2,600억원이 편성됨.

예비군 훈련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동원훈련장 생활관 개선, 야외화장실 신축 등 신규 시설사업 예산 24억원을 반영함.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예비군의 사기진작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지역예비군(5~6년차 예비군, 학생예비군) 훈련참가비를 신규 반영함. 구체적으로 작계훈련과 기본훈련 각각 단가를 10,000원으로 책정하여 152억원이 최초로 반영되었으며, 동원훈련 Ⅰ형 훈련참가비는 82,000원에서 95,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5년 최초로 반영된 1~4년차 동원미지정 예비군인 동미참 훈련참가비를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였음. 또한 일반훈련 중식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단가 1,000원을 인상하여 41억원을 증액(272억원→313억원) 반영하였음.

예비군의 전투력 개선을 위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전투장구류, 지역예비군 기동대 워리어플랫폼 장구류 확보 및 주요 전투장비 물자확보 예산을 반영하였음.

○ 책임운영기관 프로그램은 0.3% 증액된 2,609억원이 편성됨.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각 기관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복 사업 및 과도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여 필수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하였음.

국방 전산 자원·행정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안정적 유지보수 수행 예산을 증액(+13억원) 하였으며, 군병원 진료 여건 및 외상 진료능력 확보를 위한 의무물자 증가 소요 및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사업비(415억원 → 426억원, +11억원)를 증액 반영하였음.

○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12.2% 증액된 1조 7,77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의 예산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예산임.

방위비분담금은 제12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한미 협의된 2026년 필요 소요인 1조 6,048억원이 편성됨.

그 외, 4개 파병부대 및 개인단위 해외파병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422억원을, 재외 무관운영비로 186억원이 편성됨.

○ 국방행정지원 프로그램은 5.5% 증액된 7,396억원이 편성됨.

행정지원 예산은 각급 기관의 기본경비와 각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비를 담고 있음. 특히 기본경비에 편성된 주임원사활동비(부대운영비) 사업이 일반사업비로 이관되면서 '25년 대비 16억원 증액된 111억원이 편성되었고, 기준액 대비 91.9% 수준으로 편성되었던 전투역량강화비가 95% 수준으로 인상되어 42억원이 증액된 1,349억원을 편성함. 또한, 당직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인 평일/휴일 각 3만원/6만원으로 인상하여 전년 대비 294억원이 증가한 883억원이 편성됨.

(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개요

[프로그램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	2026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프로그램	단위사업	특별회계				
합 계			2,072,411	888,658	△1,183,753	△57.1
군사시설 이전사업 (4100항)	소 계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722,917	494,902	△228,015	△31.5
	군시설이전사업 (4131세항)		652,763	424,501	△228,262	△35.0
	사유재산정리 (4132세항)		70,154	70,401	247	0.4
미군기지 이전사업 (4200항)	소 계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62,182	56,487	△5,695	△9.2
	미군기지이전사업 (4231세항)		14,522	8,278	△6,244	△43.0
	미군기지이전지원 (4232세항)		47,660	48,209	549	1.2
회계기금간거래 (8500항)	공자기금예탁 (8520세항)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767,234	23,368	△743,866	△97.0
회계기금간거래 (8600항)	예수원금상환 (8610세항)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432,400	223,700	△208,700	△48.3
	예수원금상환 (8620세항)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885	-	△885	순감
회계기금간거래 (8700항)	예수이자상환 (8710세항)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9,238	12,120	2,882	31.2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77,555	78,081	526	0.7

*자료: 국방부

○ 2026년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583억원으로, 2025년도 5,721억원 대비 37.4% 감액(2,139억원)되었으며, 평택기지 이전사업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포함하는 미군기지이전사업이 83억원, 환경조사 및 치유·기타이전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미군기지 이전지원사업이 482억원, 회계기금 간 거래인 예수이자상환이 781억원, 예수원금상환 2,237억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304억원으로, 2025년도 1조 5,003억원 대비 64.6% 감액(9,699억원)된 규모이며, 군시설이전사업 4,245억원, 사유재산정리 사업 704억원, 회계기금 간 거래인 공자기금 예탁(234억원)·예수이자 상환(121억원)에 355억원이 편성되었음.

Ⅲ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군인연금기금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목	2025계획	2026계획안	증감액	항목	2025계획	2026계획안	증감액
합계	4,605,166	5,099,683	494,517	합계	4,605,166	5,099,683	494,517
재산수입	58,179	35,044	△23,135	군인연금	4,381,883	4,709,544	327,661
경상이전수입	794,888	805,095	10,207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50,005	150,000	99,995	기금운영비	353	387	34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702,094	4,109,544	407,450	여유자금운용	222,930	389,752	166,822

*자료: 국방부

○ 군인연금기금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과거 연금지급업무를 담당하는 특별회계와 연금지급 책임준비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다가 2007년부터 군인연금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6년도 군인연금기금의 수입계획안 중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와 경상이전수입 증가는 물가인상률 및 처우개선에 따른 것이며,

경상이전수입은 2025년 7,949억원 대비 102억원(1.3%)이 증액된 8,051억원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은 2025년 3조 7,021억원 대비 4,075억원(11.0%) 증가한 4조 1,095억원을 편성함.

○ 2026년도 군인연금기금의 지출계획안 중 군인연금지출은 2025년 4조 3,819억원 대비 3,277억원(7.5%)이 증가한 4조 7,095억원을 편성함.

○ 군인연금기금의 2026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예상액은 1조 2,410억원으로 2025년도 말 기준 1조 838억원 대비 14.5%인 1,57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군인복지기금

(단위: 백만원)

수				지			
항목	2025계획	2026계획안	증감액	항목	2025계획	2026계획안	증감액
합계	1,011,823	983,287	△28,536	합계	1,011,823	983,287	△28,536
재산수입	34,467	32,897	△1,570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480,800	499,236	18,436
경상이전수입	6,217	6,943	726	전세자금 융자	67,055	52,956	△14,099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468,262	510,579	42,317	학자금 대부	20,940	20,648	△292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	23,667	27,182	3,515	정부내부지출 및 기타	62,609	11,174	△51,435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171,135	147,828	△23,307	여유자금 운용	276,419	279,273	2,854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08,075	257,858	△50,217	차입금 등 원금상환	104,000	120,000	16,000

*자료: 국방부

○ 군인복지기금은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되어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장병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 2026년도 군인복지기금의 수입계획안 중 증가항목을 보면 경상이전수입이 69억원으로 2025년 대비 7억원,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이 5,106억원으로 2025년 대비 423억원,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가 272억원으로 2025년 대비 35억원 증가하였으며, 감소항목을 보면 재산수입이 329억원으로 2025년대비 16억원,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가 1,478억원으로 2025년 대비 233억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가 2,579억원으로 2025년대비 502억원 감소하였음.

○ 2026년도 군인복지기금 지출계획안 중 증가항목을 보면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이 4,992억원으로 2025년 대비 184억원, 여유자금운용이 2,793억원으로 2025년 대비 29억원, 차입금 등 원금상환이 1,200억원으로 2025년 대비 160억원 증가하였으며, 감소항목을 보면 전세자금 융자가 530억원으로 2025년 대비 141억원, 학자금 대부가 206억원으로 2025년 대비 3억원, 정부내부지출이 112억원으로 2025년 대비 514억원 감소하였음.

○ 군인복지기금의 2026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예상액은 1조 1,371억원으로 2025년말 기준 1조 57억원의 13.1%에 해당하는 1,31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Ⅳ 참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개요

1.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한도액	2026 한도액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27,200	-	△227,200	-
병영생활관	43,100	-	△43,100	-
간부숙소	93,800	-	△93,800	-
군교육시설	90,300	-	△90,300	-

*자료: 국방부

○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요구는 없으며(신규사업 없음), 계속사업에 대한 BTL 정부지급금을 2026년 예산안에 편성함.

2. 2026년도 BTL 정부지급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	2026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군 주거시설	619,285	627,183	7,898	1.3
국방광대역통합망	95,323	119,672	24,349	25.5

*자료: 국방부

○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BTL 정부지급금은 군 주거시설에 6,272억원, 전방지역의 기존 군 자가망 노후장비(1차 국방광대역통합망)를 교체하고 후방지역 대대급까지 확대 구축하여 운용하는 국방광대역통합망 정부지급금 1,197억원을 반영함.

제2장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1) 국방 분야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계획 분석

(가) 예산안 개요

○ 2025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61조 2,469억원 대비 5조 478억원(8.2%) 증가한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되었음. 국방 분야 중 전력운영비 부문이 전년대비 2.7조원(6.3%), 방위력개선비 부문이 전년대비 2.3조원(13.0%) 증가하여, 방위력개선비 부문에서 더 높은 증가율을 보임.

정부는 2026년도 국방분야 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①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역량 강화, ②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③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④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과학기술강군 전환 및 융성 등을 추진할 계획임.

[2026년도 국방분야 예산안 편성 개요]

(단위: 억원, %)

구 분	'25(A)	'26(B)	증감(B-A)	%
국방예산	61조 2,469	66조 2,947	5조 478	8.2
전력운영비	43조 4,007	46조 1,203	2조 7,196	6.3
방위력개선비	17조 8,642	20조 1,744	2조 3,282	13.0

*자료: 국방부

○ 2026년도 국방분야 예산안 증가율 8.2%는 정부 전체 예산안 증가율 8.1%보다 0.1%p 높은 것으로, 2019년 증가율 8.2% 증가한 이래 7년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임.

[연도별 국방분야 예산 증가율 및 정부예산 증가율 비교]

(단위: %)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방 분야의 2026년도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 8.2%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증가율 4.4%보다 3.8%p 높게 편성된 것임.

2020년~2025년 기간 동안의 국방 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4.4%은 같은 기간의 정부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5.2% 보다 0.8%p 낮게 유지됨에 따라 총지출 대비 국방분야의 비중은 2020년 9.8%에서 2025년

9.1%으로 0.7%p 하락하였음.

[국방분야 재원배분 현황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2025 연평균증가율
국방(A)	50.2	52.8	54.6	57.0	59.4	4.4
총지출(B)	512.3	558.0	607.7	638.7	656.6	5.2
- 비중(A/B)	9.8	9.5	9.0	8.9	9.0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25~2029 연평균증가율
국방(A)	61.2	66.3	69.7	73.2	76.2	5.6
총지출(B)	673.3	728.0	764.4	802.6	834.7	5.5
- 비중(A/B)	9.1	9.1	9.1	9.1	9.1	

*주: 2020~2025년은 본예산 기준, 2026년은 예산안 기준, 2027~2029년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계획액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재구성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대한 국방 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5.6%로, 정부 총지출 연평균증가율 5.5%보다 0.1%p 높게 중기 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되었음..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정부 총지출 대비 국방 분야 예산의 연평균증가율을 높게 수립함으로써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총지출 대비 국방분야 예산의 비중은 10% 수준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중기재정운용계획상으로는 2029년에도 0.9%p 미달한 수준인 9.1%에 그칠 것이므로, 향후 중기계획상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국방 분야 예산의 증가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국방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를 분석해보면, 동 기간 동안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2022년 66.7%에서 2025년 70.9%까지 증가하였다가 2026년에는 69.6%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편성한 반면,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은 2022년 30.6%에서 2025년 29.1%까지 하락하였다가 2026년에는 30.4%로 비중이 상향되도록 편성되었음.

[2022～2026년 국방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국방			546,112	570,143	594,244	612,469	662,947
	전력운영비	지출	379,195	400,974	417,712	434,007	461,203
		비중	69.4	70.3	70.3	70.9	69.6
		증가율	-	5.7	4.2	3.9	6.3
	방위력개선비	지출	166,917	169,169	176,532	178,462	201,744
		비중	(30.6)	(29.7)	(29.7)	(29.1)	(30.4)
		증가율	-	1.3	4.4	1.1	13.0

*주: 괄호 내 수치는 국방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력운용비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방위력 개선비는 하락한 이유로는 ① 병 처우 개선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병 봉급 및 병 내일준비적금이 대폭 인상되었고, ② 장병 인건비, 의식주, 연금기금전출금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 가운데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국방력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증가가 필수적이었으며, ③ 전력발전업무훈령에 의거 전력화된 무기체계의 초기 안정화 이후 후속 군수지원 예산은 방위력개선비에서 전력운영비로 이관되었기 때문임.

○ 「2025~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방 분야의 부문별 지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2025년 29.1%인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을 2029년까지 30.4%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2026년 예산안의 비중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중기적으로 전력증강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을 이미 달성했음.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 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점진적으로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2029년에는 방위력개선비가 36.8%로 배분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전력운용 측면에서 장병 인적투자 전방위 확대와 복무여건 지속 개선을 통한 우수한 군 인력 확충의 필요성과 함께, 방위력 개선 측면에서 미래전 양상 대비 신속한 최첨단 무기체계 전환 적극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적정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임.

(2) 국방인공지능 사업 추진체계 재검토 필요

(가) 현황

○ 국방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국방인공지능 관련 사업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과 ‘국방 AI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은 AI 융합산업 중 단기내 성과창출이 가능한 유망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집중지원하는 ‘AX-Sprint(전력질주) 프로젝트’를 정부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분야에서 1~2년 내 성과도출이 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6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	-	-	60,000	60,000	순증

*자료: 국방부

○ 국방 AI 인재양성 사업은 AI 기반 미래전 대비 군 인재의 디지털·AI 역량 확보가 필수인 상황을 대비하여 군 특화 AI 전문교육, 전 장병 AI·SW 소양교육, AI 교육·연구센터 구축, 국방 AI 경진대회 개최 및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을 추진하려는 사업임.

[2026년도 국방 AI 인재양성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방 AI 인재양성	9,396	8,705	40,612	40,612	31,907	366.5
(AI 소양/전문교육)	5,920	5,920	14,168	14,168	8,248	139.3
(AI 교육연구센터 구축)	2,520	1,848	4,751	4,751	2,903	157
(AI 경진대회)	956	937	2,161	2,161	1,224	130.6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	-	19,532	19,532	19,532	-

*자료: 국방부

○ 국방 AI 인재양성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19억 700만원이 증액(366.5%)된 406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 국방부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과 ‘국방 AI 인재양성’ 사업 추진체계를 보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의 규정과 「자율기구 국방인공지능정책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식직제가 아닌 ‘국방인공지능정책팀’을 자율기구로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이하 “임시정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정원의 배정 및 운영 방식 등은 제4조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임시정원은 운영기간 종료 시 소멸하며, 임시정원 소멸로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임시조직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최대 1년(6개월+6개월) 간만 존속할 수 있음.

○ 국방 AI는 전투력 향상, 정보 우위 확보, 병력 한계 극복을 통해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할 수 있으나, 국방부는 이미 「국방데이터·인공지능

업무 훈령」에 따라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데이터·인공지능 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의 성과 검토 및 확산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실무를 지능정보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4조(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1. 국방데이터・인공지능 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관련 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1조에 따른 사업 중 데이터 구축 또는 인공지능 적용 사업에 대한 소요 결정
 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9항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중 데이터 구축 또는 인공지능 적용 사업에 대해 소요 결정 소관부서가 소요 검토 등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5호가목부터 라목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데이터 구축 또는 인공지능 적용 사업에 대한 검토
3.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의 성과 검토 및 확산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율기구인 국방인공지능정책팀에서도 국방 인공지능 정책 및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지능정보화정책관)와 국방인공지능정책팀 간 국방 AI 관련 사업추진에 있어서 중복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자율기구 국방인공지능정책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국방인공지능정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 인공지능 정책 및 전략 수립
2.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신속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법제 및 기술획득 체계 마련
3. 군-유관기관 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적용 인공지능 기술 및 보안 검토 연계
4. 생성형 AI 국방 개발 및 전 분야 확산 추진
5. 국방정보시스템 AI 적용 시범사업 추진
6. 군 제대별 AI 인프라 구축 추진
7. 국방 인공지능 역량 강화 및 인공지능 문화 조성

○ 또한 국방인공지능정책팀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최대 1년(6개월+6개월) 간만 존속할 수 있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과 '국방 AI 인재양성' 의 사업기간과도 불일치하여 결국 다른 조직에서 동 사업들을 이관받아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어 사업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이 제기될 수 있음.

[국방 AI 관련 사업기간]

구분	사업기간	비고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2년	신규사업
국방 AI 인재양성	'26년~계속	'22년부터 국방정보화 사업으로 추진

○ 따라서 국방 AI의 중요성 및 지속적·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상설조직에 의한 수행, 업무 조정 등 추진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3) 드론 전력 안착을 위한 면밀한 사업 집행 필요

(가) 예산안 및 계획안 개요

○ 국방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확인된 드론 운용 양상과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든 장병이 군 복무 중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50만 드론전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드론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5]에 따라 150kg 초과는 무인항공기, 이하는 무인비행장치로 구분되며, 전장 감시, 정찰, 수송, 정밀폭격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차세대 핵심전력으로 평가됨.

그러나, 국내 상용 드론의 국산화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품 조달체계의 불안정성 및 보안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5)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 목 생략)

[드론 제작업체 부품 종류별 국산화율]

구분		전체 응답 수	국산 100% 응답 수	국산 0% (외국산 100%) 응답 수	국산/외국산 혼합		평균 국산화율(%)
					응답 수	국산 비율(%)	
모터		79	15	53	11	47.7	25.6
프로펠러		78	20	51	7	27.9	28.1
동체(바디)		77	40	10	27	58.9	72.6
배터리		77	15	32	30	44.3	36.8
비행제어컴퓨터		77	25	44	8	48.8	37.5
통신모듈		76	33	33	10	52	50.3
임무장비	카메라/짐벌	57	16	34	7	60	35.4

*국산화율 : 가중평균 기법에 따라 국산 비율에 응답 수를 가중하여 평균 국산화율을 산출함

*각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국산화율을 조사한 것으로, 국산화율 정의 및 원산지 증빙 프로세스에 따라 수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자료: 2024년 드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항공안전기술원

○ 이에 국방부는 군의 대규모 수요를 기반으로 국산 드론 생태계를 조성하고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전 장병이 활용 가능한 드론 교육체계를 확립하여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소부대 작전대응능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2026년도에는 드론 도입 관련 사업예산 258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야전부대 및 교육기관에 드론 11,519대를 보급할 계획임. 이는 2024년 도입 대수(367대) 및 2025년 8월말 기준 도입대수(97대)와 비교하여 대폭 증가한 숫자임.

[2024~2026년 드론 도입 대수 및 예산 내역]

(단위: 대, 백만원)

	2024년		2025년		2026년
세부사업명	편성	집행	편성	집행(8월 말 기준)	편성
2331-303 기지경계용드론	18(2,008)	18(1,216)	-	-	-
2331-303 (해상대테러작전지원용)	0(1)	0(1)	4(187)	4(187)	0(40)
2331-303 (기지경계용무인항공기(멀티콥터)(무선형))	0(494)	0(494)	30(2,576)	30(1,863)	-
2331-303 (기지경계용무인항공기(T-로터)(유선형))	0(413)	0(413)	20(1,355)	20(980)	-
2331-303 (안전조사용드론)	1(70)	0(61.2)	-	1(0.68)	-
2331-303 (소형드론장비획득)	-	-	17(534)	-	24(1,304)
2331-303 (실험연구용드론)	5(530)	-	-	-	-
2331-303 (함정작전지원용드론)	-	-	2(279)	-	9(1,018)
2331-303 (방탐정확도측정 및 점검 드론)	-	-	1(60)	-(33)	-
2331-303 (전장가시화 및 전장이동통제용 드론)	6(954)	6(933)	4(656)	-	2(329)
2331-303 (군수품수송용드론(40kg))	0(0.001)	0(0)	0(1)	0(1)	-
2331-303 (맵핑용드론)	0(1)	0(0)	3(580)	3(579)	6(1,186)
2331-303 (조명방송용드론)	14(2,240)	0(0)	0(1)	-	2(321)
2331-303 (공병업무지원용드론)	4(348)	4(243)	0(31)	-	2(107)
2331-303 공보정훈용드론	4(100)	5(85)	-	-	-
2331-303 (공병지원드론)	2(149)	1(138)	1(157)	-	-
2331-303 (해강안수로정찰용드론)	-	-	3(405)	-	-
2331-303 과학수사용경량화드론	-	-	-	-	4(200)
2339-304(주요기관 교육용탄약)	210(20,539)	180(17,242)	80(8,000)	29(3,068)	10(1,638)
2432-302 (전투병과교육)	-	5 (23)	10 (41)	10 (41)	5 (20)

2438-303 (공통교보재지원)	-	148 (370)	315 (530)	-	11,283 (19,443)
2438-304 (전투발전연구)	-	-	2(300)	0	-
2632-305(예비전력운영지원)	-	-	-	-	172(292)
합계	**264(27,847)**	**367(17,516)**	**492(15,693)**	**97(10,557)**	**11,519(25,891)**

*자료: 국방부

○ 특히 교육훈련용 상용 드론 구매와 관련하여 2025년 5억 3,000만원(315대) 편성에서 191억 3,500만원(11,265대) 편성으로 도입수량 및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음.

국방부는 2028년까지 해당 교육훈련용 상용 드론 6만 대를 도입하여 육군은 분대당 2대 이상, 해·공군·해병대는 10명당 1대 이상의 드론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임.

○ 다만, 본 사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 첫째, 부품 국산화 및 보안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임.

현재 드론 핵심부품 중 영상데이터 트랜시버[6] 는 국내 생산업체가 없어 중국산 부품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임.

6)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드론 부품

영상 데이터 트랜시버 (예시)	
사진	
구성품목	· 카메라 · 영상디지털송신장치 (VTX) · 송신 안테나

*자료: 국방부

영상 데이터 트랜시버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3년 내 국산화 추진이 계획되어 있으나, 2026년도 도입분은 외산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 도입에 있어 통신·데이터 보안 등 보안성 검증을 사전에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드론 도입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교육용 상용드론 단가(1대당 170만원)은 비행조종 관련 부품만 국산화된 상용드론의 단가이고, 모터, 배터리 등 대부분의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 드론 기준의 단가는 국방부 산정 기준 1대당 300만원으로 증가함.

이에 따라 교육용 상용드론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 편성된 예산에서 증액 소요가 발생하기에 해당 예산의 심사 단계에서 증액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7].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 교육훈련용 드론 단가]

(단위: 원)

구 분	부품명	수량(set)	단가	금액
국 산	기체 프레임 / 조립비용	1	340,000	340,000
	프로펠러	4	5,000	20,000
	배터리(리튬폴리머)	1	200,000	200,000
	충전기	1	200,000	200,000
	소형 모터	4	50,000	200,000
	모터제어기(ESC)	4	27,500	110,000
	비행제어기(FC)	1	100,000	100,000
	조종기(7-8인치 화면)	1	800,000	800,000
	GPS	1	70,000	70,000
	영상카메라(광학)	1	40,000	40,000
	공구키트, 가방, 악세사리	1	100,000	100,000
	예비 부품	1	200,000	200,000
외 산	영상 데이터 트랜시버 (영상 미저장, 실시간 스트리밍만 허용)	1	300,000	300,000
합계 (총 금액 내 일부 조정 가능)				2,680,000 **(부가세 포함 시 2,948,000)**

*자료: 국방부

○ 셋째,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에 있어 보험 가입 및 그에 따른 예산 반영이 필요해 보임.

드론은 훈련 과정에서 낙하·충돌 등 사고 위험이 높고, 특히 다수 장병이 사용하는 장비 특성상 손상의 가능성이 높음.

특히,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 단가가 1대에 170만원으로 장병들이 훈련 중 파손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

7) 드론 1대당 130만원 증액 소요 필요

면, 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운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현재 정부 예산편성안에는 보험료가 미반영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드론 1대당 평균 보험료(200,500원)[8]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험료 예산 반영을 위한 증액 편성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종합하면, '50만 드론전사 양성' 사업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기반사업으로, 국산 드론 산업생태계 육성과 군의 기술역량 강화 및 장병 역량개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핵심 부품의 국산화 지연 및 드론 보험가입 예산 미반영 등 현실적 제약 요건이 존재하므로,

국방부는 향후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론 핵심부품에 대한 보안성 확보, 단가 현실화 및 보험료 예산 반영 등을 통해 드론 전력의 안정적 정착과 실질적 운용 효과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8) 국방부 산정 기준 단가

2. 일반회계

(1) 부사관 인건비(1101-152) : 국방부 소요 대비 과다 편성된 650억원 감액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부사관 인건비(1101-152) 사업은 부사관의 봉급 및 제수당,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임.

○ 부사관 인건비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189억 7,400만원이 증액(3.1%)된 7조 2,372억 6,4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부사관 인건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부사관 인건비	6,644,397	7,018,290	7,034,205	7,237,264	218,974	3.1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부사관인건비 예산은 계급별 정원 대비 실제 운영률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실제 운영률이 예산 편성 시 가정한 운영률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임.

[2023~2026년 부사관인건비 계급별 예산편성률 및 실제 운영률]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6월말 기준)		2026년(요구)
	편성률	실제 운영률	편성률	실제 운영률	편성률	실제 운영률	편성률
	94.3%	91.8%	92.7%	87.7%	90.4%	84.2%	85.7%
원 사	99.4%	98.8%	99.5%	99.0%	99.2%	98.0%	98.8%
상 사	94.9%	97.8%	93.9%	96.6%	94.2%	93.8%	95.9%
중 사	98.3%	98.2%	98.4%	97.7%	99.0%	95.4%	96.1%
하 사	89.6%	86.5%	87.1%	76.1%	82.7%	68.8%	68.2%
임기제	86.4%	51.7%	75.1%	39.0%	54.0%	37.0%	38.4%

*자료: 국방부

○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는 상사를 제외한 계급에서 편성률을 축소하여 반영하였음.

○ 한편, 국방부의 예산요구서 제출[9] 이후 공무원(군인) 기본급 공통처우개선율이 1.9%에서 3.5%로 상향 결정되고, 초급간부(하사·중사)에 대한 기본급 인상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일정 부분의 예산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음[10].

그러나 이러한 기본급 인상 요인을 반영하더라도, 정부 예산안(기획재정부 편성안)은 실소요 대비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임.

9) 매년 5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여야 함
10) 하사 6.6%, 중사 6.0%

○ 국방부는 당초 부처 예산요구안 7조 342억원에서 공통 처우개선분 1,001억원, 하사 처우개선분 215억 4,600만원, 중사 처우개선분 164억 1,500만원을 반영한 개정된 실소요를 7조 1,723억원으로 파악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으로 7조 2,37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방부의 실소요 대비 650억원이 과다 편성됨.

[2026년도 부사관인건비 과다편성 현황]

(단위: 억원)

국방부요구안 (A)	처우개선변동 (B) (1.9%→3.5%)	초급간부 기본급인상 (C)	정부안(D)	실소요 (E=B+C)	과다편성분 (D-E)
70,342	71,343	380	72,373	71,723	650

*주: 초급간부 기본급인상분은 하사 6.6%, 중사 6.0%임
*자료: 국방부

○ 이러한 국방부의 공무원 공통 처우개선율 변동 및 초급간부 기본급 추가 인상을 반영한 개정된 실소요의 계급별 예산 편성률은 2025년 6월말 기준 부사관 실제 운영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안 7조 2,373억원 편성은 국방부의 과소요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실소요를 상회하여 편성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26년도 부사관인건비 예산 7조 2,372억 6,400만원 중 불용이 예상되는 650억원은 과다 편성된 것으로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군무원인건비(1102-151) : 국방부 소요 대비 과다 편성된 554억원 감액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군무원인건비(1101-152) 사업은 군무원의 봉급 및 제수당,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임.

○ 군무원인건비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210억 2,800만원이 증액(8.3%)된 2조 8,955억 1,9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군무원인건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군무원인건비	2,646,886	2,674,491	2,794,657	2,895,519	221,028	8.3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군무원인건비 예산은 직급별 정원 대비 실제 운영률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실제 운영률이 지속적으로 편성률을 상회하여 2024년의 경우에는 967억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2023~2026년 군무원인건비 직급별 예산편성률 및 실제 운영률]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6월말 기준)		2026년(요구)
	편성률	실제 운영률	편성률	실제 운영률	편성률	실제 운영률	편성률
	90.5%	92.3%	90.0%	93.3%	90.2%	92.4%	94.1%
1급	92.2%	33.3%	99.5%	100.0%	100.0%	100.0%	91.7%
2급	93.8%	80.0%	91.7%	82.1%	92.5%	82.1%	79.4%
3급	90.1%	88.5%	95.1%	90.0%	91.3%	86.1%	95.8%
4급	91.7%	98.2%	93.7%	97.1%	96.3%	94.8%	98.0%
5급	93.6%	99.2%	94.9%	96.1%	96.6%	96.7%	97.1%
6급	91.0%	114.1%	90.6%	116.6%	89.2%	115.4%	98.9%
7급	89.5%	95.5%	90.4%	95.4%	89.4%	97.3%	97.1%
8급	86.8%	74.2%	89.4%	83.5%	92.6%	86.8%	91.7%
9급	97.1%	94.5%	89.6%	86.5%	87.6%	73.4%	92.2%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88.2%	87.8%	88.4%	83.0%	82.5%	78.4%	93.3%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88.4%	77.2%	79.4%	80.8%	78.9%	77.6%	63.3%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90.4%	80.6%	74.1%	81.0%	86.4%	81.2%	84.2%

*자료: 국방부

[2024년 군무원인건비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024.12.4.	부사관인건비 (1100-1101-152)	110-01	78,588	군무원인건비 (1100-1102-151)	110-01
	병인건비 (1100-1101-153)	110-01	18,120		

*자료: 국방부

○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는 군무원의 실제 운영률을 고려하여 편성률을 상향 조정하였음.

○ 한편, 국방부의 예산요구서 제출[11] 이후 공무원(군무원) 기본급 공통처우개선율이 1.9%에서 3.5%로 상향 결정됨에 따라 일정 부분의 예산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기본급 인상 요인을 반영하더라도, 정부 예산안(기획재정부 편성안)은 실소요 대비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당초 부처요구안 2조 7,947억원에서 공통 처우개선분 454억원을 반영한 개정된 실소요를 2조 8,401억원으로 파악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으로 2조 8,95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방부의 실소요 대비 554억원이 과다 편성됨.

[2026년도 군무원인건비 과다편성 현황]

(단위: 억원)

국방부요구안 (A)	처우개선변동 (B) (1.9%→3.5%)	정부안(C)	실소요(D)	과다편성분 (D-E)
27,947	28,401	28,955	28,401	554

*자료: 국방부

○ 이러한 국방부의 공무원 공통 처우개선변동분을 반영한 개정된 실소요의 계급별 예산 편성률은 2025년 6월말 기준 군무원 실제

11) 매년 5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여야 함

운영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안으로 2조 8,955억원 편성은 국방부의 과소요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실소요를 상회하여 편성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26년도 군무원인건비 예산 2조 8,955억 1,900만원 중 불용이 예상되는 554억원은 과다 편성된 것으로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건강보험부담금(1105-301) : 국방부 소요 대비 과다 편성된 252억원 감액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건강보험부담금(1105-301)은 국방부 소속 군인, 군무원,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사업임.

○ 건강보험부담금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88억 7,900만원이 증액(6.0%)된 5,102억 3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건강보험부담금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건강보험부담금	450,113	481,324	460,524	470,908	510,203	28,879	6.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건강보험부담금 사업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로 구성되며, 이들 보험료 및 부담금은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 비례하여 산출되므로 군인, 군무원, 공무원의 운영률에 따라 비교적 정확한 예산 추계가 가능함.[12)]

○ 국방부는 종전까지 군인, 군무원, 공무원의 정원 기준으로 건강보험부담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실제 운영률이 정원에 미치지 못해 집행률이 95.6%로 저조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건강보험부담금 예산 208억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음.

[2023~2025년도 건강보험부담금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440,598	-	440,598	440,598	439,133	99.6	99.6	1,465
2024	470,815	-	470,815	470,815	450,113	95.6	95.6	20,702
2025	481,324	△20,800	460,524	460,524	245,460	53.3	53.3	(집행중)

*주: 2025년은 7월말 기준 집행내역임

*자료: 국방부

12) 건강보험부담금의 국가 부담분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국가)가 절반을 부담함)
건강보험료: 군무원·공무원은 과세대상 소득의 3.545%, 군인은 과세대상 소득의 2.83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료: 한시임기제,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로 보수액의 0.9%

○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 편성안에서는 정원 기준이 아닌 실제 운영률을 적용하여 군인 97%, 군무원 95%, 공무원 93% 수준으로 건강보험부담금 예산을 산정하였음.

○ 한편, 국방부의 예산요구서 제출[13] 이후 군인, 군무원, 공무원의 기본급 공통처우개선율이 1.9%에서 3.5%로 상향되고, 초급간부(하사·중사·소위·중위) 기본급 인상이 추가로 반영[14]되면서 이에 따른 건강보험부담금 예산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처우개선 요인을 반영하더라도, 정부안(기획재정부 편성안)은 실소요 대비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당초 부처요구안 4,709억원에서 군인·군무원·공무원 처우개선분을 반영한 수정된 실소요를 4,850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5,102억원을 편성하여 국방부 실소요 대비 252억원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국방부의 군인·군무원·공무원 처우개선율 상향 및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분 반영, 정원이 아닌 운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개정된 실소요 수준은 2024년 예산 207억원 불용 및 2025년 추경 감액(208억원) 사례를 고려할 때,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13) 매년 5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여야 함
14) 하사/소위 6.6%, 중사/중위 6.0%

○ 따라서 2026년도 건강보험부담금 예산 5,102억원 중 불용이 예상되는 252억원은 과다 편성된 것으로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기본급식(1231-301) : 군량곡 군수마크 예외적 미표시 개정 필요 · 민간위탁급식의 장기계속계약 방식에 대한 법령적 보완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기본급식(1231-301) 사업은 장병(해외파병부대 포함)의 전투력 유지·향상을 위하여 1일 3식의 급식을 지원하고 영외에 거주하는 간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기본급식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75억 3,000만원이 증액(7.6%)된 1조 8,119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증액사유는 영내자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13,000원→14,000원)에 기인함.

[2026년도 기본급식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기본급식	1,778,532	1,684,395	1,958,444	1,811,925	127,530	7.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① 군량곡 군수마크 예외적 미표시 개정 필요

○ 각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정부 쌀을 공급받아 군인 등에 대한 기초 식량을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있음.

○ 이를 위해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군량곡 수급사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군량곡의 수급사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군량곡의 공급절차를 보면 ‘군량곡 수급사무에 관한 협정’에 따라 분기별로 국방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구매요청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부대별 분기별 매출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방부에 매출 통보 및 구매 대금 납부고지서를 송부함. 이후 각 시·도(시·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매출 물량 범위 내로 인수부대에 공급하게 됨.

○ 동 협정에 따르면 군량곡은 도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쌀의 등급 및 단백질함량기준 별표1」쌀 등급 기준 “상”을 합격품 기준으로 하는 등 양질의 미곡이 군인에게 제공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 협정에서는 “상”품의 미곡의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 군수마크가 표시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상호 협의가

있으면 군수마크가 미표시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군수마크 표시 포장재]

구 분	사 진
군수마크 표시 포장재	
군수마크 미표시 포장재	

*자료: 국방부

○ 이로 인해 “상”품의 군량곡이 포장재 갈이 등을 통해 등급기준이 낮은 쌀로 둔갑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인수부대에서 모든 군량곡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부대가 분기별로 인수하는 물량 외에는 군량곡이 정부양곡보관창고 등에서 보관된다는 점에

서 군량곡이 군수마크 미표시 포장재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판단됨.

○ 또한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군량곡은 모두 군수마크가 표시된 포장재를 사용하여 납품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 협정에서 군수마크의 예외적 미표시 규정은 불필요해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상”품의 군량곡의 부정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모든 군량곡에 군수마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군량곡 수급사무에 관한 협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민간위탁급식의 장기계속계약 방식에 대한 법령적 보완 필요

○ 국방부는 군 장병들에게 주·부·후식 등 기본급식 사업을 실시하면서 조리병 및 민간조리원을 통한 기존의 방법 외에 2021년도부터 민간위탁업체를 통한 급식을 추진 중에 있는데, 2025년 말까지 총 42개 부대에서 민간위탁 급식을 실시할 예정임.

[민간위탁급식 실시 부대 현황(2025.6. 기준)]

(단위: 백만원)

차수	부대명	최초 실시시기	위탁업체(계약기간)
1차 ('21~)	육군훈련소 23연대	2021.10.	A업체('21.10.~'25.10., 4년)
	육군훈련소 27연대	2022.8.	B업체('22.8.~'26.7., 4년)
	특전사령부 특수전학교	2021.10.	C업체('24.1.~'25.12., 2년)
	9사단 사령부	2021.10.	B업체('24.10.~'26.9., 2년)
	39사단 신병교육대대	2021.10.	A업체('23.10.~'25.10., 2년)
	부사관학교	2022.6.	A업체('24.6.~'27.5., 3년)
	학생군사학교	2022.7.	A업체('22.7.~'27.6., 5년)
	해군 교육사령부	2022.2.	D업체('24.3.~'29.3., 5년)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2022.2.	A업체('24.3.~'29.2., 5년)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2022.4.	D업체('24.6.~'29.5., 5년)
	공군 제3훈련비행단	2021.12.	A업체('24.3.~'29.2., 5년)
	공군 제11전투비행단	2021.12.	A업체('24.2.~'29.2., 5년)
	해병대 군수단	2022.1.	E업체('24.1.~'27.1., 3년)
2차 ('24~)	육군사관학교	2024.9.	F업체('24.9.~'27.8., 3년)
	3사관학교	2024.9.	F업체('24.9.~'27.8., 3년)
	35사단 신병교육대대	2024.7.	A업체('24.7.~'27.6., 3년)
	50사단 신병교육대대	2024.7.	A업체('24.7.~'27.6., 3년)
	51사단 신병교육대대	2024.7.	G업체('24.7.~'27.6., 3년)

차수	부대명	최초 실시시기	위탁업체(계약기간)
	31사단 신병교육대대	2024.10.	E업체('24.10.~'27.10., 3년)
	37사단 신병교육대대	2024.10.	B업체('24.10.~'27.10., 3년)
	55사단 신병교육대대	2024.10.	G업체('24.10.~'27.10., 3년)
	32사단 신병교육대대	2025.1.	A업체('25.1.~'27.12., 2년)
	해군사관학교	2024.6.	D업체('24.6.~'29.6., 5년)
	공군 제19전투비행단	2024.4.	B업체('24.4.~'29.3., 5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2024.4.	E업체('24.4.~'29.3., 5년)
	해병대 교육훈련단	2024.5.	A업체('24.5.~'29.4., 5년)
3차 ('25~)	육군훈련소 30연대	2025.6.	F업체('25.6.~'28.5., 3년)
	36사단 신병교육대대	2025.6.	H업체('25.6.~'28.5., 3년)
	항공사령부	2025.6.	B업체('25.6.~'28.6., 3년)
	제8전투비행단	2025.6.	H업체('25.6.~'30.5., 5년)
	제15특수임무비행단	2025.6.	E업체('25.6.~'30.5., 5년)

*자료: 국방부

○ 부대별로 민간위탁업체와 2년에서 최장 5년 등 다양한 계약기간을 맺고 민간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매년 예산과 연계되어 집행되므로 회계연도에 맞춘 1년 단위 계약이 원칙임.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1년 단위 계약의 예외로서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 국방부가 실시하고 있는 군인 대상 급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열거된 장기계속계약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

○ 급식업체를 통한 장기간의 지속적인 급식 제공의 필요성과 매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통한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면 민간위탁급식에 대해서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한 업체와 다년간의 계약은 다른 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기

본원칙인 경쟁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열거된 대상만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민간위탁을 통한 급식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장기계속계약이 필요하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급식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5) 민간조리원 운영(1231-305) : 잉여재원 민간조리원 처우개선사용 검토 필요 / 80명 미만 취사장 등 부대 조리자격증 병사 배치율 제고 노력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민간조리원 운영(1231-305) 사업은 조리병의 조리기술을 보완하고 군 급식의 맛과 질 개선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식수인원의 취사장에 민간조리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임.

○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9억 7,700만원이 증액(7.7%)된 1,118억 2,400만원이 편성됨. 주요 증액사유는 기본급 인상(4.3%)에 기인함.

[2026년도 민간조리원 운영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민간조리원 운영	96,089	103,847	104,919	111,824	7,977	7.7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① 잉여재원 민간조리원 처우개선 사용 검토 필요

○ 민간조리원은 군 급식과 관련된 조리병의 역할을 보완·대체하기 위해 채용하는 민간 인력으로, 2022년부터 식수인원 80명 이상 취사장 2명, 300명이상 취사장에 1명을 추가배치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조리원의 정원은 3,026명에 이르고 있음.

○ 2026년도 민간조리원의 운영 예산안은 1,118억 2,400만원으로, 세부 산출근거를 보면, 2025년 대비 정원을 35명 감원하여, 2,991명을 기준으로 상용임금, 복리후생비 및 보상금을 편성하고 있음.

[2026년도 민간조리원 운영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액	산출내역
민간조리원	111,824	○ 상용임금(110-03) : 91,681만원 · 기본급 : (기존) 2,986명×2,133,171원×12개월 + (신규) 5명×2,133,171원×6개월=76,500 · 정액급식비 : (기존) 2,986명×140,000원×12개월 + (신규) 5명×140,000원×6개월=5,021 · 명절휴가비 : (기존) 2,986명×2,133,171원×0.6×2회 + (신규) 2,986명×2,133,171원×0.6×1회=7,650 · 교통보조비: (기존) 2,986명×70,000원×12개월 + (신규) 5명×70,000원×6개월=2,510 ○ 복리후생비(210-12) : 1,494백만원 · (기존) 2,986명×500,000원×1회 + (신규) 5명×500,000원×0.5회=1,494 ○ 고용부담금(320-09) : 18,649백만원 · 4대 보험료 10,516, 퇴직적립금 8,133

*자료: 국방부

○ 최근 연도별 민간조리원의 인력운용 현황을 보면, 격오지 근무 및 보수수준 등으로 결원이 높아 정원 대비 인력운용률이 82~83%로 나타남에 따라 저조한 인력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정원을 감원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

[민간조리원 인력운영 현황]

(단위: 명, %)

구분	정원 (A)	현원 (B)	결원 (B-A)	인력운용률 (B/A)	중도퇴사자
2021	2,278	2,014	264	88.4	116
2022	3,188	2,494	694	78.2	169
2023	3,305	2,713	592	82.1	83
2024	3,305	2,778	527	84.1	348
2025.현재	3,026	2,849	177	94.2	124

*자료: 국방부

○ 그런데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인력운용률은 94.2%로 나타나고 있어 이전보다 인력운용률이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개선된 인력운용률의 유지 및 추가적인 향상이 필요함에 따라 국방부는 2026년도에도 민간조리원 정원을 감원하여 편성하였음.

○ 그러나 2026년도 예산안에 정원을 감원하여 편성하였더라도, 신규 채용을 위해 수반되는 기간이나 행정비용 등을 고려시 연초 즉각적인 채용 및 인력운용은 제한될 여지가 있어 연말 불용액이 일정 부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한편, 국방위원회는 2023회계연도에 이어 2024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심사시에 “국방부는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편성 노력과 더불어 특수지근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 편성 등 민간조리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인력운용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것”이란 내용의 민간조리원 처우개선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채택한 바 있으나, 동 시정요구사항이 2026년도 민간조리원 운영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였음[15].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민간조리원 채용률 제고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민간조리원(1231-305)	제도 개선
	지적사항	○ 민간조리원의 채용률은 2022년 78.2%, 2023년 82.1%로 저조하고 예산집행률도 2022년 87.8%, 2023년 83.7%로 낮아지는 추세임 - 민간조리원의 인력운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주된 요인은 조리직 전반의 경쟁력 약화와 격오지 근무 및 보수수준 등과 관련된 근무여건상 문제로 확인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민간조리원의 특수지역 근무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민간조리원 채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민간조리원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민간조리원 운영(1231-305)	제도 개선
	지적사항	○ 2024년도 동 사업의 집행결과를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87.3%로 12.7%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매년 집행률이 80% 중후반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민간조리원의 결원 및 중도퇴사자가 많이 발생하는 인력운용률에 기인하고 있음. ○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조리원의 낮은 인력운용률과 상당 규모의 중도퇴사자 발생은 주로 격오지 근무 및 보수수준 등에 기인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 등 처우개선이 동반될 필요가 있어 동 수당들이 예산편성단계에서 반영 필요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편성 노력과 더불어 특수지근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 편성 등 민간조리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인력운용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것	

15)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일: 9. 3., 국방위원회 결산 의결일: 9. 2.

○ 따라서 국방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조리원의 인력운용률 저하가 장병들의 급식만족도 및 사기 저하로 나타나지 않도록 발생가능한 잔액 등을 활용하여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신설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80명 미만 취사장 등 부대 조리자격증 병사 배치율 제고 노력 필요

○ 「국방부 급식방침」에 따르면 민간조리원은 식수인원 최소 80명 이상 취사장당 2명으로 운영하고, 300명 이상의 취사장에는 민간조리원을 추가 운영할 수 있고, 또한 각군은 80명 미만 취사장과 민간조리원 채용이 어려운 격오지 부대의 취사장은 조리자격증을 갖춘 병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음.

○ 이는 부대규모의 크기, 격오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장병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민간조리원의 인력운용률과 마찬가지로 80명 미만 취사장 등에의 조리자격증 병사의 배치율 또한 중요한 지표라 할 것임.

○ 현재 80명 미만 취사장과 민간조리원 채용이 어려운 격오지 부대의 취사장에 조리자격증을 갖춘 병사를 배치한 현황을 보면 20%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임.

[80명 미만 취사장 등에 조리자격증 병사 배치 현황]

(단위: 명, %)

구분	취사장 수	조리자격증 배치 취사장 수	배치율
80명 미만 취사장	680개	124개	18.2
민간조리원 채용이 어려운 격오지 부대 취사장	158개	33개	20.9

*자료: 국방부

○ 격오지 부대는 장병들의 생활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맛있는 식사’ 자체가 중요한 사기 유지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리 자격증 병사는 조리 기술을 통해 다양한 메뉴를 제공해 장병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에도 낮은 배치율은 해당 부대의 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임.

○ 다만, 조리자격증 보유 병사 자체가 여유롭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자격증뿐만 아니라 조리분야 종사경력을 가진 병사를 선별해서 우선 배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80명 미만 취사장과 민간조리원 채용이 어려운 격오지 부대의 취사장에 조리자격증 병사의 배치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조리분야 종사경력을 가진 병사의 우선 배치 등 해당 부대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6) 기본피복(1241-301) : 피복류 시제품 제작예산 사전 편성 노력 필요 / 육군 베레모 보급중단 관련 집행관리 철저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기본피복(1241-301) 사업은 장병의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전투복, 전투화 등 공통 피복류를 보급하는 사업임.

○ 기본피복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7억 3,700만원이 증액(11.6%)된 3,914억 4,9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기본피복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기본피복	345,877	350,712	367,019	391,449	40,737	11.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① 피복류 시제품 제작예산 사전 편성 노력 필요

○ 기본피복 사업의 비목은 일반수용비(210-01)와 피복비(210-03)로 분류되는데, 피복비(210-03)는 전투복, 전투화 등 피복류를 직접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비목이고, 일반수용비(210-01)는 품질개선품의 부대시험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위한 비목임.

○ 실제 소요를 기초로 편성되는 피복비(210-03)와 달리 시제품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는 매년 소액규모의 예산을 균등하게 편성하고 당해연도에 시제품 구매건이 발생하면 세목조정(피복비→일반수용비)을 통해 소요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연도별 시제품 제작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집행액	예산 대비 증액규모	비고
2022	30	234	780	전투화, 운동모, 무릎·팔꿈치 보호대, 학군단복 등 품질개선품 부대시험을 위한 시제품 제작 *'22.8월 '22-1차 군수심의위원회에서 품질개선 추진 승인
2023	30	591	1,970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품 1차 부대시험을 위한 방상내·외피, 기능성 방한복, 기능성 전투우의 각 500벌 시제품 제작 *1차 부대시험 : '24.1~8월 / 육군 500명
2024	78	1,386	1776.9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품 2차 부대시험을 위한 기능성 전투우의 2,200벌 시제품 제작 *2차 부대시험 : '24.12월 ~ '25.3월 / 육·해(병)·공군 2,200명
2025	80	40		집행 중
2026	79	-		

*자료: 국방부

○ 국방부에 따르면 시제품 개발비는 각군이 당해연도에 몇 건의 피복류 품질개선 추진이 가능한지를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균등한 수준으로 소액규모로 편성하고 있다고 함[16].

[피복류 품질개선 절차]

① 소요제기(각군, 국방부 등) → ② 소요결정(국방부) → ③ 시제품 제작 및 부대시험 → ④ (필요시) 군사용 적합 여부 판정 → ⑤ 조달승인(국방부) → ⑥ 조달 및 보급(각군)

*자료: 국방부

○ 회계연도 내에서 집행시에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필요에 따라 세목을 조정하는 것은 전체 규모가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다소 필요할 수는 있으나, 국회에서 예산심의시 차년도 품질개선품의 종류, 시제품 구매수량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세목조정이 상당규모로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피복비(210-03)는 연례적으로 과다계상되는 문제가 나타남.

○ 따라서 국방부는 피복류의 품질개선 추진 절차를 개선하여 시제품 제작을 예산안 편성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6) 국방부는 '23~'24년의 경우 '26년 전력화 예정인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품의 대규모 부대시험을 위한 이례적인 사례였다고 설명함.

② 육군 베레모 보급중단 관련 집행관리 철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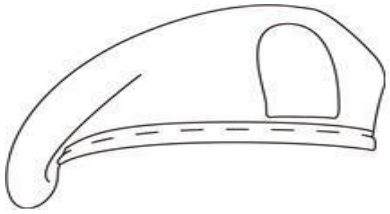
○ 군모는 「군인복제령」 제4조에 따라 예모·정모·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되며, 현재 육군의 전투모는 챙이 없는 납작한 모자인 베레모로 지정되어 있음.

「군인복제령」 제4조에 따른 별표1

3. 전투모

가. 육군

1) 도형: 베레모



2) 색상 및 재질: 흑녹색 모

○ 2026년도 베레모 보급을 위한 예산안은 14억원으로, 18만 6천개의 수량이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베레모 보급예산안]

(단위: 억원)

사업명	편성액	세부산출내역
베레모	14.1	7,541(원)×186,662(점)

*자료: 국방부

○ 육군은 2011년부터 기존의 전투모 대신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베레모를 전 장병에게 보급해 오고 있으나, 기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17]과 기존 전투모와 중복 지급에 따른 예산 문제 등으로 2027년부터 베레모 보급 폐지를 검토하고 있음.

○ 육군은 현재 휴가 등의 경우 베레모 단독 착용에서 베레모와 전투모의 혼용을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시범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군인복제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 2027년 일정 시점부터 베레모 보급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나, 2026년도에는 현재와 같이 베레모가 기본군모로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편성된 예산물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다만,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베레모 예상 재고량은 61,203점으로, 2026년도 편성물량 186,662점의 32.8%에 해당하는 바, 2027년도 베레모 보급중단 시점에 따라 '26년도 베레모 구매물량 중 일부가 재고물량으로 남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국방부(육군)는 2026년도 베레모 구매물량, 재고물량 및 구매시점과 베레모 보급중단 여부 및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6년도에 편성된 베레모 보급예산의 낭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7) 챙이 없어 햇볕 차단이 어려운 문제, 통풍이 잘 안되어 여름철 착용이 어려운 문제 등

(7)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2131-301) : NPU 기반 영상감시체계 구축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2131-301) 사업은 국방 지능정보화를 통한 과학기술강군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서 정보통신 기반환경을 구축, 개선, 운영하는 사업임.

○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29억 1,700만원이 증액(4.7%)된 2,899억 9,2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268,810	277,075	283,199	289,992	12,917	4.7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공공분야[18]에서의 국산 NPU[19]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2026년부터 「국산 NPU 기반 AI CCTV 감시체계 구축('26～'30)」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국방부는 이에 발맞추어 2026년 예산안에 해군·공군 CCTV 감시체계에 국산 NPU 기반 AI 기술을 적용하는 'NPU 서버 기반 영상감시체계 지능화 구축' 신규사업(총사업비 61억원, 단년도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음[20].

구체적으로 해군은 중형함에서 운용 중인 CCTV에 NPU 서버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함정 내 이상징후(추락, 쓰러짐, 화재 등)를 조기에 식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공군은 비행단 CCTV에 NPU 서버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안전사고를 조기에 경보하고 초동조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산 NPU 기반 AI CCTV 감시체계 구축('26～'30)」 사업을 통합 집행하는 한국지

18) 교통관리·사고예방, 공공안전(범죄예방, 실종자 탐색 등), 재난안전(홍수, 화재감지 등)
19) NPU(Neural Processing Unit) : 인간뇌의 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AI 추론용 전문장치로 GPU(AI 학습+추론) 대비 저전력이 특징이며, 주로 스마트폰, CCTV, 자율주행차 등에서 활용함
20) 구체적으로 해군은 해군 중형함에서 운용하고 있는 CCTV에 NPU 서버를 도입, 함정 내 이상징후(추락, 쓰러짐, 화재 등)를 AI기능을 통해 조기 식별하도록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
공군은 비행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CCTV에 NPU 서버를 도입하여 공군 비행단 안전사고를 조기에 경보하고 초동조치 여건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임.

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국방부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의 구체적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NPU 서버 기반 영상감시체계 지능화 구축사업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개소당 산출내역		비고
해 군 (51개소)	3,646.5	NPU서버(NPU 1개 탑재)	7.5	NPU 서버 1식 당 CCTV 50대(채널) 연결
		AI 추론모델 라이선스 (50채널×0.77백만원)	38.5	
		DB서버	19	
		부가세	6.5	
		소계	71.5	
공 군 (12개소)	2,455.2	NPU서버(NPU 4개 탑재)	13	NPU 서버 1식 당 CCTV 200대(채널) 연결
		AI 추론모델 라이선스 (200채널×0.77백만원)	154	
		DB서버	19	
		부가세	18.6	
		소계	204.6	
소계	**6,101.7**			

*자료: 국방부

○ 다만,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의 사업 위탁 방식은 국방 CCTV 체계의 보안성 측면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지능정보화기본법」[21]에 의해

21)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능정보사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사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종합계획, 실행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지능정보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의 지원 및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과 관련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의 지원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2023년 국방부 고시[22]에 의해 국방 ICT혁신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 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 사업관리 위탁 업무를 수행하되, 위탁 범위에는 보안성 검토 업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보안성 검토는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실시하고 국방부가 이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

○ 최근 우리 군이 도입한 CCTV 215대의 관리 웹페이지에 중국의 악성 코드 유포 사이트 IP(인터넷 주소)가 설정된 사례[23]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은 해군 중형함 및 공군 영내 주요 보안시설에 설치되는 체계인 만큼,

위탁사업 주체(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와 보안성 검토 주체(국군방첩사령부)가 분리된 구조 하에서 국방부가 실효적인 관리·감독체계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동 사업은 출연금을 활용한 위탁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

4. 국가기관등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 및 지능정보화의 지원
5.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전문기술의 지원 등 데이터의 생산·관리·유통·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연구
7.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과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8.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9.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10.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홍보·컨설팅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11.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사회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한 사업
12.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22) 국방부고시 제2023-43호 (‘23.12.15.)「국방 지능정보화 혁신 전담기관 지정」

23) 「해·강안 경계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020.

관리 소홀 우려가 있으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군사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의 사업관리 경험이 제한적인 기관인 바, 국방부는 보안성 검토 및 사업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장비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 및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임.

해군과 공군 모두 해당 NPU 기반 AI CCTV 체계의 임무환경 적합성, 운용 필요성, 유지관리 방안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NPU 기반 AI CCTV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이나 타당성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아 장비 도입의 실효성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함.

○ 이로 인해 본 사업은 군 운용 목적보다는 국산 NPU 수요 창출이라는 정부의 산업정책적 목적이 우선된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임.

○ 정부의 국산 NPU 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 AI CCTV 전환 사업 방향성은 국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취지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나,

본 사업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24], 국방부가 2026년도 사업 추

24)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50억원(2026년 100억원)의 예산을 편

진 이전에 장비의 운영개념과 구축효과를 고려한 내실 있는 선행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NPU 서버 기반 영상감시체계 지능화 구축'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연도 이전까지 내실 있는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국방부가 위탁사업 관리와 보안성 검토를 총괄하는 실효적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성하여 공공 CCTV의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8) 통신시설(2131-305), 경계 및 작전시설(2533-321) : 합동참모본부 통신실 환경개선공사 사업비 반영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통신시설(2131-305) 사업은 시설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군 통신시설의 보수 및 교체를 수행하는 사업이며, 경계 및 작전시설(2533-321) 사업은 노후한 경계·작전시설을 개선하여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기여하는 사업임.

○ 통신시설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6억 4,500만원이 증액(1.2%)된 523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계 및 작전시설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970억 1,500만원이 증액(81.5%)된 4,386억 3,0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통신시설·경계 및 작전시설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통신시설	58,732	51,753	51,753	53,109	52,398	645	1.2
경계 및 작전시설	-	241,615	266,510	435,428	438,630	197,015	81.5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합동참모본부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각 군이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통신체계를 하나의 지휘통제체계로 통합하고, 전장 상황평가 및 지휘결심 지원이 가능한 사이버전장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를 위해 방위력개선비를 활용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각 사업별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음[25].

【방위력개선비로 추진하는 합참 지휘통제·전장관리체계 로드맵】

구 분	사 업 명	'2X년	'2X년	'2X년	'2X년	'X0년
방위력 개선비	1 합동 지휘통제체계 * '2X ~'2X년, 약 495억	입찰공고 / 계약체결	장비설치			
	2 연합 지휘통제체계 * '2X ~ '2X년, 약1,178억	입찰공고 / 계약체결	체계분석 / 설계 및 구현	장비설치	DT/OT, 체계안정화	
	3 한국군 지휘통제체계 * '2X ~ 'X0년, 약3,864억	사업타당성조사 *'25.10월~'26.6월	입찰공고 / 계약체결	체계분석 / 설계 및 구현	장비설치	DT/OT, 체계안정화
	4 사이버 전장관리체계 * '2X ~ 'X0년, 약1,265억	사업타당성조사 *'26.1월~'26.8월	입찰공고 / 계약체결	체계분석 / 설계 및 구현	장비설치	DT/OT, 체계안정화

*자료: 국방부

25) **지휘통제체계 및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방위력개선비 사업)**
1 합동 지휘통제체계 (KJCCS : Korean Joint Command & Control System)
○합동 C4I체계의 중심체계로 각군 C4I체계 전장 정보의 공유, 지휘결심을 지원하는 체계
2 연합 지휘통제체계 (AKJCCS : Allied Korea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韓 KJCCS 및 美 CENTRIXS-K와 상호 연동하여 韓·美 연합작전 정보공유체계
3 한국군 지휘통제체계 (KCCS : Korean Command & Control Systems)
○미국의 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JADC2 : Joint All Domain Command & Control) 추진에 따른 한국형 JADC2 구현을 위한 지휘통제체계(합동 전장정보를 활용하여 실시간 전장을 가시화하고, AI 기반의 지휘결심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전력운용을 보장)
4 사이버전장관리체계
○我 사이버자산에 대한 敵 사이버위협을 자동 수집·분석하여, 사이버 전장상황 평가 및 지휘결심을 지원하는 체계

○ 이러한 지휘통제체계와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차세대 지휘통제 전력화 사업에는 GPU, 서버장비 보관용 RACK, 전력 및 냉방설비 등 관련 장비 및 설비 구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나, 현재 합동참모본부의 ○-1 및 ○-3 통신실은 해당 장비 및 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기에는 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26]임.

○ 미래전 대비를 위한 지휘통제체계 및 사이버전장관리체계 개선사업은 각 군간 및 한·미간 합동·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임.

동 지휘통제체계 사업들은 이미 방위력개선비를 통해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수반되는 통신실 환경개선공사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만, 국방부(합동참모본부)는 통신실 환경개선공사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2026년도 국방부 예산요구서에 반영[27]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방위력개선비로 추진되는 지휘통제체계 사업의 적기 전력화가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임.

---

26) O-1 통신실의 가용 공간은 RACK 기준 29개(76㎡)에 불과해 소요 대비 약 27% 수준에 머물고 있음. O-3 통신실의 가용 공간은 RACK 기준 5개(13.2㎡)로, 소요 대비 약 4.6% 수준밖에 되지 않음.

27) 매년 5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여야 함

[2026년 합참 ○-1 및 ○-3 통신실 환경개선공사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비 목	'26 예산 (국방부안) 금액	'26 예산 (정부안) 금액	비고
통신시설 (2131-305)	계	161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실시설계비(420-02)	160		
	공사비(420-03)	1	-	
	감리비(420-04)	-	-	
	시설부대비(420-05)	-	-	
경계 및 작전시설 (2533-321)	계	257	-	
	기본조사설계비(420-01)	102	-	
	실시설계비(420-02)	154		
	공사비(420-03)	1	-	
	감리비(420-04)	-	-	
	시설부대비(420-05)	-	-	
합 계		**418**	**-**	

*자료: 국방부

○ 만약 통신실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위력개선비에 반영된 지휘통제체계 장비를 도입·설치할 수 없으므로, 해당 방위력개선비 예산이 사실상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예산 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합동참모본부 ○-1 및 ○-3 통신실 환경개선공사가 선행되어야만 방위력개선비를 통한 지휘통제체계 장비 설치 및 운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공사에 필요한 2026년도분 사업비 예산[28]을 증액 반영할 필요가 있음.

28) 4억 1,800만원(통신시설 세부사업 1억 6,100만원, 경계 및 작전시설 세부사업 2억 5,700만원)

(9) 진료지원(2231-301) : 응급진료업무보조비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진료지원(2231-301)사업은 민간병원 위탁진료비, 외래진료 수탁검사비, 건강검진비, 여군 부인과 이용비 및 공무상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 장기군의관에 대해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하는 사업임.

○ 진료지원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45억 8,700만원이 감액(3.3%)된 1,358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내역사업인 현역병건강보험부담금의 집행추계 예상액 등의 감소로 인하여 45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임.

[2026년도 진료지원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진료지원	136,763	140,435	152,384	135,848	△4,587	△3.3
진료업무보조비	3,456	4,218	5,995	4,439	221	5.2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진료업무보조비 내역사업은 임상경험이 풍부한 장기군의관[29]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진료 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진료 실적 제고를 위해 지급하는 성과금과 유사한 성격의 제도임.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2억 2,100만원(5.2%)이 증액된 44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진료업무보조비 편성 근거(2025~2026년)]

(단위: 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218	□ 진료업무보조비 : 4,218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4,218백만원 · 일반진료 : 140명 × 2,500천원 × 12월 × 0.85(지급률) = 3,570백만원 · 응급진료 : 108명 × 5건 × 100천원 × 12월 = 648백만원	4,439	□ 진료업무보조비 : 4,439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4,439백만원 · 일반진료 : 140명 × 2,500천원 × 12월 × 0.9(지급률) = 3,791백만원 · 응급진료 : 108명 × 5건 × 100천원 × 12월 = 648백만원

*자료: 국방부

○ 2025년 예산부터 신규 편성된 응급진료업무보조비는 장기군의관이 응급진료를 한 경우 건당 10만원씩 상한 150만원을 기존의 진료업무보조비 월 상한 250만원에 더하여 주말 또는 일과 외 시간 등에 응급진료를 보는 장기 군의관에게 실적에 연동하여 지급(총 상한 400만원)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6억 4,800만원이 편성됨.

29) 지급대상은 ① 전문의를 취득한 장기군의관, ② 군 장학생으로서 전문의 취득 후 의무복무 3년을 마친 군의관이며, 교육훈련·위탁교육·연수 중인 장기군의관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그런데,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응급진료업무보조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8월 말 현재까지 지급실적이 전혀 없음.

이는 국방부가 응급진료 실적인정 기준 및 관리규정을 포함한 훈령을 회계연도 개시 전이나 직후에 제정하지 못하고, 내부 검토 지연으로 지급체계를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임.[30]

○ 이와 같이 응급진료업무보조비는 당초 성과 기반 제도로 설계되었으나, 인정범위·지급절차·검증체계 등에 대한 훈령 마련이 지연되어 8월말 현재까지 집행이 전무함에 따라, 당초 신규사업의 도입 취지인 응급진료 실적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가 반감되었음.

이에 국방부는 2025년 9월에 훈령을 마련하였고, 이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응급진료 실적분을 소급해 지급하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조속히 집행 가능한 상태로 운영되어야 하나, 제도적 근거 마련이 9개월 지연되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응급진료업무보조비도 사실상 4분기에 이르러서야 집행가능하게 되어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확보하지 못함.[31]

○ 이와 같이 응급진료업무보조비는 2025년도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첫해부터 적지 않은 지연지급 방식으로 운영되어 사업 집행

30) 국방부는 민간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진료과목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임. 국방부는 민간의 경우 일과 외 시간에 진료를 보면 무조건 수당을 받으나(당직 콜 수당), 군은 응급환자를 보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설계됨에 따라, 지급대상 및 범위에 대한 정교한 기준 마련을 위해 오랜 논의가 불가피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31) 2025회계연도 개시 후 9개월이 경과한 후 그동안 누적된 응급진료 실적을 소급 인정·지급할 경우, 새롭게 마련된 실적 인정기준의 공정성과 지급의 적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및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따라서 응급진료업무보조비에 대하여는 향후 지급시기(월별・분기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2025년도와 같이 집행지연 및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보건복지지원(2232-303) : 5년차 이상 여성인력에 대한 의무 상담 폐지에 따른 해당 업무추진비 감액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보건복지지원(2232-303)사업은 군 의무분야 전반 및 장병 보건의질 제고를 지원하는 군의무 지원과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성인지력 향상 교육 등을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건복지지원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32억 8,500만원이 증액(21.9%)된 182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내역사업인 양성평등정책지원의 성고충전문상담관 처우 개선(10.5%증액)과 내역사업인 군의무지원의 유해환경 작업장 측정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기 때문임.

[2026년도 보건복지지원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보건복지지원	16,455	14,949	17,944	18,234	3,285	21.9
양성평등정책지원	10,741	11,360	11,950	12,470	1,110	8.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양성평등정책지원 내역사업은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각 군 양성평등정책활동, 성인지력 향상 교육 등을 통해 군 내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성폭력 사고 예방 등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1억 1,000만원 증액된 124억 7,000만원으로 편성됨.

양성평등정책지원의 세사업인 양성평등 및 성고충 상담활동비에는 성고충전문상담관(정원 150명)[32]이 5년차 미만 여군 20,162명과 5년차 이상 16,295명을 대상으로 1:1개별상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240-02) 2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양성평등 및 성고충 상담활동비(안) 산출 근거]

양성평등 및 성고충 상담활동비 332백만원
○ (1:1개별상담) 210백만원 (20,162명 x 5,500원 x 2회 x 0.64) + (16,295명 x 5,500원 x 0.64) - 5년차 미만 업무추진비 142백만원, **5년차 이상 업무추진비57백만원** * '23년도 여성인력 예상현황 : 5년차 미만 20,162명, **5년차 이상 16,295명** ○ (간담회 등) 간담회 2백만원 + 지도방문 4백만원 + 초임간부 간담회 103백만원 ○ (사무실 운영비) 12백만원 (13명 x 80,000원 x 12개월)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재구성

○ 다만, 국방부는 2025년 7월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여 성고충전문상담관의 5년차 이상 여성인력에 대한 의무상담(1:1 개별상담) 규정을 삭제하였음.

32) 성고충전문상담관은 군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같은 성 관련 고충을 전담하여 예방·상담·조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임.

○ 따라서, 양성평등 및 성고충 상담활동비 중 5년차 이상 여성인력을 위한 의무상담(1:1 개별상담)을 위해 편성한 업무추진비 5,700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11) 기동장비(2331-301) : 집행불능 예산 감액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기동장비(2331-301) 사업은 표준 및 상용차량의 정수 대비 부족물량을 확보하고 수명초과 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임.

○ 기동장비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54억 6,200만원이 증액(61.4%)된 3,299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동장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B-A) /A
			요구안	조정안(B)		
기동장비	259,001	204,447	331,538	329,909	125,462	61.4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장비획득 사업은 기동장비, 화력장비, 항공장비, 함정장비, 통신전자장비, 일반장비, 특수장비, 정밀측정장비, 정비장비 획득 등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비획득 사업의 계약방식은 그 기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계약이 이행되는 단년도계약 방식과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계약이 이행되는 다년도계약 방식으로 나뉘어짐.

○ 다년도계약 중 2회계연도('25~'26년)에 걸쳐 계약이 이행되는 장비획득 계약의 경우 2025년도의 계약추진 여부가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33],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사업취소 등으로 계약체결이 불가하게 되거나, 계약체결 후 예산 연부액과 계약 연부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낙찰차액 등)에는 집행하기 곤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데, 그 주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집행불능 예산안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① '25~'26년 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사업 중 **예산 연부액과 계약 연부액 차액**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 예) 낙찰차액

② '25~'26년 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이후 **계약체결이 불가**하게된 경우.
- 예) 계약취소

33) 3회계연도('25~'27년) 이상에 걸치는 계약에도 집행불능의 예산은 편성될 수는 있음.

○ 2026년도 기동장비(2331-301) 예산안에서 사례 1번 사유(낙찰차액)에 따른 집행불능 예산이 4개 장비에 대해서 총 5억 4,2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해 보임.

[기동장비 감액조정 가능액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계약 일자	연부액				
					구분	'25년	'26년	계	조정 가능액
기동장비 (2331-301)	(육)트레일러,탱크형 (400가론 KM106A1)	'25~'26	2,253	25.8.13.	예산	110	2,496	2,606	542
					계약	157	2,095	2,253	
	(공)항공 정비사 출동차	'25~'26	217	25.9.2.	예산	1만원	254	254	
					계약	1만원	217	217	
	(계근)대형버스	'25~'26	399	25.9.23.	예산	1	427	428	
					계약	1	398	399	
	(777)경화학소방차	'25~'26	256	25.6.11.	예산	1	330	331	
					계약	1	255	256	

*주: 2025.10.28. 기준

*자료: 국방부

○ 또한 사례 2번 사유(사업취소)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연내 계약이 불가한 집행불능 사업으로 1개 장비(수조용 소방차)에 대해 2026년도 예산안 2억 6,4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액조정도 필요해 보임.

[기동장비 사업취소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장비명/계약명	사업 기간	예산 연부액				사유
			합계	2025	2026	2027	
기동장비 (2331-301)	(근지단)수조용 소방차	'25~'26	265	1	264		업체 생산중단으로 사업취소

*주: 2025.10.28. 기준

*자료: 국방부

(12) 화력장비(2331-302) : 집행불능 예산 감액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화력장비(2331-302) 사업은 화력장비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준경·고성능확대경·표적지시기 등의 개인전투체계장비와 쌍안경, 나침반 등 방향탐지/유지 및 화력유도를 위한 장비를 획득하는 사업임.

○ 화력장비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억 5,900만원이 증액(12.8%)된 234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화력장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B-A) /A
			요구안	조정안(B)		
화력장비	24,857	20,771	25,676	23,430	2,659	12.8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장비획득 사업은 기동장비, 화력장비, 항공장비, 함정장비, 통신전자장비, 일반장비, 특수장비, 정밀측정장비, 정비장비 획득 등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비획득 사업의 계약방식은 그 기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계약이 이행되는 단년도계약 방식과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계약이 이행되는 다년도계약 방식으로 나뉘어짐.

○ 다년도계약 중 2회계연도('25~'26년)에 걸쳐 계약이 이행되는 장비획득 계약의 경우 2025년도의 계약추진 여부가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34],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계약체결이 불가하게 되거나, 계약체결 후 예산 연부액과 계약 연부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낙찰차액 등)에는 집행하기 곤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데, 그 주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집행불능 예산안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① '25~'26년 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사업 중 **예산 연부액과 계약 연부액 차액**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 예) 낙찰차액

② '25~'26년 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이후 **계약체결이 불가**하게된 경우.
- 예) 계약취소

34) 3회계연도('24~'26년) 이상에 걸치는 계약에도 집행불능의 예산은 편성될 수는 있음.

○ 2026년도 화력장비(2331-302) 예산안에서 사례 1번 사유(낙찰차액)에 따른 집행불능 예산이 2개 장비에 대해서 총 1억 1,8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해 보임.

[화력장비 감액조정 가능액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계약일자	연부액				
					구분	'25년	'26년	계	조정가능액
화력장비(2331-302)	(육)원거리 조준경(조준장치)	'25~'26	2,601	25.8.22	예산	600	2,058	2,658	118
					계약	597	2,004	2,601	
	(정보사)저격용 관측경	'25~'26	246	25.7.23.	예산	1	308	309	
					계약	1	245	246	

*주: 2025.10.28. 기준

*자료: 국방부

○ 또한 사례 2번 사유(사업취소)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연내 계약이 불가한 집행불능 사업예산도 저격용소총 표적획득장비 1개 장비에 대해서 2026년도 예산안 2억 3,2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액조정도 필요해 보임.

[화력장비 사업취소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장비명/계약명	사업기간	예산 연부액				사유
			합계	2025	2026	2027	
화력장비(2331-302)	(육)저격용소총 표적획득장비	'25~'26	234	2	232	-	연내 계약불가로 사업취소

*주: 2025.10.28. 기준

*자료: 국방부

(13) 항공장비(2331-303) : 집행불능 예산 감액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항공장비(2331-303) 사업은 항공장비 정비지원, 정비점검을 위한 작전지원장비 획득 및 전·평시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수명초과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임.

○ 항공장비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억 300만원이 감액(△10.0%)된 288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항공장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B-A) /A
			요구안	조정안(B)		
항공장비	39,011	32,032	32,074	28,829	△3,203	△10.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장비획득 사업은 기동장비, 화력장비, 항공장비, 함정장비, 통신전자장비, 일반장비, 특수장비, 정밀측정장비, 정비장비 획득 등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비획득 사업의 계약방식은 그 기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계약이 이행되는 단년도계약 방식과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계약이 이행되는 다년도계약 방식으로 나뉘어짐.

○ 다년도계약 중 2회계연도('25~'26년)에 걸쳐 계약이 이행되는 장비획득 계약의 경우 2025년도의 계약추진 여부가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35],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계약체결이 불가하게 되거나, 계약체결 후 예산 연부액과 계약 연부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낙찰차액 등)에는 집행하기 곤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데, 그 주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집행불능 예산안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① '25~'26년 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사업 중 **예산 연부액과 계약 연부액 차액**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 예) 낙찰차액

② '25~'26년 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이후 **계약체결이 불가**하게된 경우.
- 예) 계약취소

35) 3회계연도('24~'26년) 이상에 걸치는 계약에도 집행불능의 예산은 편성될 수는 있음.

○ 2026년도 항공장비(2331-303) 예산안에서 사례 1번 사유(낙찰차액)에 따른 집행불능 3개 장비에 대해서 총 2억 2,6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해 보임.

[항공장비 감액조정 가능액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계약일자	연부액				
					구분	'25년	'26년	계	조정가능액
항공장비(2331-303)	(해)엑스레이 필름현상기	'25~'26	202	25.9.4.	예산	1	235	236	226
					계약	1	201	202	
	(해)함정 작전지원용 드론	'25~'26	939	25.9.4.	예산	279	850	1,129	
					계약	279	660	939	
	(공)암호조립-해독장비 하부조립체 구매	'25~'26	14	25.9.1	예산	1만원	16	16	
					계약	1만원	14	14	

*주 2025.10.28. 기준

*자료: 국방부

○ 또한 사례 2번 사유(사업취소)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연내 계약이 불가한 집행불능 사업예산도 맵핍용 드론 1개 장비에 대해서 11억 8,5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액조정도 필요해 보임.

[항공장비 사업취소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장비명/계약명	사업기간	예산 연부액				사유
			합계	2025	2026	2027	
항공장비(2331-303)	(육)맵핑용 드론[내재]	'25~'26	1,186	1	1,185		연내 계약불가로 사업취소

*주: 2025.10.28. 기준

*자료: 국방부

(14) 함정장비(2331-304) : 집행불능 예산 감액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함정장비(2331-304) 사업은 함정장비에 대한 편제 대비 부족소요 및 수명주기 초과장비 등 함정 임무 필수장비와 잠수기세트 등 해상 구조장비의 수명초과장비 교체 사업으로 현존 전력을 극대화하고 작전공백 발생을 최소화하여 전·평시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려는 사업임.

○ 함정장비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1억 2,900만원이 감액(△9.99%)된 281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함정장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B-A) /A
			요구안	조정안(B)		
함정장비	37,410	31,295	31,471	28,166	△3,129	△9.9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장비획득 사업은 기동장비, 화력장비, 항공장비, 함정장비, 통신전자장비, 일반장비, 특수장비, 정밀측정장비, 정비장비 획득 등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비획득 사업의 계약방식은 그 기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계약이 이행되는 단년도계약 방식과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계약이 이행되는 다년도계약 방식으로 나뉘어짐.

○ 다년도계약 중 2회계연도('25~'26년)에 걸쳐 계약이 이행되는 장비획득 계약의 경우 2025년도의 계약추진 여부가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36],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계약체결이 불가하게 되거나, 계약체결 후 예산 연부액과 계약 연부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낙찰차액 등)에는 집행하기 곤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데, 그 주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집행불능 예산안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① '25~'26년 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사업 중 **예산 연부액과 계약 연부액 차액**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 예) 낙찰차액

② '25~'26년 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이후 **계약체결이 불가**하게된 경우.
- 예) 계약취소

36) 3회계연도('24~'26년) 이상에 걸치는 계약에도 집행불능의 예산은 편성될 수는 있음.

○ 2026년도 함정장비(2331-304) 예산안에서 사례 1번 사유(낙찰차액)에 따른 집행불능예산이 15인승 구명정 등 7개 장비에 대해서 총 4억 7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해 보임.

[함정장비 감액조정 가능액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계약일자	연부액				
					구분	'25년	'26년	계	조정가능액
함정장비(2331-304)	(해)연료유 이송펌프 100GPM	'25~'26	316	25.9.1.	예산	30	362	392	407
					계약	30	286	316	
	(해)윤활유이송펌프(NLG-3)	'25~'26	382	25.9.5.	예산	44	397	441	
					계약	44	338	382	
	(해)항공유 연료유 분리기	'25~'26	82	25.9.2.	예산	8	76	84	
					계약	8	74	82	
	(해)15인승 구명정	'25~'26	288	25.9.22.	예산	154	140	294	
					계약	154	134	288	
	(해)잠수기세트, 심해잠수형(탐색/구조)	'25~'26	164	25.10.13.	예산	6	169	175	
					계약	6	157	164	
	(해)화물유잔유펌프	'25~'26	427	25.10.16.	예산	50	446	495	
					계약	50	377	427	
	(정보사)잠수자 추진기	'25~'26	99	25.6.16.	예산	1	158	159	
					계약	1	98	99	
	(정보사)재호흡기	'25~'26	395	25.6.24.	예산	1	518	519	
					계약	1	394	395	

*주: 2025.10.28. 기준

*자료: 국방부

(15) 통신전자장비(2331-305) : 집행불능 예산 감액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통신전자장비(2331-305) 사업은 개인전투장비(청력보호헤드셋, 피아식별용IR), 대테러장비(주파수교란장비, 벽투시레이더 등), 경계용 CCTV, 무선통신기, 방송용앰프 등 통신전자장비를 획득하고 수명초과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임.

○ 통신전자장비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9억 8,500만원이 감액(△6.6%)된 565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통신전자장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통신전자장비	62,939	60,561	70,970	56,576	△3,985	△6.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장비획득 사업은 기동장비, 화력장비, 항공장비, 함정장비, 통신전자장비, 일반장비, 특수장비, 정밀측정장비, 정비장비 획득 등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비획득 사업의 계약방식은 그 기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계약이 이행되는 단년도계약 방식과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계약이 이행되는 다년도계약 방식으로 나뉘어짐.

○ 다년도계약 중 2회계연도('25~'26년)에 걸쳐 계약이 이행되는 장비획득 계약의 경우 2025년도의 계약추진 여부가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37],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계약체결이 불가하게 되거나, 계약체결 후 예산 연부액과 계약 연부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낙찰차액 등)에는 집행하기 곤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데, 그 주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집행불능 예산안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① '25~'26년 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사업 중 **예산 연부액과 계약 연부액 차액**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 예) 낙찰차액

② '25~'26년 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이후 **계약체결이 불가**하게된 경우.
- 예) 계약취소

37) 3회계연도('24~'26년) 이상에 걸치는 계약에도 집행불능의 예산은 편성될 수는 있음.

○ 2026년도 통신전자장비(2331-305) 예산안에서 사례 1번 사유(낙찰차액)에 따른 집행불능 예산이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3개 장비에 대해서 총 2억 2,9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해 보임.

[통신전자장비 감액조정 가능액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계약 일자	연부액				
					구분	'25년	'26년	계	조정 가능액
통신전자 (2331-305)	(해)선박자동식별장치	'25~'26	33	25.9.18.	예산	25	62	87	229
					계약	25	8	33	
	(해)수중정밀영상탐색기	'25~'26	667	25.7.17.	예산	160	586	747	
					계약	160	506	667	
	(해)항해자료기록장치	'25~'26	129	25.9.11.	예산	22	202	225	
					계약	22	107	129	

*주: 2025.10.28. 기준

*자료: 국방부

(16) 일반장비(2331-306) : 집행불능 예산 감액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일반장비(2331-306) 사업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발전기, 취사장비, 세탁 트레일러 등 일반장비 획득 및 수명 초과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임.

○ 일반장비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6억 3,500만원이 감액(△10.0%)된 597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일반장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B-A) /A
			요구안	조정안(B)		
일반장비	87,352	66,355	63,071	59,720	△6,635	△10.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장비획득 사업은 기동장비, 화력장비, 항공장비, 함정장비, 통신전자장비, 일반장비, 특수장비, 정밀측정장비, 정비장비 획득 등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비획득 사업의 계약방식은 그 기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계약이 이행되는 단년도계약 방식과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계약이 이행되는 다년도계약 방식으로 나뉘어짐.

○ 다년도계약 중 2회계연도('25~'26년)에 걸쳐 계약이 이행되는 장비획득 계약의 경우 2025년도의 계약추진 여부가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38],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계약체결이 불가하게 되거나, 계약체결 후 예산 연부액과 계약 연부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낙찰차액 등)에는 집행하기 곤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데, 그 주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집행불능 예산안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① '25~'26년 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사업 중 **예산 연부액과 계약 연부액 차액**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 예) 낙찰차액

② '25~'26년 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이후 **계약체결이 불가**하게된 경우.
- 예) 계약취소

38) 3회계연도('24~'26년) 이상에 걸치는 계약에도 집행불능의 예산은 편성될 수는 있음.

○ 2026년도 일반장비(2331-306) 예산안에서 사례 1번 사유(낙찰차액)에 따른 집행불능 예산이 9개 장비에 대해서 총 6억 8,8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해 보임.

[일반장비 감액조정 가능액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계약일자	연부액				
					구분	'25년	'26년	계	조정가능액
일반장비(2331-306)	(육)구레이다	'25~'26	1,116	25.8.18	예산	1천원	1,293	1,293	688
					계약	1천원	1,116	1,116	
	(육)트렉터,무한궤도식,저속용	'25~'26	194	25.10.13.	예산	1천원	196	196	
					계약	1천원	194	194	
	(육)유압크렌25톤	'25~'26	497	25.9.16	예산	1만원	545	545	
					계약	1만원	497	497	
	(해)5톤 직진식 카고크레인	'25~'26	144	25.9.16	예산	19	157	175	
					계약	19	125	144	
	(해)목재선반	'25~'26	14	25.9.11.	예산	1	74	75	
					계약	1	13	14	
	(해)콘크리트 절단기	'25~'26	18	25.8.1.	예산	1	19	20	
					계약	1	17	18	
	(해)탄약 정비용 집진기	'25~'26	204	25.9.5.	예산	37	335	372	
					계약	37	166	204	
	(해)탄약정비용 페인트 스프레이부스	'25~'26	332	25.9.5.	예산	36	320	356	
					계약	36	296	332	
	(해)탄약 이송용 컨베이어	'25~'26	154	25.9.5.	예산	28	253	281	
					계약	28	126	154	
	(화생방)휴대용 생물학경보장비	'25~'26	630	25.9.12.	예산	8	670	678	
					계약	8	622	630	

*주: 2025.10.28. 기준

*자료: 국방부

○ 또한 사례 2번 사유(사업취소)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연내 계약이 불가한 집행불능 사업예산도 이동식발전차 1개 장비에 대해서 6억 6,0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액조정도 필요해 보임.

[일반장비 사업취소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장비명/계약명	사업 기간	예산 연부액				사유
			합계	2025	2026	2027	
일반장비 (2331-306)	(육)이동식발전차,전력공급용,300kw	'25~'26	660	1천원	660	-	연내 계약불가로 사업취소

*주: 2025.10.28. 기준

*자료: 국방부

(17) 정밀측정장비(2331-308) : 집행불능 예산 감액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정밀측정장비(2331-308) 사업은 스펙트럼 분석기, 전자전 수행능력 점검장비, 모의부하기 등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의 신뢰성과 정확성 보장을 위한 검·교정용 계측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정밀측정장비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9,100만원이 감액(△10.0%)된 107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정밀측정장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B-A) /A
			요구안	조정안(B)		
정밀측정장비 (2331-308)	13,593	11,914	12,793	10,723	△1,191	△10.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장비획득 사업은 기동장비, 화력장비, 항공장비, 함정장비, 통신전자장비, 일반장비, 특수장비, 정밀측정장비, 정비장비 획득 등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비획득 사업의 계약방식은 그 기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계약이 이행되는 단년도계약 방식과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계약이 이행되는 다년도계약 방식으로 나뉘어짐.

○ 다년도계약 중 2회계연도('25~'26년)에 걸쳐 계약이 이행되는 장비획득 계약의 경우 2025년도의 계약추진 여부가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39],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계약체결이 불가하게 되거나, 계약체결 후 예산 연부액과 계약 연부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낙찰차액 등)에는 집행하기 곤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데, 그 주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집행불능 예산안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① '25~'26년 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사업 중 **예산 연부액과 계약 연부액 차액**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 예) 낙찰차액

② '25~'26년 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이후 **계약체결이 불가**하게된 경우.
- 예) 계약취소

39) 3회계연도('24~'26년) 이상에 걸치는 계약에도 집행불능의 예산은 편성될 수는 있음.

○ 2026년도 정밀측정장비(2331-308) 예산안에서 사례 1번 사유(낙찰차액)에 따른 집행불능 예산이 신호분석기 등 2개 장비에 대해서 총 5,3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해 보임.

[정밀측정장비 감액조정 가능액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계약 일자	연부액				
					구분	'25년	'26년	계	조정 가능액
정밀측정 장비 (2331-308)	(해)신호분석기	'25~'26	354	25.9.19.	예산	1	394	395	52
					계약	1	353	354	
	(공) 주파수용 교정기 구매	'25~'26	162	25.9.19.	예산	1만원	173	173	
					계약	1만원	162	162	

*주: 2025.10.28. 기준

*자료: 국방부

(18) 정비장비(2331-309) : 집행불능 예산 감액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정비장비(2331-309) 사업은 전차, 유도탄 정비장비, 소음·진동 측정장비 등 각종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장비의 정비를 지원하는 정비장비 획득 및 수명초과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임.

○ 정비장비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억 9,900만원이 감액(△17.2%)된 244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정비장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B-A) /A
			요구안	조정안(B)		
정비장비	43,832	29,586	24,537	24,487	△5,099	△17.2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장비획득 사업은 기동장비, 화력장비, 항공장비, 함정장비, 통신전자장비, 일반장비, 특수장비, 정밀측정장비, 정비장비 획득 등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비획득 사업의 계약방식은 그 기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계약이 이행되는 단년도계약 방식과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계약이 이행되는 다년도계약 방식으로 나뉘어짐.

○ 다년도계약 중 2회계연도('25~'26년)에 걸쳐 계약이 이행되는 장비획득 계약의 경우 2025년도의 계약추진 여부가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40],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계약체결이 불가하게 되거나, 계약체결 후 예산 연부액과 계약 연부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낙찰차액 등)에는 집행하기 곤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데, 그 주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집행불능 예산안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① '25~'26년 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사업 중 **예산 연부액과 계약 연부액 차액**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 예) 낙찰차액

② '25~'26년 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이후 **계약체결이 불가**하게된 경우.
- 예) 계약취소

40) 3회계연도('24~'26년) 이상에 걸치는 계약에도 집행불능의 예산은 편성될 수는 있음.

○ 2026년도 정비장비(2331-309) 예산안에서 사례 1번 사유(낙찰차액)에 따른 집행불능 예산이 탄약이송대 등 5개 장비에 대해서 총 10억 3,8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해 보임.

[정비장비 감액조정 가능액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계약일자	연부액				
					구분	'25년	'26년	계	조정가능액
정비장비(2331-309)	(육)입고세척 자동화체계	'25~'26	1,909	25.10.13.	예산	1천원	2,375	2,375	1,038
					계약	1천원	1,909	1,909	
	(해)IC검사기	'25~'26	345	25.7.18.	예산	1	379	380	
					계약	1	344	345	
	(해)탄약 열순환식 건조기	'25~'26	95	25.9.5.	예산	8	166	174	
					계약	8	87	95	
	(해)탄약이송대	'25~'26	111	25.9.5.	예산	10	193	203	
					계약	10	100	111	
	(해)탄약 정비용 분사제청기	'25~'26	138	25.9.5.	예산	25	479	504	
					계약	25	113	138	

*주: 2025.10.28. 기준

*자료: 국방부

○ 또한 사례 2번 사유(사업취소)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연내 계약이 불가한 집행불능 사업예산도 시험대 및 유압계통구성품용 등 1개 장비에 대해서 1억 7,3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액조정도 필요해 보임.

[정비장비 사업취소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장비명/계약명	사업 기간	예산 연부액				사유
			합계	2025	2026	2027	
정비장비 (2331-306)	(육)시험대, 유압계통구성품용(른)	'25~'26	174	1	173	-	단종으로 사업취소

*주: 2025.10.28. 기준

*자료: 국방부

(19) 특수장비(2331-307) : 집행불능 예산 감액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특수장비(2331-307) 사업은 특수무기(대공, 지상·공중·해상 유도무기 등) 발사대 및 유도탄 등의 검사 및 보조장비 등을 획득하고 수명 초과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임.

○ 특수장비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6억 3,500만원이 감액(△10.0%)된 597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특수장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B-A) /A
			요구안	조정안(B)		
특수장비	26,440	31,835	39,234	36,803	4,968	15.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장비획득 사업은 기동장비, 화력장비, 항공장비, 함정장비, 통신전자장비, 일반장비, 특수장비, 정밀측정장비, 정비장비 획득 등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비획득 사업의 계약방식은 그 기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계약이 이행되는 단년도계약 방식과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계약이 이행되는 다년도계약 방식으로 나뉘어짐.

○ 다년도계약 중 2회계연도('25~'26년)에 걸쳐 계약이 이행되는 장비획득 계약의 경우 2025년도의 계약추진 여부가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41],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계약체결이 불가하게 되거나, 계약체결 후 예산 연부액과 계약 연부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낙찰차액 등)에는 집행하기 곤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데, 그 주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집행불능 예산안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① '25~'26년 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사업 중 **예산 연부액과 계약 연부액 차액**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 예) 낙찰차액

② '25~'26년 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이후 **계약체결이 불가**하게된 경우.
- 예) 계약취소

41) 3회계연도('24~'26년) 이상에 걸치는 계약에도 집행불능의 예산은 편성될 수는 있음.

○ 사례 2번 사유(사업취소)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연내 계약이 불가한 집행불능 사업예산이 천궁시험세트 1개 장비에 대해서 8,6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해 보임.

[특수장비 사업취소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장비명/계약명	사업 기간	예산 연부액				계약체결 예정일
			합계	2025	2026	2027	
특수장비	(공)천궁시험세트(사격통제장치용)	'25~'26	802	107	86	608	연내 계약불가로 사업취소

*주: 2025.10.28. 기준

*자료: 국방부

(20) 병참물자(2332-302) : 체육비품 예산 연차별 보급계획 및 군별 배분계획 종합적 수립·관리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병참물자(2332-302) 사업은 작전 및 부대운영에 필요한 비품, 천막, 행정사무기기 등 자산성 물자와 행정소모품, 세척재료 등 소모성 물자를 획득·보급하고, 장병급식 질 향상을 위한 취사장 현대화, 가스취사세트 노후교체 소요, 기타 각종 취사기구 보충·노후교체 소요를 확보하는 사업임.

○ 병참물자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626억 5,600만원이 증액(25.7%)된 3,067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병참물자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병참물자	270,774	244,101	270,088	306,757	62,656	25.7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병참물자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26억 5,600만원 증가하여 25.7%로 상당규모의 증가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내역사업인 부대비품 사업의 증액(665억원)에 기인하며 이 중에서도 체육비품 구매를 위해 444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2026년도 부대비품 구매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부대비품	125,444	92,421	158,921	66,500	72.0

*자료: 국방부

○ 병영생활관에 있는 체력단련장 내 체육비품은 그동안 복지기금으로 집행하였는데, 기금 사정상 소요에 대비하여 체육비품 공급이 부족하고 수리·정비 등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하게 운영되어 왔음.

○ 이에 장병들의 체력단련이 단순히 복지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작전·부대 운영을 위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2026년도부터 병참물자 사업에 신규로 포함되었음.

○ 체육비품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444억원으로 육군 대대급

이하 병영생활관의 체력단련장 1,057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병영생활관 체력단련장 체육비품 보급계획안]

구분	대상	실당 예산단가	예산안
2026	육군 대대급 이하 1,057실	4,200만원	444억원

*자료: 국방부

○ 병참물자 사업은 전 부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품목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약 10년의 장기계획 아래 연차별로 물자를 획득·보급해 왔음. 그러나 금번 체육비품 사업의 경우, 사업 초년도에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사업자 선정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됨.

○ 체육비품은 장병들의 높은 선호도와 체력 증진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예산의 제약을 감안할 때 연차별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체계적으로 전 대대급 부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동 사업은 현재 육군에 한정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타군에 대한 체육비품 보급계획을 병행 수립하여 군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체력단련장 내 체육비품 구매사업에 대해 연차별 보급계획 및 군별 배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할 필요가 있음.

(21) 화력장비(유지)(2333-306) :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감액조정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화력장비(유지)(2333-306) 사업은 개인화기, 공용화기, 화포, 함포 및 사격관측기재 등의 기능발휘를 위한 야전·창정비, 외주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리부속을 확보하는 사업임.

○ 화력장비(유지)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85억 4,900만원이 감액(△7.5%)된 1,052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화력장비(유지)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화력장비(유지)	109,521	114,304	123,168	105,271	△8,549	△7.5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사격관측기재(유지) 사업은 야간투시경, 각종 탐지장비 등의 운영, 유지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비비와 수리부속을 확보하는 사업임.

[2026년도 사격관측기재(유지)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사격관측기재 (유지)	17,706	20,899	22,625	1,726	8.3

*자료: 국방부

○ 사격관측기재(유지)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7억 2,600만원이 증액(8.3%)된 226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사격관측기재(유지) 사업의 최근 해당연도 내 해당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미집행액(추경감액, 이전용액,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22년도 미집행액 규모는 167억 6,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미집행액 비율은 56.3%에 달했고,

2023년도에는 미집행액 규모가 86억 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미집행액 비율은 25.7%에 달했으며,

2024년도에는 미집행액 규모가 122억 4,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미집행액 비율은 41.9%로 나타나 편성 예산액 대비 미집행 비율은 매년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사격관측기재(유지)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추경(감)+이전용액 등(A)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B)	미집행액 합[42] (A+B)	미집행액 비율
2022	29,766	12,182	15,974	846	4,581	**16,763**	**56.3**
2023	33,525	542	23,968	1,173	8,060	**8,602**	**25.7**
2024	29,188	9,167	17,706	408	3,080	**12,247**	**41.9**
2025	20,899		13,348				
2026(안)	22,625	-	-	-	-	-	-

*주: 미집행액 비율: (이전용액 등+불용액)÷예산액

*자료: 국방부

○ 사격관측기재(유지) 사업에 대해 2026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미집행액에도 불구하고 17억 2,600만원을 증액시키고 있어 2026년도에도 동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는 예산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격관측기재(유지)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연도별 예산액 대비 미집행 규모를 고려하면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집행가능성을 반영하여 일정 규모의 감액조정이 필요해 보임.

42) 해당연도 내 해당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예산액

(22) 함정장비(유지)(2333-308) : 함정 MRO 선행연구 조기 추진 등

(가) 예산안 개요

○ 함정장비(유지)(2333-306) 사업은 전투함, 상륙전함, 잠수함, 지원함 등 함정 및 탑재장비를 상시 임무수행 가능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정비지원, 수리부속 확보를 통해 전·평시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임.

○ 함정장비(유지)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27억 5,200만원이 증액(4.43%)된 5,363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함정장비(유지)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함정장비(유지)	487,102	513,586	545,685	536,338	22,752	4.43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해군은 2026년도에 현재 군 주도로 수행 중인 함정정비를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인 함정 MRO 사업[43]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창정비] LPH 성능개량·창정비 통합수행: 436.8억원
• 사업내용 : MRO 업체(HJ중공업) 주관 LPH(독도함) 성능개량·창정비 통합수행
· [창정비] DDG 선체 및 주요장비 외주정비: 100.0억원
• 사업내용 : DDG(세종대왕함) 완전분해 정비를 기존 군직정비에서 민간 MRO업체 주관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
· [상가정비] 민간 상가대 이용한 함정 외주 상가정비: 30.0억원
• 사업내용 : 정비창 상가대 여력 부족으로 '18년 인수 후 정기/중간상가 미실시 함정 대상 민간조선소 상가대 이용, 상가정비 수행 * LST-Ⅱ(노적봉), AOE-Ⅱ(소양함) 등 4척 : 단년도 사업 / '26년 30.0억원
· [유지보수] 잠수함 추진체계 통합 유지보수: 23.4억원
• 사업내용 : SS-Ⅱ/Ⅲ 추진계통 유지보수를 MRO 업체 주관 통합수행 * SS-Ⅱ 추진전동기, SS-Ⅲ 추진전동기・연료전지・통합플랫폼관리체계

*자료: 국방부

○ MRO는 군수사와 업체 간 계약을 통해 MRO업체 주관으로 장비·설비 제작사를 조정 및 통제하여 통합 정비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정비활동을 말함.

43) M(Maintenance 정비), R(Repair, 수리), O(Overhaul, 성능개량, 전면점검)

○ 이는 병력감축으로 인한 군 정비인력 감소 상황에서 함정의 대형화·신형화로 정비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의 기술·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비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군 정비인력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품질과 장비가동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러한 함정 MRO 시범사업을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LPH 성능개량 창정비 통합수행 등 총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에 비해 241.0% 증액하고 있음.

[2026년도 함정 MRO 정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계	173	590	417	241.0
LPH 성능개량·창정비 통합수행	127	437	310	244.0
DDG/DDH-Ⅱ 선체 및 주요장비 외주정비	-	100	100	100.0
함정 외주 상가 정비		30	30	100.0
잠수함 추진체계 통합 외주정비	46	23	△23	△50.0

*자료: 국방부

○ 민군상생 기조, 아웃소싱 확대 국방정책 및 국내산업 생태계 조성 흐름 등 MRO 시범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첫째, 해군 함정 MRO 정책 추진을 위해 2024년부터 함정 MRO 추진계획을 작성·보완 및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부 검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함정 MRO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다만, 국방부로 소요제기된 정책연구 과제가 2025년도 연말에 확정되어 2026년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연구결과가 시범사업 추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정식연구 이전이라도 KIDA 정책현안 자문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함정 MRO 정책연구가 선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장비에 대한 정비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7조제1항에 따라 군직정비, 외주정비, 국외정비로 구분되는데 외주정비는 국내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로서, 각군에서 정비가 불가능하거나 국내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7조(장비정비 구분 등) ① 군이 보유한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는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과 수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군은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 경제성, 품질보증 정도를 고려하여 정비방법을 결정한다.

1. 수행 기관에 따른 구분

가. 군직정비 :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능력(정비인력, 정비기술, 정비용 장비 및 공구, 수리부속, 정비시설 등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군 보유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군에서 직접 정비

나. 외주정비 : 국내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 각군에서 정비가 불가능하거나 국내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 실시

다. 국외정비 : 국외생산 또는 정비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 국내정비가 불가한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해 실시하며, 각군·기관은 국외정비품의 기술자료 및 정비능력을 확보하여 가능한 국내정비로 전환해야 한다.

MRO 정비도 외주정비로서 현재 규정상으로는 MRO가 군직정비에 비해 경제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훈령상 '경제적'이라는 용어는 단순 비용에만 한정되어 해석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예산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MRO 정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단순 정비비용 외에도 효율성, 품질, 정비여건, 긴급성 등 군 운용상 종합적인 경제성을 판단하여 추진될수 있도록 외주정비 관련 훈령을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음.

(23) 수송활동(2336-301) : TMO지원 대상 휴가 확대 검토 필요 / 군차량 보험 장기계속계약 방식에 대한 법령적 보완 필요 / 미반영된 교육용 상용드론 보험료 증액 검토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수송활동(2336-301) 사업은 육로·철도·해상·항공수단으로 병력 및 군수장비·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여 전·평시 군수 지원태세를 완비하도록 하고 군 장병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사업임.

○ 수송활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9억 2,700만원이 증액(2.4%)된 1,257억 5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수송활동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수송활동	123,448	122,778	142,778	125,705	2,927	2.4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① TMO 후급지원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TMO(Transportation Movement Office)는 국군수송사령부에서 국군 장병들의 수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무실로 장병들의 휴가 등 이동시에 철도 수송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함.

[TMO 운영 현황]

구 분	A급	B급	C급 이하	출장형 TMO
위 치	6개소	15개소	6개소	17개소
	서울, 용산, 동대구, 부산, 대전, 계룡	동서울, 광명, 수원, 강릉, 평택, 수서, 춘천, 울산, 창원, 포항, 오송, 창원중앙, 익산, 천안아산, 광주송정	만종, 마산, 진주, 논산, 장성, 목포	경산, 오근장, 서대전, 덕정, 퇴계원, 진해, 김천구미, 영천, 경주, 신탄진, 연무대, 증평, 홍성, 조치원, 영동, 전주, 부강
기 준 (장병 이용수)	一週 이용자 1,000명 이상	一週 이용자 500~1,000명	一週 500이하	

자료: 국방부

○ TMO를 통한 철도수송 지원은 부대에서 행선지(열차 정차구간)까지 여비 미지급 휴가[44]에 대해 원격(어플)으로 표를 받거나 현장 TMO에서 표를 받아 열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44) 정기휴가(여비 지급) 외 청원휴가, 포상휴가 등은 여비 미지급 휴가임.

○ 정기휴가시에는 교통비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정기휴가를 포함한 휴가임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TMO 후급지원을 받거나 원격으로 표를 받았음에도 현장 TMO에서 중복하여 후급지원을 신청하여 받는 경우 및 후급지원 범위(부대~행선지 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한 지원 신청시에는 TMO 위법·불법사용에 해당되어 당사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 후에 부정사용된 금액은 전부 국고로 환수조치하고 있음.

○ TMO 후급지원은 「2024년 수송운영지시」에 따라 여비 미지급 휴가(청원·특별휴가), 신병 위로외박, 공무출장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통비가 지급되는 정기휴가에 대해서는 TMO 후급지원은 불가함.

○ 정기휴가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한데, 만약 정기휴가의 일부를 청원휴가 또는 특별휴가에 붙여서 갈 경우 교통비가 지급된 정기휴가란 이유로 TMO 후급지원이 불가하여 장병들의 휴가사용 권한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예를 들어, 청원휴가 5일의 경우 TMO 후급지원이 가능하나, 여기에 정기휴가 1일을 붙여 6일의 휴가를 가는 경우 TMO 후급지원이 제한되는 것임.

○ 정기휴가는 교통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휴가시에도 TMO 후

급지원을 할 경우, 중복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기휴가의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정기휴가 중 일부를 포상휴가에 붙여서 가는 경우, 원래 지원되는 포상휴가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45]과 장병의 휴가권한을 더욱 폭넓게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군 장병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동 사업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할 것임.

[TMO 후급지원 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안
정기휴가	10일	TMO 후급지원 ×	TMO 후급지원 ×
	5일 +포상휴가 5일	TMO 후급지원 ×	TMO 후급지원 ○
정기휴가	10일	TMO 후급지원 ×	TMO 후급지원 ×
	5일	TMO 후급지원 ×	TMO 후급지원 ×

○ 따라서 국방부는 여비 미지급휴가에 정기휴가를 붙여서 가는 경우에도 TMO 후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장병들의 휴가권한을 확대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5) 이는 금지되었던 지원을 완화하는 경우로서 TMO 후급지원 추가소요가 발생함.

② 군차량 보험 장기계속계약 방식에 대한 법령적 보완 필요

○ 국방부는 운용 중인 군 차량에 대해 국가 재정의 위험 분산, 피해자 권익 보호, 법적 분쟁 예방 및 군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군 차량 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 최근의 군 차량 보험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으로 15만건 이상에 대해 200억원 이상의 집행액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의 보험회사와는 2023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4년간의 계약기간을 맺고 군 차량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군 차량보험 가입 현황]

(단위: 백만원)

보험회사	구분	집행액
KB손해보험	'16. 12.~'19. 12. (3년)	'17년: 13,257(159,665건)
		'18년: 15,813(148,360건)
		'19년: 18,480(142,326건)
KB손해보험	'20. 02.~'23. 01. (3년)	'20년: 15,942(128,584건)
		'21년: 15,776(134,516건)
		'22년: 17,575(147,056건)
삼성화재	'23. 02.~'27. 01. (4년)	'23년: 19,038(175,898건)
		'24년: 21,289(155,906건)
		'25년 7월말: 15,401(107,320건)

자료: 국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매년 예산과 연계되어 집행되므로 회계연도에 맞춘 1년 단위 계약이 원칙임.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1년 단위 계약의 예외로서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 국방부가 군 차량 보험을 3~4년의 장기간을 한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열거된 장기계속계약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 법률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

○ 장기간의 지속적인 군 차량 보험처리 필요성과 매년 단위로 계약 체결을 통한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면 군 차량보험에 대해서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한 업체와 다년간의 계약은 다른 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기본원칙인 경쟁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열거된 대상만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군차량 보험처리의 안정성을 위해 장기계속계약이 필요하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군 차량보험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③ 미반영된 교육용 상용드론 보험료 증액 검토 필요

○ 내역사업인 수송제요금은 병력 및 군수 장비·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육로·철도·항공·해상 여객임 지원 및 차량 및 드론 보험료 등을 위한 사업임.

○ 이 중 드론보험료는 군에서 운용 중인 상용드론에 대한 보험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8월 현재 4,443개를 보험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26년도 드론보험료 예산안은 2025년도와 동일하게 13억 7,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다만, 국방부는 전 장병이 군 입대 후 손쉽게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사업을 계획하여 2026년 육군 전 야전부대 및 교육기관에 분대당 1대 이상을 보급(11,184대)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예산안으로 204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2026년도 교육훈련용 드론 관련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교육훈련용 상용 드론 구매	870	19,013	18,143
전문교관 양성	1,509	1,437	△72
계	2,379	20,450	18,071

*자료: 국방부

○ 그런데 국방부는 증가하는 드론 11,184대에 대한 보험료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 드론보험 가입에 어려움에 예상됨. 특히 수송활동(2336-301)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이 부대이동 등에 따른 이사화물임 중 사다리차 1회 사용분에 대한 예산(29억 2,700만원)만 증액되고 나머지 내역사업 예산안은 모두 동결되었고, 2024년도 기준 집행률이 99.4%[46]에 달해 추가되는 드론보험료 사용에 전용 등을 통한 사용이 어려워 보임.

○ 따라서 2026년도 정부안에 미반영된 교육용 상용드론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증액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47].

□ 11,184대×200,500원≒22억 4,000만원 ※ 최근 3년간 드론 1대당 보험료

○ 다만, 드론 구매예산 편성시 이에 동반되는 필요예산을 사전 사업계획 수립시 적시에 편성하지 못하고 국회의 심의단계에서 필수적인 예산이라는 사유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행태로 차후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46) 수송활동(2336-301) 집행률 2022년: 96.8%, 2023년: 98.9%, 2024년: 99.4%
47) 다만, 보험가입 추가 드론 수는 본 사업(50만 드론전사 양성 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의결과에 맞출 필요가 있음.

(24) 재난 및 안전관리(2337-301) : 안전교육 콘텐츠 적극적 제작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재난 및 안전관리(2337-301) 사업은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한편, 안전교육훈련과 대외기관과의 안전분야 협력 제고를 통해 국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임.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5,800만원이 감액(△1.73%)된 316억 8,7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재난 및 안전관리	31,687	32,245	33,572	31,687	△558	△1.73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안전교육훈련 강화 사업은 직책별 안전전문교육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체험교육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각 군은 동 사업을 통해 매년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안전교육에 활용하고 있음.

[2026년도 안전교육훈련 강화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안전교육훈련 강화	1,456	1,589	1,575	△14	△0.89

*자료: 국방부

○ 최근 각군의 연도별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활용 현황을 보면 육군 및 해군의 매년 가상현실(VR) 및 영상을 제작하여 신병교육대대, 헬기 탑재 함정 등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공군 및 해병대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실적이 전무함.

[연도별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활용 현황]

구분	연도	제작 건수 및 제작 내용(콘텐츠명)		활용실적
육군	2022	VR	ㅇ전기안전관리자 양성과정	공병학교 납품
		영상	ㅇ소방시설 종류 및 점검 방법	493회
			ㅇ육군 3대 안전조치 생활 캠페인	1,542회
			ㅇ궤도 장비 및 전복사고 예방	4,289회
			ㅇ전차 정비 안전사고 예방	1,845회

			○전기설비의 종류 및 유의사항	545회
			○각종 손가락 절단사고 예방	922회
	2023	VR	○사다리 작업 간 낙상사고 예방 ○야간 경계 작업 간 떨어짐 사고 예방 ○차량 이동 간 떨어짐 사고 예방 ○중량물 작업 간 끼임 사고 예방 ○차량 유도 간 깔림 사고 예방	신병교육대대 및 육군훈련소 납품
		영상	○정비고 내 안전사고 예방	946회
			○취사장 내 안전사고 예방	946회
			○병영생활 안전 패키지	946회
			○120밀리 자주박격포 운용 간 안전사고 예방	76회
			○K1 구난전차 운용 간 안전 동영상	88회
			○전차 조종(전·중·후) 안전 동영상	57회
			○장갑차 승무원 정비 안전 동영상	33회
			○화생방장비 운용 간 안전사고 예방	87회
	2024	VR	○KCTC 훈련장 안전운행 시뮬레이션	신병교육대대 납품
		영상	○항공운항 간 안전사고 예방	111회
			○군 내 중독사고 예방	174회
			○군 내 화재사고 예방(튀김솥 내 식용유 화재사고)	395회
			○군 내 화재사고 예방(리튬전지 등 배터리 화재사고)	465회
			○혹서기 부대활동 간 온열손상 사고 예방	1,452회
			○총기사고 예방	969회
			○동물상해 사고 예방	367회
			○적외선 연막차장 유탄 안전교육 동영상	109회
			○궤도장비 장비 운용, 정비 사고예방	413회
			○화생방 제독 작전간 안전사고 예방	144회
			○화생방 정찰 작전간 안전사고 예방	359회
			○화생방 연막 작전간 안전사고 예방	55회
	2025	VR	○수류탄 투척훈련	제작중
		영상	○총포(K6)의 동작부 운용 간 끼임사고 예방	* VR콘텐츠는 신병교육대대 납품예정 ** 영상콘텐츠는 전투준비안전단
			○차량 구난로프 운용 간 감김사고 예방	
			○위험성평가체계(ARAS) 개선 교육영상	
			○K21 보병전투차량 안전사고 예방	
			○K-1, K-2전차 전동조작 안전사고 예방	
			○화생방부대 훈련준비 간 안전사고 예방	

			○화생방작전간 안전사고 예방	홈페이지내 탑재예정
			○스쿠버 잠수시 반드시 지켜야하는 5가지 수칙	
			○장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스쿠버 사고	
			○고공훈련간 안전사고 예방	
해군	2022	영상	○탑재헬기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헬기 탑재 14개 함정 내 배부 및 영상 시청 조치
	2023	영상	○해군 장병 안전사고 예방 교육	기초 군사 교육 주관 7부대 배부 및 영상 시청 조치
	2024	영상	○진료 부주의 및 환자 안전사고 예방	포항병원 영상 시청, 의무병과 및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활용
	2025	영상	○배터리 안전사고 예방	-
		영상	○초임병을 위한 안전교육 자료	-
공군	-	-	-	-
해병대	-	-	-	-

*자료: 국방부

○ 각군별 특징에 따라 각각의 안전 관련 취약점에 대한 여러 상황들에 대한 가상체험, 영상시청 등을 통해 안전예방 등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에 각군의 특성을 반영한 예산편성과 주제선정 등 사전계획 수립을 통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각군별 특징에 맞게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활용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5) 지상교육용탄약(2339-301) : 합리적인 사격훈련계획 수립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지상교육용탄약(2339-301) 사업은 육군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교육훈련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훈련용 탄약을 확보하는 사업임.

○ 지상교육용탄약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46억 8,500만원이 감액(△5.3%)된 842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지상교육용탄약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지상교육용탄약	79,657	88,980	92,092	84,295	△4,685	△5.3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탄약은 「국방탄약 업무수행 지시」제10조제1항에 따라 전투예비탄약과 동종의 교육훈련용 탄약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일원화하고 기타 교육훈련용 탄약은 전력운영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도 전투예비탄과 동일 탄종의 교육용탄약은 방위력개선비로 소요 반영을 원칙으로 하며, 전력운영비 소요는 교육훈련전용 탄종에 대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용탄약은 예산편성시 실제 훈련 소요에 근거한 교탄 소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실제사격소요' 및 '5개년 사용률'을 반영하여 소요 산출 및 예산 편성 중에 있어 예산편성시 수량은 실제 사용률을 반영한 수량으로서 연간 확보가 필요한 수량임.

[교육용탄약 예산요구액 산출방식]

26년 총소요	-	25년말 예상재고	-	전투탄 활용	=	예산 요구
실제사격소요×5개년사용률+운영소요	-	24년말 재고+25년(수입-불출)	-	전투탄 활용	-	부족 소요

*자료: 국방부

○ 지상교육용탄약에 대한 사격훈련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매년 70%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연례적으로 사격훈련계획을 상당규모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상교육용탄약 연도별 사격훈련 계획 대비 실적48)]

연도	사격훈련계획(발)	사격훈련실적(발)	계획대비 실적(%)
2022	50,274,069	38,795,535	77
2023	51,571,121	37,859,829	73
2024	44,429,670	32,113734	72
2025	48,790,197	28,337,560	58

*자료: 국방부

○ 지상교육용탄약의 최근 예산집행률이 90%대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실제 사격소요를 기반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교육용탄약 사용훈련을 저조한 상황으로 보긴 힘들어 보임.

○ 결국 실제 사격소요보다 사격훈련계획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도전적인 사격훈련계획 수립과 이의 달성을 통해 사격훈련량을 극대화하고 실전에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사격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못미치는 실적을 매년 반복하는 것은 군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낮은 실적에 대한 전투력 왜곡, 목표의 무리한 달성에

48) 2024년도 기준 함포교육용탄약 계획 대비 실적: 78%, 항공교육용탄약 계획 대비 실적: 83.8%로 나타나 각군별 교육용탄약의 계획 대비 실적이 높지 않은 상황임.

따른 과도한 탄약 소모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국방부(육군)는 사격훈련계획 수립시 실제 사용률 및 합리적인 목표 설정 등을 통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대 전투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해야 할 것임.

(26) 전력지원체계지원(2341-302) : 인건비 교부시 집행잔액 확인 철저 필요 / 내실있는 구매요구서 작성 및 시장조사 능력 배양 교육 실시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전력지원체계지원(2341-302) 사업은 군 전투력 보장 및 장병 복지향상을 위한 각군 주도의 전투지원장비, 전투지원물자, 교육훈련물품 등 전력지원체계를 연구개발하는 사업과,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의 전방위적 지원으로 각군 소요창출 활성화,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 주도 혁신적인 연구개발사업 추진으로 각군 전력지원체계 획득을 고도화하는 사업임.

○ 전력지원체계지원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6억 9,200만원이 증액(32.0%)된 11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전력지원체계지원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전력지원체계지원	7,289	8,419	11,898	11,111	2,692	32.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① 인건비 분기별 교부 및 교부시 집행잔액 확인 철저 필요

○ 내역사업인 기품원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 출연금은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내의 전력지원연구센터에 연구개발출연금(360-05)을 지급하여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관리, 구매요구서 작성 기술지원, 소요기획·기술수준조사 등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임.

○ 동 연구개발출연금에는 인건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인건비는 전력지원연구센터의 구매요구서 및 소요기획·기술수준조사 등 전력지원체계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집행됨.

○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의 정원은 29명으로 이를 위해 매년 인건비를 교부하고 있으나,

기존 인력의 중도퇴직자 발생, 신규 사업인력 간 채용시기 차이 및 경력 산정에 따른 집행액 차이 등으로 매년 인건비에서 일정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2022	2,225	2,225	1,468	757
2023	2,447	2,447	1,750	697
2024	2,436	2,436	2,016	420
2025	2,230	2,230	1,451	-
2026	2,230	-	-	-

*자료: 국방부

○ 연구개발출연금(360-05)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따라 인력 미충원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은 기존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 연구개발적립금, 성과급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무부처는 마지막 분기 또는 월에 예상되는 집행잔액 만큼 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은 결산잉여금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 이는 인건비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연구개발 자금이 효율적 배분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그런데 국방부는 매년 전력지원연구센터에 인건비를 교부하면서 매년 1~2회에 걸쳐 일괄교부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있음.

[연도별 인건비 교부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인건비 교부일
2022	1월	1,030
	7월	1,195
2023	1월	1,223
	7월	1,224
2024	1월	1,136
	7월	1,300
2025	2월	2,230

*자료: 국방부

○ 따라서 국방부는 2026년도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에 인건비에 대해 분기별로 교부할 필요가 있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잔액 확인 등 인건비 교부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② 내실있는 구매요구서 작성 및 시장조사 능력 배양 교육 실시 필요

○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내의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는 각군의 전력지원체계(장비, 물자 등) 구매요구서 작성 및 시장조사를 지원하고 있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제9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하여금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국방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2. 선행연구 수행
3. 기술 조사·분석
4. 소요결정 및 획득방법 결정
5. 군사요구도 및 구매요구서 작성
6. 민간 우수기술·제품의 조사 및 분석
7.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과제 관리 등
9.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7조(구매) 제4항 : 각 군은 군수품의 원활한 구매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규격(구매요구서)을 작성한다. 이때 시장조사, 품질보증 사항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를 국기연(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에서는 정원 7명의 인력이 구매요구서 작성 지원 및 시장조사 지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평균 조사기간은 2주~3개월 가량 소요되고,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를 현장방문 또는 인터넷시장 조사로 실시하고 있음.

조사방법	시장조사 내용
인터넷시장조사, 업체방문확인 등	· 최소 2개 업체 이상 유무 확인 · 각 업체별 제원 및 성능 비교 확인 · 시장가격, 군사요구도 충족여부 등

*자료: 국방부

○ 연도별 구매요구서 및 시장조사 지원 건수 및 평균 소요기간을 보면 구매요구서 및 시장조사의 지원건수 및 평균 소요기간 모두 증가 추세에 있음.

[연도별 구매요구서 및 시장조사 건수 및 평균 소요기간]

구분	구매요구서		시장조사	
	건수	평균 소요기간	건수	평균 소요기간
2021	322건	10일	26건	6일
2022	275건	10일	64건	6일
2023	232건	10일	90건	4일
2024	347건	10일	121건	10일
2025. 9.	420건	10일	94건	10일

○ 한편, 2024회계연도 국방위원회 결산심사시 정비장비(2331-309)에 대해 ‘국방부는 향후 미편성된 신규사업의 추진을 지양하고 면밀한 시장조사 등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가 적시에 획득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주의)으로 채택한 바 있음.

○ 한 예로, 2024년도 정비장비의 획득사업에서 한 곳의 업체에서도 응찰을 하지 않은 장비가 13건에 달하였는데, 이 장비들에 대해서는 시장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2024년도 정비장비 중 업체 무응찰 장비현황]

구분	시장조사 실시여부
(육)K-77 테스터 셋트	×
(육)발생및충진장치, 산소-질소용, 트레일러탑(질소충전세트)	×
(육)시험세트, 전력-특수목적용 전기케이블 조립	×
(육)시험세트, 전자계통용(ETS)	×
(육)시험세트, 전자계통용(EETIS)	×
(육)시험세트, 전자계통용(고광원차단시험세트, PVJ-130)	×
(육)시험세트군, 전자계통용(전기/전자 종합시험장비 EETIS)	×
(육)외부시동시험기셋트	×
(육)충전기, 전지용	×
(육)충전세트 질소용 유압기현수장치용	×
(육)충전세트 질소용 축압기용	×
(육)충전키트, 가압용	×
(육)펌프,유압펌프식, 수동식	×

*자료: 국방부

○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의 시장조사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이나, 구매요구서 및 시장조사 지원 건수가 급증하는 경우에는 한정된 인력으로 시장조사 지연 문제 및 부실조사 등의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에서 각군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각군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군이 구매요구서 작성 및 시장조사를 자체적으로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7)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R&D)(2341-500) : 국회 심의과정에 과제선정 기준, 우선 연구분야 및 성과지표·성과목표·사후관리 방안 등을 제출 필요 등

(가) 예산안 개요

○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R&D)(2341-500) 사업은 AI 융합산업 중 단기내 성과창출이 가능한 유망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집중 지원하는 'AX-Sprint(전력질주) 프로젝트'를 정부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분야에서 1~2년 내 성과도출이 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	-	-	60,000	60,000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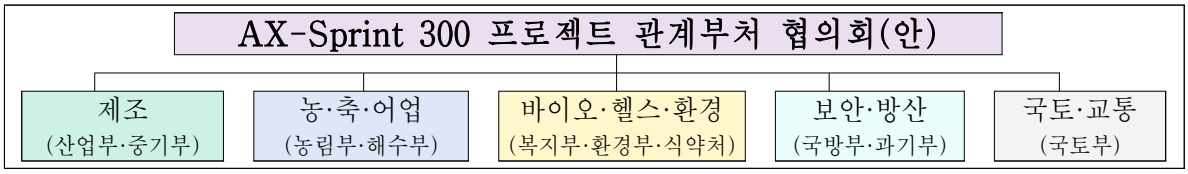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AGI[49] 등 원천기술 개발만큼 인공지능전환(AX)과 적용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제조·식품·의료 등의 전 산업에서 AI를 적용한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출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라는 인식하에 AI 융합산업 중 단기내 성과창출이 가능한 유망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집중 지원하는 'AX-Sprint(전력질주)'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임.

○ 이를 통해 AI 관련 제품·서비스 신시장을 빠르게 창출하고 기존 제조·서비스 기업들의 AX를 가속화하며, 새로운 AI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AI 관련 국민 체감도와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동 사업은 11개 관계부처(산업부, 기재부, 복지부,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국토부, 과기부, 중기부, 식약처 등)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사업기간은 2026~2027년으로 하며 총사업비 1조 1,570억 8,300만원(국비 9,34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49)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부처	물량	총 사업비(억원)	국비(억원)	부처	물량	총 사업비(억원)	국비(억원)
산업부	65개	2,625	2,100	농림부	30개	1,125	900
복지부	31개	975	780	환경부	15개	750	600
해수부	25개	937.5	750	국토부	29개	1,450	1,160
중기부	45개	1,687.5	1,350	과기부	20개	1,000	800
국방부	30개	833.33	750	식약처	10개	187.5	150

*자료: 국방부

○ 국방부도 동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을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TYPE 1(1년 내, 15억×20개=300억), Type 2(2년 지원, 45억×10개=450억) 등 2가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연도별 사업비 배정 현황]

구분	세부내용	비고
2026	Type 1: 15억×20개=300억 Type 2: 30억×10개=300억	
2027	Type 2: 15억×10개=150억	Type 2: '26~'27

*자료: 국방부

○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예산안에는 총액만을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음.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총 규모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순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 전에 예산배분에 관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세부집행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2조(총액계상사업)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로보수 사업
2.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3.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4.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5. 수리부속지원 사업
6.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의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②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매 회계연도 예산순계 기준 100분의 3을 말한다.

○ 동 사업은 유망 AI 융합분야의 상용화 및 확산을 지원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AI 응용제품 시장 선점, AI 응용제품 국내 생태계 강화 및 국민 체감도·편의성 제고를 사업목적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첫째, 동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총액, 과제수, 과제당 사업비 등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세부 과제 내용, 선정기준 및 성과목표 등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국방부에서 제출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5년 10월부터 11월에 각군 및 기관으로부터 소요제기를 종합하여 각군과 국책기관으로 구성된 기술기획지원단을 통해 과제 검토·고도화 후 2025년 12월 과제선정기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국방 AI 피치데이를

개최할 예정임. 이후 2026년 1월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 주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임.

<향후 추진계획>
* 국방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소요제기 종합(각군 및 기관) : ~ 9월
* 과제별 기술기획(주관/참여: 국방부/IITP 등 10개 기관) : ~11월
* 사업설명서 작성, 국방 AI Pitch Day : ~12월
  ※ 피치데이: 기술 협력을 위해 사업 모델을 투자자나 파트너에게 발표하는 행사
* 사업 추진 공고 / 사업 주체 선정 : '26. 1월

*자료: 국방부

이로 인해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과제의 타당성, 과제별 예산규모의 적정성 및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 최소한 과제선정 기준, 우선 연구분야 및 성과지표·성과목표·사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소요제기된 과제들 및 타당성 검토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방부는 Type 1 과제 20개(과제별 15억), Type 2 과제 10개(과제별 45억)를 2026~2027년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나, 과제별로 연구범위·난이도·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과제당 15억원(Type 1), 45억원(Type 2)으로 편성하여 연구개발 특성에 따른 차별적 자원 배분을 저해하고, 일부 과제에서는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도 나타남. 따라서 과제 난이도·규모·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동 사업은 2개년 동안 총 30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AI 응용제품의 생태계를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1차년도에 600억원, 2차년도에 150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 초년도에 대규모 예산투입에 따른 실패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1차년도에는 소수의 과제(3~5개 과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이에 대한 성과, 문제점 등을 평가·보완 후에 사업을 일정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따르면 연차별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한 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넷째, 보통 각군에서 제기한 소요과제에 대해 적절한 업체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업체의 생산능력 및 시장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조달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동 사업은 과제선정 후 업체 설명이 12월이 되어야 비로소 이루어져 각군에서 제기하는 과제에 대한 시장조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나타남.

따라서 소요제기된 과제별 타당성 검토시에 업체의 생산능력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 조달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동 사업은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실 국방인공지능정책팀에서 수행할 예정으로 국방인공지능정책팀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최대 1년(6개월+6개월)

간만 존속할 수 있어 동 사업의 수행기간과 불일치하여 결국 다른 조직에서 동 사업들을 이관받아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어 사업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이 제기될 수 있음.

[사업기간 및 존속기간 비교]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수행기간	국방인공지능정책팀 존속기간
2026~2027(2년)	2025.8.14.~2026.2.13.(6개월) 2026.2.14.~2026.8.13.(6개월)

*자료: 국방부

따라서 국방 AI의 중요성 및 지속적·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상설조직에 의한 수행, 업무 조정 등 추진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 결론적으로, 동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 최소한 과제선정 기준, 우선 연구분야 및 성과지표·성과목표·사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과제 난이도·규모·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연차별 예산 편성 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소요제기된 과제를 수행할 업체의 생산능력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28) 국내외 전문군사교육(2432-304): 과다편성된 해외대학 위탁교육사업의 과정비를 체재비로 조정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국내외 전문군사교육(2432-304)사업은 장교·부사관 등의 군 간부를 국내대학·전문대학·해외대학 등에 대한 위탁교육하는 학위 내역사업과 실무위탁교육·지휘참모대·병과교육·연수교육 등을 실시하는 비학위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국내외 전문군사교육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억 1,600만원이 증액(0.4%)된 49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지휘참모대 교육인원을 전년대비 3명 증원한 120명으로 계획하였기 때문임.

[2026년도 국내외 전문군사교육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내외 전문군사교육	47,839	49,034	51,484	49,250	216	0.4
학위	27,566	27,313	28,830	27,313	-	-
해외대학	7,431	8,128	8,602	8,082	△46	△0.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내외전문군사교육 내역사업의 세사업인 해외대학 위탁교육은 전년대비 4,600만원 감액된 80억 8,200만원으로 편성됨.

이는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해외대학에 지급하는 과정비(기타 보전금 310-04)가 전년대비 5억 9,200만원 증액된 46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군 간부 등이 해외 거주를 위한 체재비(국외교육여비 220-03)가 전년대비 6억 3,800만원 감액된 34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2026년도 해외대학 위탁교육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A)	편성인원	정부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편성인원
계	8,128	172	8,082	△46	△0.6	161
과정비 (310-04)	4,060	172	4,653	592	14.6	161
체재비 (220-03)	4,067	172	3,430	△638	△15.7	161

*자료: 국방부 제출

○ 2026년도 예산안의 해외대학 위탁에 대한 인원은 예산규모, 환율 변동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11명 감소한 161명으로 편성되었고, 과정비는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해외대학 위탁교육과 동일한 1인당 연간 22,000달러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년대비 14.6% 증액된 과정비는 집행부진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반해 체재비는 전년대비 15.7% 감액됨에 따라. 현재 군 간부에 대한 체재비 지급기준(5급 공무원 기준인 월 2,772달러×85%)인 월 2,356달러 대비 45.8%p 미달한 54.2%(월 1,277달러)만을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해외대학 위탁교육 중인 군 간부들이 해외 거주로 인한 주택 임차료 및 공과금 등을 충분히 지급하기 어려운 수준의 체재비(기준 체제비보다 월 1,079달러 적은 월 1,277달러)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26년도 해외대학 위탁교육 예산은 차질없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과다편성된 과정비를 예산안 대비 5억 9,200만원 감액하고, 체재비는 5억 9,200만원 증액하는 사업 내 비목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50]

50) 체재비를 증액조정할 경우 체재비 지급기준(5급 공무원 기준 월 2,772달러의 85%)인 월 2,356달러의 63.6%인 월 1,499달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안의 체재비보다 월 222달러를 추가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9) 자기개발교육(2432-308): 맞춤형 e북 지원 신설에 따른 효과적인 사업체계 구축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자기개발교육(2432-308)사업은 군기능인력양성, 장병자기개발교육, 기술인력지원 및 전문학사 학위취득지원 내역사업들로 구성됨.

○ 자기개발교육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01억 7,200만원이 증액(97.4%)된 408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장병자기개발교육 내역사업에 맞춤형 e북 지원 185억 7,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임.

[2026년도 자기개발교육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자기개발교육	38,206	20,716	21,817	40,888	20,172	97.4
장병자기개발교육	25,860	7,910	8,128	27,614	19,704	249.1
맞춤형 e북 지원	-	-	-	18,572	18,572	-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장병자기개발교육의 신규 세사업인 맞춤형 e북 지원 사업은 장병의 자기개발 및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병사 1인당 연간 한도액 64,000원(구매액의 80%까지 지원/개인부담 20%)[51]을 e북 또는 학습도서(수험서적, 교재)의 정기구독·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185억 7,2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국방부가 총괄하고, 민간 대행업체가 전자책 판매업체(3개사 이상) 및 학습 목적의 도서책 판매업체(복수)를 선정·운영하는 구조로 추진체계가 수립되어 있음.

○ 동 사업은 장병의 e북 독서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신규 사업의 추진체계 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보임.

○ 첫째, 사업의 기본지원이 e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종이책 구입은 수험서나 교재 등 학습 목적의 도서로 한정되고 일반 서적 구입은 금지하는 구조임에 따라 일부 장병들이 일반 서적을 통한 독서 및 자기개발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e북 중심의 편향을 완화하고 장병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e북과 종이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입도서 대상을 확

51) 장병 1인당 연간 구매액이 80,000원일 경우 20%인 16,000원은 개인부담하고, 64,000원은 동 사업에서 비용지원 가능

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육군이 운영하는 육군전자도서관이 이미 대형 e북 업체인 K사와 연계하여 86,453권의 e북을 열람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맞춤형 e북 지원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경우 기존 전자도서관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두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동 사업은 국방부・대행업체・e북 등의 판매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운영체계를 갖고 있으며, 대행업체가 판매업체를 선정·관리하는 구조임.

이러한 방식은 국방부의 행정부담 경감 측면에서 일정 부분 장점이 있으나, 판매업체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보장이 중요함.

또한, 대행업체 중심의 위탁운영체계는 관리 책임소재 불명확 등의 가능성이 있어, 사업 추진 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기준과 통제절차 마련이 필요함.

이에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판매업체 선정 및 계약관리 과정에 대한 국방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사업 시행 전에 우선적으로 이용률, 만족도, 독서활동 변화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매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규사업의 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맞춤형 e북 지원 신설과 관련하여 기존 전자도서관과의 연계성 강화와 장병의 자기개발을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0) 국방AI인재양성(2439-309) : 면밀한 사업준비를 통하여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의 체계적인 추진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국방AI인재양성(2432-309)사업은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군 장병 AI·SW 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AI 소양·전문교육, AI 교육·연구센터 구축, AI 경진대회,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임.

○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19억 700만원이 증액(367%)된 406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195억 3,200만원)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2026년도 국방AI인재양성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방AI인재양성	9,396	8,705	9,000	40,612	31,907	367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	-	-	19,532	19,532	-

*주: 동 사업은 2025년까지 2100 국방정보화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으나, 2026년부터 2400 군인사및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편성됨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신규 내역사업인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은 민·군 협력 연구체계를 마련하여 각 군의 AI 기술소요 발굴 및 기업·대학의 기술개발 추진을 통해 실제 군사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6년도 예산안으로 195억 3,2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예산안 편성내역]

□ 2026년 예산안: **195.32억원**

- **(AI 기술개발) 150억원** : 거점 5개소(군·산·학 협력센터)× 30억원
- **(인프라 구축) 40억원** : GPU 서버 5식× 6억원 + 부수장비 10억

  * GPU와 부수장비(PC 및 네트워크·암호장비 등)은 각 거점 內 구축하여 활용하는 인프라

- **(기획평가관리비)** 5.32억원 : 사업비 190억원의 2.8%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료: 국방부 제출

○ 국방부는 첨단 AI 기술에 특화된 국내 유수의 국방 AI, 특화 대학 5개를 공모하여 군·산·학 협력센터를 선정하겠다는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함.

사업추진절차는 ① 소요군·기관에서 필요한 AI 기술 소요를 제안하면, ② 군·산·학 협력센터는 보유한 연구역량과 산·학 협력역량을 기반으로 대학과 군, 기업을 연계하여 공동 AI 기술연구 소요를 과제화하고, ③ 과제검증을 거쳐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인 국방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한 심의의결로 최종 소요를 결정하며, ④ 민군합동 연구수행 후 실증 및 전력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임.

특히, 국방부는 과제기획 단계(②)에서 민간에서 국방 AX 거점[52]에 방문하여 사전 국방데이터를 확인함으로써 내실있는 과제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임.[53]

또한, 국방부는 국방 AX 거점(기존 3개소와 신규 2개소)을 총 5개소 설치 및 운영하고, 군·산·학 협력센터는 과제별 소규모 연구그룹(Primary Research Group)[54]을 중심으로 상호 작용하는 수평구조로 운영하며, 국방 AX 거점과 동일 건물에 설치하여 시너지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임.

○ 국방부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동 신규사업은 2026년도에 ㉮ 군 AI 소요기술 발굴과 과제화 및 최종 소요결정, ㉯ 신규 국방 AX 2개소 설치 및 총 5개의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 군·산·학 협력센터에서 최종 소요결정 과제에 대한 민군합동 연구수행 등의 절차가 병행되어 추진되고 종결되어야 함.

○ 다만, 군·산·학 협력센터가 원활한 민군 합동연구수행을 하기

52) **국방 AX 거점**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국방 데이터를 군이 보유(관리)하며, 민간에 제공하고 민·군 공동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장소임. 공군이 운영하는 '신기술융합센터'는 KAIST AI 대학원과 같은 건물인 '서울AI허브'에 위치, 육군이 운영하는 '데이터랩'은 성균관대 AI대학원과 같은 건물인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 위치하여 민·군 협력 시너지 운영 중이며, 육군은 대전 KAIST 문지 캠퍼스에도 국방AX거점을 운영 중임.
국방부는 **신규**로 **서울에 합참AX거점**(군사시설 ADD 영내)과 **부산에 해군·해병대 AX거점**을 부산시와 연계하여 설치할 계획임.

53) 해당 과제가 군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행이 가능한지 사전 검토 수행을 하겠다는 것임.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음. <과제기획→국방데이터 보유목록 제공→실제 국방데이터 열람→과제수행 가능여부 사전확인→최종 과제화>

54) 교수 2~3명, 석·박사 10명 내외, 군 AI 담당자, 기업전문가 등

위하여 선행되어 구축되어야 하는 “AI인프라(GPU) 마련”을 위해서는 GPU·보안장비 조달, GPU서버·국방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및 보안인증 등 필수 과정에도 적지 않은 기간(4~6개월)이 소요되는 등 각 단계 및 절차별로 적지 않은 소요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2026년 **신규 2개소의 AX거점 추가 마련**은 관련 국방데이터 추출 및 저장, 보안 인증, 협력체계 구축 등 준비단계가 많아 소요기간이 적지 않게 걸리므로, 충분한 사전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국방부가 체계적인 사업 준비와 신속한 집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기대한 사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동 사업은 군·산·학 협력센터 1곳당 연 30억원이 정액 편성되었으므로, 사업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연구수행률과 연구결과물 및 실증화 성과평가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예산이 지급될 소지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는 사전에 성과지표를 포함한 성과평가 기준 마련, 출연금 지급기준 및 집행·잔여 예산 환수지침 등을 마련하여 성과연계형 집행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55]

55) 성과지표 예시로는 △연구성과물(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군 적용 과제수 및 실증화 실적, △참여 군 전문인력 양성 규모와 수준 평가 △GPU 인프라 활용률, △연구기간 대비 과제 성과 창출 속도

○ 따라서, 국방부는 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통합 AI인프라(GPU) 마련을 위한 독립망 구축 및 보안인증 등 필수과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제 관리를 위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제 착수~실증기간) 등이 있을 수 있음. 이를 기반으로 차년도 예산 배분과 출연금 지급을 성과연계형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31) 정훈문화활동(2435-301) : 기존 사업과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병영 문화프로그램 시범 실시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정훈문화활동(2435-301)사업은 정신전력교육과 교육 교재 제작을 수행하는 정신전력교육활동과 병영독서활동·문화활동지원·군악활동·동아리 지원·병영 문화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문화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2억 1,500만원이 증액(15.1%)된 551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병영 문화프로그램 60억 3,2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임.

[2026년도 정훈문화활동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정훈문화활동	46,445	47,938	48,239	55,153	7,215	15.1
병영 문화프로그램	-	-	0	6,032	6,032	-
문화활동지원	5,572	6,583	6,856	6,511	△72	△1.1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방부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연·공연·세미나 등을 통해 신세대 장병들의 소통·존중·공감 문화를 확산시키고 심리적 유대감을 증진하여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전투력 유지·향상에 기여하는 병영 문화프로그램을 신규로 2026년도 예산안에 60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해군과 공군 소속 부대들을 대상으로 각각 78회와 88회를 실시할 계획임.

[공군의 표준 병영 문화프로그램 구성(안)]

구 분	내 용	소요 시간	비 고
1일차	병영문화 혁신 팀빌딩 프로그램 * 조직문화 개서 퍼실리테이션	4시간	MC, 전문강사
	'도전/전문성' 가치확산 세미나(강연 위주) * 전문 MC 진행 * 도전/전문성 관련 분야의 특별 강사 강연 * 장병 참여 프로그램 진행	2시간	MC, 전문강사
	'헌신/팀워크' 가치확산 토크 콘서트(공연 위주) * 전문 MC 진행 * 연극, 뮤지컬,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 단체 * 유명 연예인(가수, 개그맨, 방송인 등), 인플루언서 등	2시간	MC, 공연단체, 유명 연예인
2일차	핵심가치 내재화 체험부스 운영 * 도전정신 극대화 프로그램 (한계 돌파 챌린지) * 헌신 실천 프로그램 (전우 구조 시뮬레이션) *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공군 퀴즈 챌린지) * 팀워크 증진 프로그램 (협동작전 탈출 게임) * 핵심가치 종합 프로그램 (핵심가치 스탬프 투어)	종일	부스 운영

*자료: 국방부 제출(분량상 공군(안) 제시, 해군 생략)

○ 해군은 지역별 민간 전문 연수시설을 이용하여 병영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여 1회당 단가를 3,200만원으로 계획

하였고, 공군은 영내에서 병영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1회단 단가를 4,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군의 병영 문화프로그램은 표준 2일의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외부 전문가수 등의 공연초빙 또는 문화공연 체험에 회당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점, 전문 강사와 MC를 초빙하여 소통·존중·공감에 관한 세미나와 체험·심리검사 등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공군의 표준 병영 문화프로그램의 예산편성 내역(안)]

(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단가	횟수	금액
강사비	• 전문강사 강연	2,000	2회	4,000
공연비	• 유명가수	10,000	1팀	12,000
	• 공연단체	2,000	1팀	
체험부스	• 체험부스	2,000	5종	10,000
진행비	• 현장 MC 섭외	500	2일	1,000
무대 설치비	• 무대 설치비(음향 및 조명 등)	5,000	1세트	5,000
준비비	• X배너	100	2개	4,000
	• 현수막	100	2개	
	• 문화체험부스 재료비	3,600	1식	
기타운영비	• 수강인원/지원요원 간식 및 음료 지원	4,000	1식	4,000
소 계(1회당 예산)				**40,000**
사령부·단·독립전대 부대 반기 1회, 격오지 부대 연 1회 = 총 88회				**3,520,000**

*자료: 국방부 제출((분량상 공군(안) 제시, 해군 생략)

○ 다만, 정훈문화활동 세부사업에는 기존부터 문화활동지원 내역사업이 편성되어있었고, 2026년도 예산안은 65억 1,100만원임.

[2026년도 문화활동지원 예산편성 상세내역]

문화활동지원 : (2025) 6,583 → (2026요구) 6,511백만원, △1.1%
- (요구)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복무의지 고취 등을 위한 민간 예술단체 부대 방문 공연, 음악·미술 등 문화 체험교육, 전적기념물 정비사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으로 '25년 대비 △1.1% 감액 요구
- (산출)
•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2,229→2,506, +277백만원)
<전군> ('25년) 102부대 x 15.78백만원 → ('26년요구) 120부대 x 13.8백만원
<(육군) GOP 및 해강안 소초> : ('25년) 130부대 x 2.92백만원 → ('26년요구) 180부대 x 3.39백만원
* 공연 출연료 현실화, 대상 부대 수 확대에 따른 증액
<(해병대) 서북도서> : ('25년) 60회 x 4백만원 → ('26년요구) 60회 x 4백만원
• (전군) 병영문화예술체험교육(1,940→1,898, △42백만원)
<대면> ('25년) 107부대 x 10백만원 → ('26년요구) 107부대 x 10백만원
<온라인> ('25년) 1식 x 865백만원 → ('26년요구) 1식 x 823백만원
• (전군) 전적기념물 및 군 문화재 관리(279→280, +1백만원)
('25년) 90개소 x 3.1백만원 → ('26년요구) 90개소 x 3.1백만원

*자료: 국방부

○ 병영 문화프로그램은 기존의 문화활동지원과 공통적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하여 가수·문화공연 초빙 및 관람 등에 회당 적지 않은 약 1,500만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56] 기존 사업과 내용이 중첩될 가능성이 크고 사업 간 경계가 불분명하며,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56) 문화활동지원은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의 1회당 단가가 1,3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병영 문화프로그램(공군)의 경우 공연비 1,200만원, 무대설치비 500만원, 전문MC초빙 100만원 등 1,800만원이 소요됨.

○ 한편, 기존 문화활동지원이 병영 문화예술 체험교육·공연 등이 단일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었다면, 병영 문화프로그램은 문화예술 체험교육・공연 이외에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기인지→핵심역량강화→적용 및 내재화’ 단계를 거쳐 소통·존중·공감 문화를 확산하는게 사업 목적인 점이라는 점에서 일부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2026년도에 해군・공군 전부대에 걸쳐 병영 문화프로그램 신규사업을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문화공연에 대하여 통합·조정하거나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소통・존중・공감을 중심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후 성과평가를 거쳐 단계적 확대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57)]

57) 시범사업 차원에서 2026년도에는 병영 문화프로그램을 당초 계획 166회 대비 절반인 83회만 운영하고, 나머지 부대에는 차년도에 실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의 절반인 30억 1,600만원이 감액가능함.

(32) 공통교보재지원(2438-303) : 국방부의 국산 상용드론 도입 계획에 따른 적정 도입 물량·단가 논의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공통교보재지원(2438-303)사업은 실전적 사격 및 교육 훈련 지원을 위한 교보재와 장비 실소요를 반영하는 사업임.

○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4억 2,100만원이 증액(84..8%)된 508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육군의 교육용 상용드론 구매를 전년 대비 183억 8,400만원 증액편성하였기 때문임.

[2026년도 공통교보재지원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공통교보재지원	32,055	28,426	37,976	50,847	22,421	84.8
교육용 상용드론 구매	-	545	2,751	19,013	18,468	3,388.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50만 드론전사 양성”[58]을 위한 교육용 상용드론 구매사업은 2028년까지 교육용 상용 소형드론 5만대 이상을 확보하여 전 군에 확대·보급[59]하여 전 장병이 군 입대 후 손쉽게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5억 4,500만원 대비 185억 9,000만원 증액된 191억 3,500만원으로 편성됨.

○ 2026년도 예산안은 1년차에 상용드론 11,265대 도입과 1대당 단가 170만원을 적용하여 편성된 것임.

[시중 판매 드론 가격대(촬영용, 연습용)]

가격		카메라	기본사양	최대비행시간	최대비행거리
저가	20만원대 ~ 49만원대	4K, 8K 전동식짐벌 등	FPV 흔들림 방지 장애물 회피 자동복귀 등	30분~50분	6km~18km
중가	50만원대 ~ 99만원대				
고가	100만원대 ~				

*주: 시중 판매 드론 단가는 군의 요구사항과 다른 사양으로 교육용 및 촬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판매용 드론 가격임(2024년 하반기 기준임)

*자료: 판매용 드론 자료조사(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 11월)

58) 2026년도에 새롭게 50만 드론전사 양성사업으이라는 프로젝트로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는 교육훈련용 상용드론 구매 예산 190억 1,300만원 이외에도 전문교관 양성 예산 14억 3,700만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59) 육군은 분대당 2대 이상, 해·공군/해병대는 10명 당 1대 이상

정부가 편성한 상용드론 1대당 단가 170만원은 2025년도 동 사업의 상용드론 1대당 단가 168만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중의 상용드론 판매가격과 비교해볼 때, 교육용 목적의 드론으로는 상당히 고가의 상용드론을 구매할 수 있는 단가 수준이므로, 교육용 목적에 부합하게 단가를 적정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60]

○ 그러나 국방부는 정부안의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 단가 170만원은 비행조종기(FC)만 국산화된 상용드론 단가에 불과하고, 2026년도에는 모터·배터리 등 대부분의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 드론을 도입할 예정이므로, 적정 도입단가는 300만원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61]

국산 상용드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로서 국산 상용드론 개발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관련 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참여하여 10인치급 상용드론을 개발완료 단계에 이르렀고,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표준단가는 1대당 268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293만 8,000원)임.

국산 상용드론은 영상 데이터 트랜시버[62]만 제외한 나머지 주요 부품들을 모두 국산화한 것임.

---

60)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pp. 136-139.
61) 국방부는 단가를 1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 146억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추정함.
62) 영상은 미저장하고 지상통제장치로 실시간 스트리밍만 허용할 예정임.

○ 다만, 영상 데이터 트랜시버는 카메라, 영상디지털송신장치(VTX)와 송신 안테나가 결합된 상용드론의 핵심장비로, 국내 생산업체가 전무하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향후 3년 이내 국산화 추진예정임에 따라 50만 드론전사 양성사업이 마무리되는 2028년까지 외산 부품에 장착된 상용드론이 계속 도입되어야 하므로, 보안성에 대한 우려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음.

○ 또한, 50만 드론전사 양성사업이 2026년도에 1차년도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나 관련 업체들이 생산설비 준비 및 양산에는 일정 시간 소요되고, 조달절차에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내년도에 육군에 제공되는 국산 상용드론은 초도품으로써 2026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 후 품질관리와 사양 및 내구성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참고로, 50만 드론전사 양성사업이 현재 계획대로 2028년까지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고 한다면, 사업2년차인 2027년부터는 생산대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63]에 의하여 생산 평균비용(Average cost)을 대폭 낮아질 소지가 있어 경쟁계약에 따른 도입단가 하락으로 재정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따라서 교육용 상용드론 구매사업은 국방부의 국산 상용드론 도

63) 규모의 경제는 장기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장기평균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임.

입 계획에 따라 대당 단가를 300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편성된 예산안 내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2026년도 도입물량을 축소조정하게 되므로, 3년 내 50,000대 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차년도의 적정 도입 물량·단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33) 인사정책지원(2439-306) : 장애인고용의무 이행률 향상을 통한 연례적인 고용부담금 초과지출 재발 방지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인사정책지원(2439-306)사업은 장교 및 부사관 선발, 군무원채용, 병영정책지원을 위한 사업임.

○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억 4,800만원이 증액(6.5%)된 221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군무원채용내역사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증액편성(15억 3,200만원)임.

[2026년도 인사정책지원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인사정책지원	21,264	20,795	27,712	22,143	1,348	6.5
군무원채용	13,862	12,277	17,992	13,809	1,532	12.5
장애인고용부담금	11,607	9,960	15,637	11,492	1,532	15.4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2025년 기준 국가기관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제6항[64] 및 제79조제1항[65]에 따라 정원의 3.8% 이상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할 의무가 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현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음.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국방부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장애인 군무원 및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사업으로,[66] 2026년도 예산안은 114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99억 6,300만원 대비 15.4%인 15억 3,200만원 증액되었음.

---

6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6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66)「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국방부 및 각 군의 의무고용미달인원은 2022년 군무원 268명, 공무직 104명을 합한 372명이었으나, 2024년 군무원 568명, 공무직 183명을 합한 751명으로, 2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장애인 군무원 및 공무직 고용인원 및 의무고용 미달인원 등]

(단위: 명)

구 분		2022	2023	2024	2025. 7월
군무원	의무고용인원(A)	1,048	1,290	1,452	1,578
	고용인원(B)	780	863	884	894
	의무고용 미달인원(A-B)	**268**	**427**	**568**	**684**
공무직	의무고용인원(A)	318	366	423	463
	고용인원(B)	214	241	240	231
	의무고용 미달인원(A-B)	**104**	**125**	**183**	**232**
의무고용률		**3.6**	**3.6**	**3.8**	**3.8**

*자료: 국방부

○ 이에 국방부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 확대로 인하여 2022년에는 예산 48억 6,500만원보다 4억 800만원 초과한 52억 7,300만원, 2024년에는 예산 78억 2,600만원보다 37억 8,100만원 초과한 116억 7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연례적으로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집행 현황]

구 분		2022	2023	2024	2025. 7월
군무원	예산	4,153	6,324	6,324	8,457
	집행	4,017	6,526	8,809	8,300
공무직	예산	712	1,502	1,502	1,503
	집행	1,256	1,661	2,798	2,689
총 계	예산	4,865	7,826	7,826	9,960
	집행	**5,273**	**8,187**	**11,607**	**10,989**

*주: 1) 군무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6.12.27. / 시행 '20. 1. 1.)에 따라 '21년부터 고용부담금 납부

2) 공무원은 의무고용인원 충족으로 장애인고용 부담금 관련 해당사항 없음

*자료: 국방부

○ 국방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2026년도 예산안을 114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2024년 의무고용 미달인원이 751명일 때 집행한 116억 700만원보다 적은 것임.

2022년부터 최근 4년간 의무고용 미달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7월말 현재 의무고용 미달인원이 916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67] 2026년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예산액 대비 초과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장애인 고용의무 미준수로 인한 연례적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초과 집행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장애인 채용직위 발굴과 홍보 매체 다양화(SNS, 온라인 채용홍보 등)를 통한 적극적인 채용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67) 2025년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말 집행예상액은 146억 3,100만원임(출처: 국방부)

(34) 병영생활관 (2531-301)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감안한 예산 감액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병영생활관 (2531-301) 사업은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을 신축·개수하여 병사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장병의 기본권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병영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임.

○ 병영생활관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774억 6,500만원이 증액(29.9%)된 3,364억 4,4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병영생활관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병영생활관	305,260	258,979	270,295	360,621	336,444	77,465	29.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병영생활관 사업의 내역사업 중에는 노후한 GOP소초를 신축하기 위한 'GOP소초병영생활관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GOP소초 신축사업 중 15사단 1개소, 21사단 2개소의 사업은 2025년 8월말 기준 예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각각의 집행 부진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음.

- 15사단 1개소 : 38여단 GOP소초(백호소초) 철거 후 신축사업은 2022년 부대개편 당시 책임지역 조정을 전제로 41명 규모 부대로 계획하였으나, GOP 책임지역 조정이 미실시되어 현 97명 규모 부대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지 협소 및 사유지 인접 등의 문제로 위치 변경 검토 중임.

- 21사단 2개소 : 지적공부 미정비로 토지 경계·면적이 불명확하여 지적복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절차 이행을 위해 양구군 의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 중임.

[2025년도 집행부진 GOP소초병영생활관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5 예산	집행액	집행률	집행부진사유
GOP 소초	15사단 38여단 2대대 백호소초 GOP소초 병영생활관 철거 후 신축	'25~'30	6,601	123	0	0.0	작전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계획 변경 검토 중
	21사단 65여단 1대대 (구)13소초 GOP소초 생활관 신축	'25~'30	10,477	154	0	0.0	지적미복구 부지로 인한 집행계획 변경 검토 중
	21사단 65여단 11소초 GOP소초 병영생활관 신축	'25~'30	9,045	168	0	0.0	지적미복구 부지로 인한 집행계획 변경 검토 중

*자료: 국방부

○ 다만, 국방부는 당해 사업들의 2025년도 예산의 실제 집행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을 다음와 같이 편성하였음.

[집행부진 GOP소초병영생활관 2025~2026년 비목별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비목	'25년		'26년
			편성	집행	편성(안)
GOP 소초	21사단 65여단 1대대 (구)13소초 GOP소초 생활관 신축	**계**	**154**	**-**	**232**
		기본조사설계비(420-01)	62	-	93
		실시설계비(420-02)	92	-	138
		공사비(420-03)	-	-	1
	21사단 65여단 11소초 GOP소초 병영생활관 신축	**계**	**168**	**-**	**169**
		기본조사설계비(420-01)	67	-	67
		실시설계비(420-02)	101	-	100
		공사비(420-03)	-	-	1
	15사단 38여단 2대대 백호소초 GOP소초 병영생활관 철거 후 신축	**계**	**123**	**-**	**129**
		건설보상비(410-00)	-	-	5
		기본조사설계비(420-01)	49	-	49
		실시설계비(420-02)	74	-	74
		공사비(420-03)	-	-	1

*자료: 국방부

○ 해당 3개소의 2026년도 예산안은 사업 집행계획 변경으로 인해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 시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으로서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기획재정부 협의 및 승인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간 내 정상 추진이 어렵고, 이에 따라 2026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사업계획 변경 및 대관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임.

○ 따라서 GOP소초병영생활관 사업 중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5사단 1개소, 21사단 2개소분 예산 5억 3,000만원은 전액 감액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35) 병영기본지원시설 (2531-304) : 신규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 예산의 과다 편성분 감액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병영기본지원시설 (2531 - 304) 사업은 병영식당, 목욕탕, 화장실, 급수시설, 전투체육시설, 여성필수시설 등 장병들의 병영생활 필수시설의 부족소요를 확보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장병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임.

○ 병영기본지원시설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56억 8,900만원이 증액(2.7%)된 2,201억 7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병영기본지원시설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병영기본지원시설	230,627	214,418	267,073	201,083	220,107	5,689	2.7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병영기본지원시설사업의 내역사업인 전투체육시설사업은 장병의 전투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임.

○ 전투체육시설사업의 2026년 예산안에는 육군 15사단, 22사단 사령부에 다목적체육시설(e-스포츠센터)을 신규 건립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150억 7,000만원(총 301억 4,000만원) 규모로 사업기간은 2026~2029년임.

[2026년 15사단·22사단 신규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 계획]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위치</td><td>육군 15사단 사령부(화천), 22사단 사령부(고성)</td></tr>
<tr><td>총사업비</td><td>각 150.7억 원(총 301.4억 원)</td></tr>
<tr><td>’26 정부안
예산편성</td><td>각 49.6억 원(총 99.1억 원)</td></tr>
<tr><td>사업기간</td><td>2026~2029년</td></tr>
<tr><td>면적/규모</td><td>각 3,507㎡ / 지상 3층</td></tr>
<tr><td>내부구성(안)</td><td>
<table>
<tr><td>구 분</td><td>종 목</td></tr>
<tr><td>1층</td><td>스크린야구, 사격, 테니스</td></tr>
<tr><td>2층</td><td>스크린골프, 콘솔경기장, AR/VR스포츠 등</td></tr>
<tr><td>3층</td><td>서바이벌 경기장</td></tr>
</table>
</td></tr>
</table>

*자료: 국방부

○ 해당 사업은 MZ세대 장병들의 복지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단급 다목적 실내체육관(e-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으로서, 스크린야구, 스크린골프, 스크린테니스, E스포츠 PC실, 스크린 사격, 서바이벌 경기장 등의 시설이 구비될 예정임.

[신규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조감도]



자료: 국방부

○ 다만,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기존의 시범사업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신규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음.

국방부는 이미 육군 7군단, 공군 19전투비행단을 대상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68]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5년 9월 기준 7군단은 설계 90% 진행, 19전투비행단은 2025년 6월 설계 완료 후 공사 착수 예정임.

이와 같이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

68) 사업기간 2023년~2027년

일한 유형의 체육시설 2개소를 추가로 건립 추진하는 것은 사업 타당성이 다소 부족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 둘째, 예산 편성에 있어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69]을 준수하지 않았음.

해당 지침에 의하면, 총사업비 100억~200억원 규모의 시설사업은 사업 초년도에 설계비의 50%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안에는 사업 초년도인 2026년에 개별사업별로 설계비 전액(5억 4,800만원)과 총공사비의 약 30%(40억 600만원)가 반영되어 해당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전액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신규 다목적체육시설 예산편성 계획]

(단위 : 백만원)

비목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4,955	2,968	4,315	2,834
기본조사설계비(420-01)	220	-	-	-
실시설계비(420-02)	328	-	-	-
공사비(420-03)	4,006	2,637	3,911	2,510
감리비(420-04)	392	269	280	212
시설부대비(420-05)	9	62	124	112

*주: 해당 예산편성은 체육시설 1개소 기준으로, 15,22사단을 모두 반영한 총액은 위 금액의 2배임
*자료: 국방부

[군 시설사업 연차별 예산배분 기준[70]]

총공사비 구분	사업지역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0억 이상 - 200억 미만	전방·산악	(설계비 50%)	(설계비 50%)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30%)	(공사비 40%)	(공사비 30%)
	여타	(설계비 50%)	(설계비 50%)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60%)	(공사비 40%)	

*자료: 국방부

69) 2026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국방부.
70) 2026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국방부. 138p

○ 따라서 사업 초년도인 2026년에 편성된 예산 99억 1,000만원 중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의 연차별 예산배분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비 5억 4,800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인 93억 6,200만원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신규 다목적체육시설 2026년도 예산 감액 필요 내역]

(단위 : 백만원)

비목	2026년도 편성 예산안	국방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한 소요	감액 필요 금액
기본조사설계비(420-01)	220	110	△110
실시설계비(420-02)	328	164	△164
공사비(420-03)	4,006	-	△4,006
감리비(420-04)	392	-	△392
시설부대비(420-05)	9	-	△9
합 계(1개소 기준)	4,955	274	△4,681
총 계(15·22사단 합계)	9,910	548	△9,362

*자료: 국방부

○ 셋째, 군부대 내 총기 관련 오락시설 도입에 따른 안전 및 윤리적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보임.

다목적체육시설에는 스크린 사격, 서바이벌 경기장 등 모의 총기 활용 시설이 포함될 예정으로, 이는 총기 사용을 오락적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음.

군은 전시·사변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살상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사격 교육과 훈련을 수행하는 집단인 바, 실제 총기를 다루는 군

조직 내에서 유사총기를 활용한 오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장병들의 실제 총기 사용에 대한 윤리적 책임성 저하 및 안전의식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15사단, 22사단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예산 99억 1,000만원 중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의 연차별 예산배분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비 예산 5억 4,800원만을 반영하고, 과다 편성된 예산 93억 6.200만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음.

(36) 관사 및 간부숙소 (2532-301) : 해병대 9여단 간부숙소 건축 방식 변경 검토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관사 및 간부숙소 (2532-301) 사업은 노후하고 부족한 군주거시설을 개선하여 안정적 주거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임.

○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55억 6,400만원이 감액(△3.3%)된 7,607억 2,8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관사 및 간부숙소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관사 및 간부숙소	526,812	786,292	796,411	778,698	760,728	△25,564	△3.3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 중 간부숙소 내역사업은 국방부의 ‘2026년까지 초급간부 1인 1실 주거여건 확보’를 목표[71]로 지속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시공 기간 단축과 품질 확보를 위해 모듈러 건축방식[72]이 확대 적용되고 있음.

○ 해병대는 제주도에 소재한 제9여단에 간부숙소 30실을 모듈러 건축방식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2026년도 정부안에는 설계비 등 41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해병 제9여단 모듈러형 간부숙소 신축사업 개요]

(단위 : 실, 억원)

사업기간	물량	총사업비	’26년 예산(안)	’27년 예산(안)
2026년 ~ 2027년	30	79.3	41.3	38.0

*사업부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 ○○○번지

*자료: 국방부

[해병 제9여단 모듈러형 간부숙소 신축사업 연도별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기본설계비 (420-01)	실시설계비 (420-02)	공사비 (420-03)	감리비 (420-04)	시설부대비 (420-05)
계	7,928	129	194	6,714	873	18
2026	4,126	129	194	3,357	436	9
2027	3,802	-	-	3,357	436	9

*자료: 국방부

71)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2023.12. 국방부.
2026년까지 간부숙소를 1인 1실로 모두 확보하고, 세탁기·인덕션 등 비품을 실별로 지원하여 청년세대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음.

72) 탈현장 건설기반으로 공장에서 부재의 70% 이상을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 운반 후 설치하는 주택 건축 방식

○ 다만, 제9여단 간부숙소 신축에 있어 모듈러 건축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비용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모듈러 건축방식은 「주택법」 제51조[73]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일종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인정을 받은 업체만 시공자격이 인정됨[74].

[공업화주택 시공업체 인정현황]

연번	업체명	공장소재지	주택용도
1	금강공업㈜	경상남도 창녕군	공동주택
2	㈜유창이앤씨	충청남도 천안시	공동주택
3	㈜KC산업	경기도 여주시	공동주택
4	스타코㈜	경상남도 창원시	공동주택
5	㈜에스와이테크	충청남도 아산시	공동주택
6	㈜포스코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전라북도 군산시	공동주택
7	㈜엔알비	전라북도 군산시	공동주택
8	㈜플랜엠	충청북도 음성군	공동주택
9	㈜대승인지니어링	충청남도 홍성군	공동주택
10	성지제강	경기도 이천시	공동주택
11	자이가이스트	충청남도 당진시	단독주택
12	㈜엠쓰리시스템즈	경기도 이천시	공동주택

*주: 2025년 7월 7일 기준 인정현황임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73) **「주택법」 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2.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거실(「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화장실·욕조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공업화주택
③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인정 취소에 관한 사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 2025년 7월 기준 해당 업체는 총 12개로, 모두 제주도 외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음.

○ 이로 인해 제주도 내에서는 모듈러 제작이 불가능하여, 육지에서 제작된 모듈을 해상 운송 후 현지에서 조립해야 함. 이에 따라 물류비 부담 및 시공비 상승이 불가피하며, 비용 및 시간적 측면에서 모듈러 공법의 장점이 퇴색될 우려가 있음.

○ 국방부에 따르면 2025년도 기준 일반 시공방식을 적용한 간부숙소의 실당 사업비는 1억 9,500만원으로 예상되는 반면, 모듈러 건축방식을 적용한 1차 시범사업의 실당 사업비는 2억 100만원으로 다소 높은 수준임.

한편,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제주도에 건립될 해병대 제9여단 간부숙소 신축사업의 실당 단가는 2억 6,400만원으로 책정됨[75].

○ 국방부는 간부숙소 1인 1실 확보 목표를 2027년 상반기까지 달성하기 위해 해병대 제9여단 간부숙소 신축사업에 시공기간이 짧은 모듈러 건축방식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함.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76]에도 불구하고 본 간부숙소 신축

75) 국방부는 지역할증(6%)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등이 포함된 결과이며, 편성액 대비 낙찰률을 감안하면 실 집행금액은 편성액보다 낮을 것이라는 입장임.
76)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2023.12. 국방부.
2026년까지 간부숙소를 1인 1실로 모두 확보하고, 세탁기·인덕션 등 비품을 실별로 지원하여 청년세대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음.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 처음 반영된 이유는, 연도별 재원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비가 1~2년 사이에 집중되는 모듈러 방식 건축사업을 단년도에 신규로 대규모 반영하는 것이 제한되었고, 2026년에야 예산을 반영하며 시공기간 단축을 위해 모듈러 건축방식을 적용하였다는 입장임.

○ 다만,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지역 상생을 고려하였을 때 제주도에 위치한 다수의 건설업체를 활용하여 일반 건축시공 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사업비 절감 및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보다 타당한 방식으로 보임.

○ 따라서 국방부(해병대)의 제9여단 간부숙소 신축사업의 목적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시공방식을 모듈러 건축방식과 일반 건축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37) 일반지원시설 (2533-303) : 군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 태양광 설비 도입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감독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일반지원시설 (2533-303) 사업은 노후하고 부족한 행정, 종교, 법정, 복지, 면회, 토목, 전기기설을 개선하여 군사대비태세 완비 및 장병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임.

○ 일반지원시설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007억 6,300만원이 증액(19.3%)된 6,234억 1,7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일반지원시설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일반지원시설	818,256	522,654	584,875	546,715	623,417	100,763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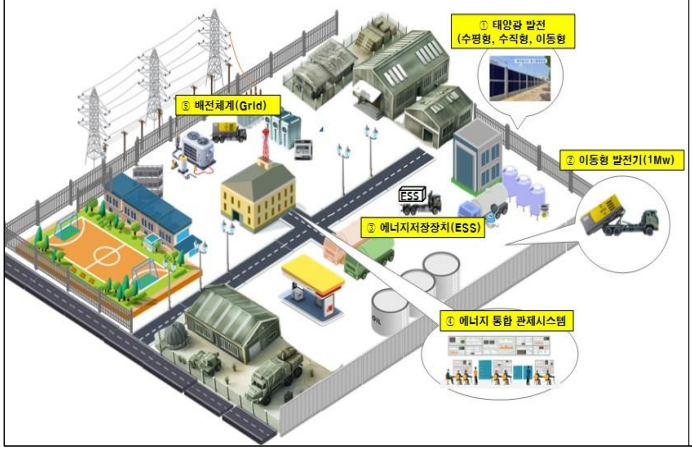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방부는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전·평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군 차세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77]’에 4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를 한국에너지공단[78]에 출연하여 집행할 예정임.

○ 구체적으로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육군 상무대[79], 해군 3함대[80]에 각 200억을 배정하여 태양광을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구성 사업[81]을 추진할 예정임.

[마이크로그리드 구성요소]



「마이크로그리드 구성요소」

① 新재생에너지 발전원 : 전력생산
＊ 태양광, 풍력 등

② 이동형 대형발전기 : 전력생산

③ 에너지저장장치(ESS) :
공급 후 잔여 전력 저장

④ 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
에너지 관제 · 제어 · 안전관리

⑤ 배전체계(Grid) : 배전, 변압 등

*자료: 국방부

---

77) 태양광 전력발전시설을 활용한 군부대 내 독립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 마이크로그리드: 특정 지역 내에서 독립적으로 전력을 생산, 저장 및 분배하는 작은 규모의 전력망
78)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해 1980년에 설립된 공공기관
79) 전라남도 장성군 상무대, 육군 기동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시범사업
기대효과: 1) 평시 훈련, 대규모 국가행사 및 재난발생 시 등 긴급한 전력소요 발생 시 기동화 전력지원
2) 전시 군 자체 전력생산 및 공급으로 기동화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해 전쟁지속능력 확보 가능
80) 전라남도 목포시 등 해군3함대 지역, 해군 3함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
기대효과: 1)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원을 통한 전기에너지 운용효율성 향상 및 비용절감
2) 서남해역 도서지역 전력망 및 발전시설 인프라 취약점을 보완하여 정전 발생시 레이더감시망 공백 최소화
81)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2025.7.31.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을 위해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대학캠퍼스와 스마트팜, 공항, 군부대 등에 마이크로그리드(특정 지역 내에서 독립적으로 전력을 생산, 저장 및 분배하는 작은 규모의 전력망) 구축

○ 국방부의 「군 태양광 시범사업 효과·분석 평가 용역[82]」 연구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설비의 군부대 내 설치는 전시·위급상황 시 비상전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전기안전관리법」상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의무[83]에 의한 일자리 창출 효과, 친환경 전력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의 편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군 차세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에 있어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단가가 민간 대비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국방부의 「군 태양광 시범사업 효과·분석 평가 용역」[84] 연구결과에 따르면, 각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던 태양광 발전 설비사업의 자재비용 및 공사비용은 민간사업 대비 2.07~2.56배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82) 軍 태양광 시범사업 효과·분석 평가 용역, 2021.4. 국방부, 한빛디엔에스(주)
83)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84) 국방부·한빛디엔에스㈜, 2021.4.

[군 태양광 시범사업(관급사업) 및 민간사업 사업비 비교]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해병2사단 군수대대	종합보급창 1보급단	제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설비용량		48kWp	123.2kWp	72.8kWp
군 태양광 시범사업 (관급사업)	자재비용	143,297	331,000	169,569
	공사비용	37,480	113,456	81,785
	합계	**180,777**	**444,456**	**251,354**
민간 사업	자재비용	63,424	113,212	68,232
	공사비용	23,709	60,408	41,404
	합계	**87,133**	**173,620**	**109,636**
관급/민간 비율		**2.07**	**2.56**	**2.29**

*민간사업의 자재 및 공사비용 기준: 2020년 견적 및 설계 기준

*자재비용: 태양광발전설비 자재비용, 공사비용: 설계비용+공사비용+부대비용+협의비용

*자료: 軍 태양광 시범사업 효과·분석 평가 용역, 국방부·한빛디엔에스㈜

○ 따라서 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기요금 절감만을 편익요소로 고려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는 효과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민간 조달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85]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둘째, 국방부는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비를 1MW당 20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에너지경제연구원[86]의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발전단가전망 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87]에 의하면 2024년 기준 동일 용량의 지상형 태양광 설비[88] 공사비용은

85) 「군 태양광 시범사업 효과·분석 평가 용역」 국방부·한빛디엔에스㈜, 2020. 84p

86)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해 1986년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87)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발전단가전망 시스템 구축」 이근대, 임덕오.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12.31.

88) 표면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의 유형

12억 8,100만원, 건물형 태양광 설비[89] 공사비용은 10억 9,000만원 수준[90]으로 나타남.

○ 동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태양광 모듈 공급가격은 2023년 대비 2024년 약 30% 하락하였고, 모듈 효율 향상으로 인해 기자재비 및 공사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였음.

구체적으로 태양광 모듈 단가는 국방부 기준 4억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자료 기준 3억 1,800만원, 인버터 단가는 국방부 기준 1억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자료 기준 6,200만원[91] 등으로 산정 단가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방부 산정 1MW급 태양광 설비 공사비 산정내역]

구 분	공 종		단위	수량	금액(백만원)	비 고
태양광 설비 (A)	태양광 모듈		장	1,660	400	600W, 생산자/모델
	모듈 마운트(구조물)		kW	1,000	300	강구조, 아연도금처리
	인버터		대	10	100	100kW
배전 공사 (B)	배전공사	변압기	대	4	40	송신측
		수배전반 및 제어반	식	1	60	
		고압케이블 AC	km	0.5	82	240SQ
		저압케이블 DC	km	0.5	62	60, 90SQ
	부대공사	관제시스템	식	1	45	
		관제실구성	식	1	10	
		기초공사(토목)	식	250	120	폐기물처리용역 등
		간접비	식	1	99	
		유지보수(5년)	식	1	500	
부 가 세(C)					182	(A+B)의 10%
총 공 사 비					2,000	A+B+C

*자료: 국방부

89)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의 유형
90)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발전단가전망 시스템 구축」 이근대, 임덕오.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12.31. 14p~16p 등
91) 지상형 태양광과 건물형 태양광의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비용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자료 기준 태양광 설비 공사비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MW)

구분	1MW					
	지상형			건물형		
	2021년	2024년	증감률	2021년	2024년	증감률
태양광 모듈	365	318	-13	365	318	-13
태양광 인버터	74	62	-17	74	62	-17
수배전반	75	84	12	75	84	12
모니터링 시스템	3	2	-25	3	2	-25
토목공사	64	25	-61	-		
구조물 및 시공	199	210	6	207	205	-1
전기자재, 공사	101	150	49	100	150	50
한전계통비용	19	26	37	9	26	187
변전소 비용	-	100	-	-		
전기설계 및 감리	88	25	-72	80	25	-68
발전허가 및 개발		25	-			
진단 및 검사	1	1	-4	1	1	-4
경비	97	23	-76	55	21	-62
보험료	0.4	3	650	1	3	339
EPC 금융비용	2	8	348	2	8	345
기타사업비	168	164	-2	99	141	42
일반관리비	54	54	0	44	43	-2
합계	1,310	1,281	-2	1,115	1,090	-2

*자료:「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발전단가전망 시스템 구축」, 에너지경제연구원

○ 따라서 국방부의 '군 차세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 출연금에 포함된 태양광 설비 공사비용은 기존의 연구자료들을 고려할 때 사업 집행 과정에서 단가가 다소 과다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방부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 집행에 대해 면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38) 시설유지관리 (2536-301) : 계획보수 예산 편성 방식 개선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시설유지관리 (2536-301) 사업은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유지보수와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임.

○ 시설유지관리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813억 9,500만원이 감액(△7.3%)된 1조 407억 8,7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시설유지관리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시설유지관리	1,338,321	1,122,182	1,163,412	1,138,258	1,040,787	△81,395	△7.3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2025년까지 시설유지관리 사업 중 대보수, 소보수 내역사업은 2026년 예산안부터 기획재정부에 의해 계획보수, 예방보수, 긴급보수로 예산과목구조를 개편하였음[92].

○ 국방부는 그간 시설보수비를 군 보유 시설 10만여 동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예산 성격으로 편성해 왔으며, 이를 대보수와 소보수로 구분하여 총액 단위로 편성한 뒤 군별로 배분해 왔음.

대보수는 전년도 12월에 다음 연도의 공사계획을 확정하여 집행하여 왔으며[93], 소보수는 각 군별 총액을 배분한 뒤 현장에서 소요 발생시 즉시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음.

---

92)

2025년까지 적용된 제도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제도	
구분	개념	구분	개념
대보수	내구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용도 개선을 위한 대규모 보수 공사비	계획보수	시설물의 내용연수 또는 장부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보수 (개별사업단위로 편성)
소보수	시설물의 내용연수 또는 장부가치에 변동이 없는 원상회복적 보수	예방보수	시설물의 내용연수 또는 장부가치에 변동이 없는 원상회복적 보수 (現 소보수 개념과 동일)
		긴급보수	천재지변 등 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하자 발생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

93)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7조(대규모보수 집행계획의 확정) ① 각 군, 국방부 소속·직할기관(부대)은 F년 12월 초까지 F+1년의 대규모보수공사 집행계획을 별지 제7호의 양식으로 국방부 사업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사업국은 F년 12월 말까지 집행계획을 승인 또는 반려함으로써 집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예산과목 구조를 개편하고, 계획보수(舊 대보수)를 신규 건축사업처럼 개별사업 단위로 소요를 제기받아 승인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방부에 개별사업별 집행계획을 제출받아 편성하였음.

○ 다만, 기획재정부의 계획보수 예산과목 구조개편 방식은 다음과 같은 예산 집행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계획보수는 사전 소요 제기에 따른 집행을 전제로 하나, 소요 제기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간의 시차가 과도하여 건축물 관리 및 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기존 대보수 방식은 총액 개념으로 예산을 확보한 뒤, 전년도 12월에 집행계획을 수립해 집행하여 왔음. 그러나 변경된 계획보수 방식은 국방부가 전년도 5월까지 예산요구안을 제출해야 하므로[94], 실제 소요 발생 부대의 요구는 그보다도 더 이른 시점에 접수해야 함. 그 결과 국방부 예산요구안 제출 이후의 보수 수요는 반영되지 않아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우려가 클 것으로 보임.

○ 둘째,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국방부의 집행계획을 토대로 사업별 예산을 선별하면서 군별 편성 규모의 불균형이 발생하였음. 그 결과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해병대와 공군이 과소편성되고, 국방부 직할부대는 과다 편성되는 문제가 나타났음.

94) 차년도 예산안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여야 함

[2026년 계획보수 및 예방보수 예산편성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5년 예산(대·소보수비)		'26년 예산		계획보수 (기재부결정)		예방보수 (국방부배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5,968	100.0	4,779	100.0	2,579	100.0	2,200	100.0
육군	3,693	61.9	2,821	59.0	1,441	55.9	1,380	62.7
해군	567	9.5	433	9.1	253	9.8	181	8.2
공군	926	15.5	707	14.8	296	11.5	411	18.7
해병대	204	3.4	156	3.3	23	0.9	133	6.0
국직 등	578	9.7	661	13.8	566	21.9	95	4.3

*주: 주거시설 및 국방부 전군지원비 제외

*자료: 국방부

○ 따라서, 계획보수 예산 편성 방식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용한 방식이 아니라, 2025년도까지 유지된 총액개념 방식이 보수소요의 적기 반영과 군별 형평성 측면에서 더 적절하므로 이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음.

(39) 동원훈련(2632-303) : 비상근 예비군 훈련보상비 현실화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동원훈련(2632-303) 사업은 전시 부대 증·창설 절차의 숙달, 병과 및 주특기별 임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한 예비군 훈련(병력동원훈련) 실시에 따른 예비군 훈련보상비 등 예비군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 동원훈련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500만원이 감액(0.04%)된 513억 7,1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동원훈련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동원훈련	40,690	51,396	63,272	51,371	△25	△0.04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방부는 병력자원 감소로 상비 병력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숙련된 예비전력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전투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유사시 예비군으로 90% 이상 충원되는 동원 위주 부대(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하게 될 예비역(장교, 부사관, 병)을 평시에 소집·훈련하여, 전시 동일한 직책으로 동원하여 즉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제도로 단기 및 장기 비상근예비군으로 구분됨.

[비상근예비군 운영 개념도]

구분	비상근 예비군	
	단기 비상근 예비군(연 30일 이내)	장기 비상근 예비군(연 180일 이내)
대상	예비역 병 ~ 소·중령	
운용 직위	• 비교적 단기간 운용으로 성과 달성이 가능한 직위 * 육군·해병(중·소대장 등), 해군(함장 등), 공군(통제실장 등)	• 전문성과 장기간 운용이 요구되는 직위 * 주요 지휘관(자)/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업무 성격	• 작전계획에 따라 하위 전투제대 현장 지휘, 전투장비·물자관리	• 부대 창설계획, 작전계획, 전투부대 편성 최적화 검토 등 장기·지속·전문성 업무 • 무기체계 정비 수리 등 전투장비·물자 관리 업무
복무 기간	• 단기간 복무(연간 30일 이내) * 현재 15일 근무	• 장기간 복무(연 180일 이내) * 현재 70~180일 복무일 선택

*자료: 국방부

○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 제도라는 명칭으로 동원위주 부대의 간부 예비군(육군 79명) 대상으로 연간 30일 이내 소집 및 훈련을 시작하여 2022년 「예비군법」 및 「병역법」 개정으로 30일 이하 단기 소집(단기 비상근예비군)만 가능했던 것을 연간 소집일을 180일 장기 소집(장기 비상근예비군)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모집 대상 범위 또한 기존 간부에서 병 직위까지로 확대함.

[비상근 예비군 운영 현황]

(단위: 명)

구 분	’14~’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단 기	79	169	269	585	1,023	1,769	3,011	3,804	4,349	4,556	3,500
장 기	-	-	-	-	-	-	-	50	50	50	200

*자료: 국방부

○ 2024년 국방부가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한 ‘상비예비군 제도 운용 성과 및 효과 측정’ 정책연구용역 중 운용 효과에 대한 조사[95] 결과 비상근 예비군 운용 부대가 비상근 예비군 미운용 부대에 비하여 전투준비태세, 임무수행도, 사기 등 성과 측정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비상근 예비군 운용이 동원 위주 부대의 조기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95) 조사시기 : 2024. 11월~2025. 3월
조사방법 :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창설담당관(군무원) 설문조사
조사대상부대 : 동원예비군 부대 403개 중 상비예비군 미운용부대(76개), 상비예비군 운용부대(118개)

[한국정책학회 비상근 예비군 운영 성과 평가 개요]

(단위: %)

구 분	전투준비태세			임무수행도		사기 자부심
	병력관리	장비관리	훈련수준	개인	부대	
① 비상근 예비군 미운용부대	-2.93 ↓	1.27 ↑	0.75 ↑	2.61 ↑	1.71 ↑	1.43↑
② 비상근 예비군 운용부대	12.56 ↑	7.28 ↑	3.86 ↑	7.01 ↑	4.65 ↑	8.43↑
③ 비상근 예비군 집중운용부대	19.38 ↑	8.21 ↑	8.15 ↑	11.11 ↑	1.80 ↑	13.71↑

① 일반 동원예비군부대 중 비상근 예비군을 운용하지 않는 76개 부대 조사('22년 대비 '24년 평가)
② 비상근 예비군을 사단 및 동원지원단 내 여러 부대에 분산하여 편성한 112개 부대 조사 (운용 전후 평가)
③ 비상근 예비군을 1개 부대에 집중편성한 6개 부대(동원보충대대) 조사 (운용 전후 평가)
*자료: 국방부

○ 국방부는 2026회계연도에 비상근 예비군 운용에 필요한 예산으로 2025회계연도와 동일한 86억 7,000만원(장기 비상근예비군 훈련보상비 : 53억 1,000만원, 단기 비상근예비군 훈련보상비 33억 6,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2014년 비상근 예비군 제도 도입 이래 2016년에 한차례 훈련보상비 단가 인상 이후 현재의 훈련보상비 단가를 유지하고 있음.

○ 2016년도 단기 비상근예비군 평일 훈련보상비 단가는 100,000원으로 당시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96] 99,882원(2016년 하반기 기준)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2025년을 기준으

96)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 자료 참조

로 하면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가 171,037원(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대비 훈련보상비 단가(2025년 평일 훈련보상비 100,000원)는 71,037원 차이가 있으며 약 58.4% 수준임.

[비상근 예비군 훈련보상비 단가변동 추이]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14년</th><th>'15년</th><th>'16년</th><th>'17년</th><th>'18년</th><th>'19년</th><th>'20년</th><th>'21년</th><th>'22년</th></tr>
<tr><td rowspan="2">훈련보상비</td><td>단기</td><td colspan="2">평일 8만원
휴일 10만원</td><td colspan="7">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td></tr>
<tr><td>장기</td><td colspan="8">제도 미도입 시기</td><td>평·휴일
15만원</td></tr>
</table>

*자료: 국방부

○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훈련보상비 지급은 비상근 예비군으로 복무할 유인을 저하하여 원활한 병력 수급 및 우수한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안정적 운용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보임.

○ 또한, 단기 및 장기 비상근 예비군 간의 훈련보상비 단가가 상이한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단기 비상근 예비군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군에서의 운용 직위, 업무 분야, 소집 기간 등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

으로 소집 기간에 군 부대에 입소하여 각 개인에게 부여된 군사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소정의 훈련을 받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장·단기 비상근 예비군 개인이 부담하는 신체적·정신적 부담 정도는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장기적으로 단기 비상근 예비군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 간의 훈련보상비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따라서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훈련보상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장·단기 비상근 예비군 간 훈련보상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비상근 예비군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복무하도록 하여 예비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40)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사업 및 지원비 (3751-301) : 국방 정보망 재해복구체계 강화 및 관련 예산 반영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사업 및 지원비(3754-201)는 사이버 위협 대응과 재해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복구를 통해 국방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사업 및 지원비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700만원이 감액(△0.0%)된 783억 2,9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사업 및 지원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사업 및 지원비	79,435	78,336	78,219	78,329	△7	-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방 정보시스템은 전장관리체계와 자원관리체계로 구분되며, 전장관리체계는 각 군의 C4I 체계를 포함하여 주센터와 예비센터 간 실시간 데이터 백업을 수행하고 있음.

자원관리체계는 재정, 급여, 동원, 인증, 문서유통 등 행정업무용 820여 개의 정보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7개의 핵심 체계[97]에 대해서는 2018년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내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1·2센터(○○시, △△시) 간 상호 백업 체계를 운영 중임[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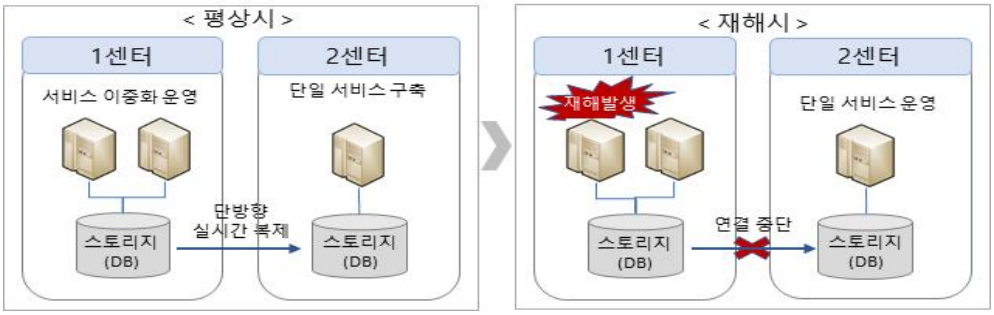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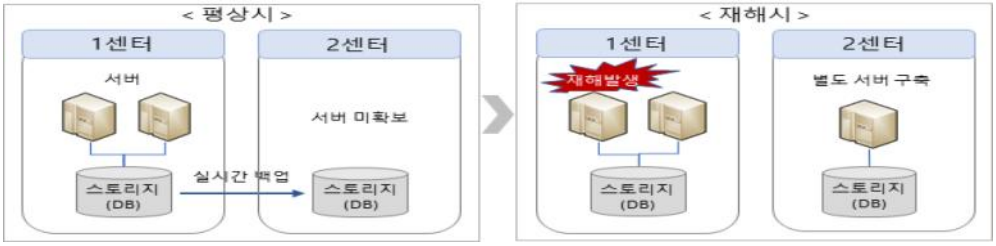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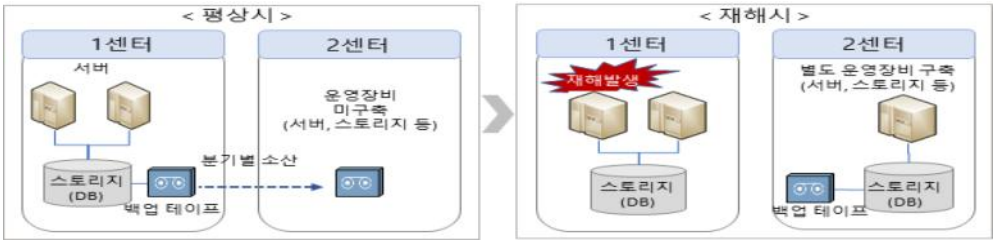
○ 재해복구시스템은 Mirror, Hot, Warm, Cold의 4가지 형태(다음 장 참조)로 구분되며, 전장관리체계는 Mirror형으로 실시간 데이터 백업 및 서비스 이중화를 운영하고, 7개의 핵심 자원관리체계는 Warm형으로 실시간 데이터 백업 및 재해시 별도 서버 도입 후 운영, 나머지 813개 자원관리체계는 Cold형으로 분류되어 분기별 백업 후 재해 시 동일한 서버를 확보하여 1~2개월 내 전환을 실시 중임.

---

97) 재정, 급여, 동원, 인증, 온나라, 문서유통, 사용자·조직정보

98) **[2018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현황]**
사업기간: 2018년(단년 사업)
예산: 38억원
대상체계: 재정, 급여, 동원, 인증, 온나라, 문서유통, 사용자·조직정보 (총 7종)
복구방식: 스토리지 방식(Warm 형태) 복구모델 적용
*스토리지 방식: 주센터에만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예비센터에는 서버를 확도하지 않고 실시간 데이터만 스토리지에 백업하는 방식(재해시 복구기간: 1~2개월)

[재해복구시스템 복구모델 유형]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설 명</th><th>특 징</th></tr>
<tr><td rowspan="2">1
서
버
방
식</td><td>① Mirror 형태 (Active-Active)</td><td> 
</td><td>· 각 센터간 동일체계 구축
· 서비스 동시·분산 운영</td><td>· 재해시 즉각적인 서비스 전환 가능
· 높은 초기 구축비용, 운용비용 과다 발생
· 센터간 거리가 100km 이내 구성 필요</td></tr>
<tr><td>② Hot형태 (Active-Standby)</td><td> 
</td><td>· 각 센터간 동일체계 구축
· 재해복구 서버는 재해시 전환</td><td>· 재해시 근실시간 서비스 전환 가능(1일 이내)
· Mirror 대비 초기 구축비, 운영비 다소 저렴
· 센터간 거리제한 없음</td></tr>
<tr><td colspan="2">2 스토리지 방식 (Warm 형태)</td><td> 
</td><td>· 각 센터간 데이터만 실시간 백업
· 재해시 별도 서버 도입 후 운영</td><td>· 재해 시 동일한 서버 확보에 따른 상당한 전환기간 필요(1~2개월)
· 초기 구축비 저렴</td></tr>
<tr><td colspan="2">3 백업/ 소산방식 (Cold 형태)</td><td> 
</td><td>· 각 센터의 백업 데이터를 보조기억매체(테이프 등)에 저장하여 상호 소산 보관
· 재해시 별도 서버 도입 후 운영</td><td>· 재해 시 동일한 서버 확보에 따른 상당한 전환기간 필요(1~2개월)
· 백업 소산 주기(분기)만큼 데이터 손실 발생
· 초기 구축비용 가장 저렴</td></tr>
</table>

*자료: 국방부

○ 한편, 지난 9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0여 개의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국가행정망의 대규모 장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음[99].

○ 국방 정보망의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아닌 별도의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정부 행정망의 복구 지연 사례를 볼 때 국방 정보망 역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국방망 중 자원관리체계 역시 서버 및 스토리지 이중화(Cold 방식 → Hot/Warm 형태 전환) 등 고도화된 재해복구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임.

○ 국방부는 2024년도에 기존 7개의 핵심 자원관리체계를 포함한 주요 정보체계(84개)를 대상으로 재해복구체계 고도화 방안 ISP[100]를 완료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정보체계(820여 개)를 대상으로 서버 및 스토리지 기반 재해복구체계 확대 구축 타당성을 검증할 ISP 추진이

---

9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발생 및 피해현황]**
2025. 9.26. 20:15경 5층 서버실에 보관중인 리튬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 중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여 8층 7-1 전산실 거의 전소(전산장비 740대, 배터리 384대), 냉각탑 전원 케이블 손상 및 다수 구역의 항온항습기 손상
이에 따라 7-1 전산실을 포함한 모든 전산실의 709개 서비스 중단(2025년 10월 기준 복구율 74%)

100)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 -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식별하고, 업무 활동과 관련 자료 영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 접근 방법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ISP 결과를 근거로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여야 함.

필요해 보임.

○ 따라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주요 자원관리체계의 서버 이중화 사업 및 재해복구체계 확대 ISP를 위한 사업비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101].

101) 국방부에 따르면 재해복구체계 구축비에 28억 6,500만원, 재해복구체계 확대 ISP에 8억원이 소요되어 총 36억 6,500만원이 소요된다는 입장임.

(41)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군사시설개선)(5131-302):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액조정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5131) 단위사업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세출직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인건비(5131-301)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일부 시설을 방위비분담 계획 일환으로 지원하는 군사시설개선(5131-302) 및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군수소요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군수분야(5131-304)로 구성되는 사업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하는 사업임.

○ 이 중 군사시설개선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01억 1,150만원이 증액(21.8%)된 7,264억 9,2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인건비	546,632	553,835	615,700	645,700	91,865	16.6
군사시설개선	553,562	596,377	619,504	726,492	130,115	21.8
군수분야	235,560	279,888	220,000	232,581	△47,307	△16.9
계	1,335,754	1,430,100	1,455,204	1,604,773	174,673	12.2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통상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으로 약칭됨; 이하 "특별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102](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라 함) 제5조[103]에 대한 특별조치 협정으로, 우리 정부가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모두 제공하되(SOFA 제5조제2항), 미측이 시설과 구역 외의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다(SOFA 제5조제1항)는 비용부담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제12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은 현행 제11차 특별

---

102)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임.

103)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제5조 ①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It is agre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ar for the duration of this Agreement without cost to the Republic of Korea all expenditures incident to the maintenance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except those to be borne by the Republic of Korea as provided in paragraph 2.) ②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It is agre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furnish for the duration of this Agreement without cost to the United States and make compensation where appropriate to the owners and suppliers thereof all facilities and areas and rights of way, including facilities and areas jointly used, such as those at airfields and ports as provided in Articles 2 and 3)

협정의 유효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해 나가자는 한미 간 공감대 하에서 개시되었음. 이후 총 8차례의 공식 회의를 거쳐 양국 정부는 2024년 10월 2일 특별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함.

이어서, 양국 정부 내 절차를 거쳐 2024년 11월 4일 외교부 장관과 주한미국대사에 의해 정식 서명되었고,「대한민국헌법」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비준동의를 위해 2024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되어 2024년 11월 28일에 국회에서 의결(11.29. 발효)되었음.

○ 제12차 특별협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6년 지원분 규모는 1조 5,192억원이고[104],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적용하여 증가하도록 하며, 아울러 이러한 연간 증가율은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음.

제12차 SMA 국문 협정문
제2조 이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을 결정한다. 2026년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1조 5,192억원이다. 2027년, 2028년, 2029년 및 2030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2027년은 2025년, 2028년은 2026년, 2029년은 2027년, 2030년은 2028년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적용하여 증가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또한, 모든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104) 2025년도 방위비 분담금 1조 4,028억원 대비 1,164억원(8.3%)이 늘어났음.

○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개선 사업의 집행방식은 한미가 공동 협의한 시설물에 대해 미측의 설계가 완료되면, 한측이 한국 시공사와 계약·공사집행을 하고 완공된 시설을 미측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현금지원분과 현물지원분으로 구분됨.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시설개선 배정액은 협정 총액인 1조 5,192억원 중 7,035억원으로, 이 중 특별협정에 따라 군사건설 배정액의 12%만큼은 미측이 수행하는 설계·감리비용으로 지급됨(844억 2,000만원).

○ 한측이 수행하는 공사집행 비용인 현물지원분에 대해서는 다년간 실시하는 시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2026년도에는 이전부터 진행중인 계속사업(35건)과 2026년도의 신규사업(11건)에 대한 공사비용을 고려하여 5,314억 8,4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국방부에서는 보고 있음.

구분	집행소요	비고
현금지원분	844억 2,000만원	군사건설 배정액(7,035억)×12%
현물지원분	5,314억 8,400만원	'26년 이전 계속사업+'26년 신규사업을 고려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특별협정 배정액과 차이 발생 ■ 계속사업(35건): 5,093억 6,900만원 ■ 신규사업(11건): 11억 ■ 공사관리비용 등: 210억 1,500만원
계	6,159억 400만원	

*자료: 국방부

○ 그런데 정부가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군사시설개선 예산액은 7,264억 9,200만원으로 이 중 현금지원분(844.2억)을 제외하면 현물지원분이 6,420억 7,200만원이 편성되어 국방부에서 2026년도에 집행가능한 수준인 5,314억 8,400만원보다 1,105억 8,800만원이 과다편성되어 있음.

구분	국방부 요구안(A)	정부안(B)	차이(B-A)
현물지원분	5,314억 8,400만원	6,420억 7,200만원	1,105억 8,800만원

*자료: 국방부

○ 따라서 2026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시설개선 사업 예산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1,105억 8,800만원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42)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5134-302) : 파병부대 개인용품 현금지급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 집행 목적에 부합하도록 비목 변경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5134-302) 사업은 소말리아 해역 파병, UAE 파병 및 개인파병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임.

○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7,400만원이 감액(△2.8%)된 95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9,024	9,809	10,123	9,535	△274	△2.8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① 파병부대 개인용품 현금지급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1200) 내 개인용품(1241-303) 사업은 군 장병 개인 위생여건 보장을 위하여 전 장병을 대상으로 개인 일용품을 현품 및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그동안 개인용품 중 초도보급 품목은 현품보급을 원칙으로 보급중이며, 보충보급 품목 중 일부 품목(치약, 칫솔, 샴푸, 스킨, 로션 5종)에 대해서는 현금(월 7,510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현금지급은 장병 개인 선호도가 뚜렷하여 장병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거나, 사용량의 개인차가 발생하여 고정된 보급기준 적용이 어려웠던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임.

○ 국방부는 개인용품 보충보급을 위한 현금 지급의 필요성 및 효과성이 미흡하고, 정책의 타당성 및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는 개인용품 현금지급을 폐지하고 동 예산안을 감액(275억 6,6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2026년도 개인용품(1241-303) 사업 예산안 현황]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1,158	○ 일반수용비(210-01) : 51,158,000천원 가. 개인용품 현품 지급 (23,592,159천원) ・ 초도보급 4,276,585개 × 911원 = 3,896,811천원 ・ 보충보급 26,183,748개 × 752원 = 19,695,348천원 나. 개인용품 현금 지급 (27,565,841천원) ・ 305,879명 × 12개월 × 7,510원 = 27,565,841천원	22,330	○ 일반수용비(210-01) : 22,330,000천원 가. 개인용품 현품 지급 (22,330,000천원) ・ 초도보급 : 7,995,821개 × 890원 = 7,113,113천원 ・ 보충보급 : 32,888,991개 × 463원 = 15,216,887천원 나. 개인용품 현금 지급 (0원) ・ 0원

*자료: 국방부

○ 보충보급 현금지급 사업은 장병의 선호도 등을 반영한 사업이었으나, 현금지급이 사업목적에 따라 개인용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지가 불명확하고 월급과 동일한 날에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별도 수당과 같이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개인용품을 위한 현금지급은 해외파병 부대(아크, 동명, 한빛)에도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5134-302), PKO파병(5134-303)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로 동일하게 집행되고 있음.

[연도별 파병부대 개인용품 현금지급 집행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진교대 횟수)	1인 지급액 (원)	아크부대		동명부대		한빛부대		계	품목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2022 (아크1, 동명2, 한빛2)	52,000	150	8	557	29	581	30	67	속옷, 손수건, 썬크림, 면도기세트, 세면주머니, 세면용품 등 10개 품목
2023 (아크2, 동명1, 한빛1)	242,000	298	72	277	67	293	71	210	속옷, 손수건, 썬크림, 면도기세트, 세면주머니, 세면용품 등 14개 품목
2024 (아크1, 동명2, 한빛2)	242,300	148	36	554	134	562	136	306	운동화, 스포츠양말, 검정반팔티, 전투용안경, 속옷, 손수건, 썬크림, 면도기세트, 세면주머니, 세면용품 등 14개 품목
2025 (아크2, 동명1, 한빛1)	286,700	285	82	278	80	283	81	243	운동화, 스포츠양말, 검정반팔티, 팔토시, 버프, 전투용안경, 속옷, 손수건, 썬크림, 면도기세트, 세면주머니, 세면용품 등 16개 품목

*자료: 국방부

○ 개인용품 구입을 위한 현금지급이 월급 외의 수당으로 인지되어 사업효과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동 현금지급 사업도 폐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나, 해외파병 부대의 경우, 기후·환경·현지 상황 등에서 국내와는 다른 해외임무지인 점과 교대기간 존재 및 수송 부담 등으로 보급품 재고관리가 어려운 점은 인정

된다 할 것임.

○ 다만, 해외파병 부대에서도 개인용품 구입을 위한 현금지급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동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금지급이 당초 정해진 품목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해외파병 부대의 개인용품 현금지급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부대장의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집행 목적에 부합하도록 비목 변경 필요

○ 내역사업인 소말리아해역 파병 사업에는 매년 3,0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데, 이는 「국군의 해외 파병훈련부대 예산집행 지침」(해군지침)에 근거하고 있음.

[소말리아해역 파병관련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편성액	집행액	내용	
			인원	단가
2021	28	28	915	25$
2022	28	28	915	25$
2023	30	20	610	25$
2024	30	30	915	25$
2025	30	20	610	25$
2026	30	-	-	-

*자료: 국방부

국군의 해외 파병훈련부대 예산집행 지침(해군지침)

ㅇ (우수장병 포상금) 파병 전 우수장병 포상계획 수립, 1인 지급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장병 포상

ㅇ (파병지 현지 포상금) 파병 기간 중 파병지 현지 지도 방문 시 1인 지급 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장병 포상(현지 방문지도 제한 시 파병부대장에게 위임하여 현지 포상)

○ 매년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배포하여 각 부처에서 예산집행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집행지침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95

<공통지침>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 그런데 국방부는 소말리아해역 파병에 따른 포상금을 법령이 아닌 지침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있어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있음. 동 포상금은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포상금은 현금성 경비로서 격려효과, 사기진작, 사업홍보, 참여율 제고 등의 사업효과가 상당함에도 예산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집행지침에서 법령에 지급 근거 및 한도를 명확하게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됨.

○ 또한 국방부 수행사업 중 부대운영지원 사업, 예비전력운영지원 사업, 병양성교육 사업, 간부양성교육 사업, 군사대학교육 사업에 따른 포상금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집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에 따른 다른 기준(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여짐.

[2024년도 법령 근거 포상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집행액	지급 근거
부대운영지원	558	적극행정 운영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예비전력운영지원	108	예비군법
병양성교육	2	병역법
간부양성교육	31	사관학교설치법
군사대학교육	30	국방대학교설치법

*자료: 국방부

○ 다만, 동 예산의 실제 집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덴만 해역 등지에서 장기간 폐쇄된 함정생활을 하는 청해부대 전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금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포상금(310-03)으로 편성된 동 사업의 비목을 사업의 목적에 맞게 기타운영비(210-16)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기타운영비(210-16)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 과운영비
□ 비서실운영비
□ 시험관리비
□ 축·조의금 및 격려금

(43) PKO 파병(5134-303) : 파견연장 동의안 국회 제출시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등 대책 포함 필요 / 국제연합 레바논(UNFIL) 철수에 따른 예산 감액조정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PKO 파병(5134-303) 사업은 레바논에서 발생한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 이후 UN의 요청에 따라 파병이 시작된 레바논 동명부대와 내전으로 폐허가 된 남수단의 재건을 위한 UN의 요청에 따라 2013년부터 남수단으로의 파병이 시작된 한빛부대의 피복·물자·수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PKO 파병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100만원이 감액(△0.1%)된 326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PKO 파병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PKO 파병	30,335	32,719	32,937	32,688	△31	△0.1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① 파견연장 동의안 국회 제출시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등 대책 포함 필요

○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사업에 따른 소말리아 해역 파병 및 UAE 파병과 PKO 파병 사업에 따른 레바논 파병 및 남수단 파병을 위해 정부는 헌법 제60조제2항에 규정된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는 조문에 따라 매년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고 있음.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현황]

구분	대상국(부대명)	최초 파견시기	비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청해부대)	2009. 3.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사업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UAE(아크부대)	2010. 12.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레바논(동명부대)	2007. 7.	PKO 파병 사업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남수단(한빛부대)	2013. 3.	

*자료: 국방부

○ PKO 파병에 대해서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 첨부해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파견연장 동의시에도 동일한 사항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105].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①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사활동보고서
2. 파견지
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
4. 파견부대의 규모
5. 파견기간
6. 파견부대의 임무
7.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
8. 그 밖에 국군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1. 파병부대의 지휘관계
2. 파병에 필요한 예산
3. 파병일

○ 그런데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국회 제출

105)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파견기간의 연장)** ①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파견연장 동의안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첨부서류 중 제7호의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누락되어 있음.

○ 또한 국방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도 국회에 제출서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법률에 규정된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또한 누락되어 있음.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5조(파병 결정) ① 합참의장은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파병계획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한다.
② UN PKO 파병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외교부장관은 국방부가 검토한 파병계획에 기초하여 파병 동의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외교통일위원회 및 본회의에 심의·의결을 구한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다.
1. 제14조 제2항에 따른 조사활동보고서
2. 파견지
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
4. 파견부대의 규모
5. 파견 기간
6. 파견부대의 임무
7. 파병부대의 지휘관계
8. 파병에 필요한 예산
9. 파병일
③ UN PKO 이외 파병의 경우, 국제정책관은 합참이 검토한 파병계획에 기초하여 파병 동의안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며, 국방위원회 및 본회의에 심의·의결을 구한다.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2항 각 호 사항을 첨부한다.

○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안전은 해외파병의 성패와 직결되므로, 국회가 이를 심사·확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고, 정부가 구체적인 안전·사고예방 대책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파병 과정에서의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국민적 신뢰와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견연장동의안 제출시 반드시 제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 국방부 및 외교부는 각각 소관 파견연장 동의안 국회 제출시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도 반영하며, 2026년도 해외파견을 위한 동의안 심사시 별도 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음[106].

106)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사업에 따른 소말리아 해역 파병 및 UAE 파병 동의안에도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첨부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철수에 따른 예산 감액 조정 필요

○ PKO 파병 부대 중 레바논에 파병 중인 동명부대는 2007년 7월 19일 첫 파견 이후 현재까지 작전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레바논군 협조 및 지원, 인도주의적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지난 2025년 8월 28일에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의 임무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되고, 이후 1년 이내로 철수를 완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에 소속된 동명부대도 2026년 12월 31일에 임무를 종료하고 이후에 철수를 시행할 예정으로, 철수계획 및 향후 일정은 추후 외교부·유엔·합동참모본부와 협의하여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함.

○ 동명부대 파견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은 피복, 장비획득, 수송, 통신, 시설 등에 필요한 9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대 철수에 따른 불필요해진 노후 장비 교체 및 대규모 보수·개선 사업 등의 예산은 감액 조정이 필요해 보임.

○ 구체적으로 보면 장비획득 사업에서 소형 궤도 굴삭기, 2.5t/5t 상용 트럭 등의 노후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 2억 9,600만원, 시

설 사업에서 주둔지 대피호 개선사업, 노후 병영기본시설(화장실, 샤워장, 세면장) 개선사업에서 11억 3,500만원, 노후 컨테이너 교체비용 3,750만원 등의 예산은 감액 조정이 필요해 보임.

[동명부대 철수 결의 이후 예산조정(안)]

구분	'26년 예산안 (정부안)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예산조정(안)
계	9,504	▪ 교대 횟수 감소(2→1회)	
피복	459	▪ 교대 횟수 감소에 따른 피복비 감액	
장비획득	296	▪ 노후 장비 교체 소요 (소형 궤도 굴삭기, 2.5t/5t 상용 트럭 등) 반영	·노후장비 교체 소요 전액 삭감 (△296)
장비운영	276	▪ 보유장비 수리 부속품 구매 등 실소요 반영	
물자획득	515	▪ 노후 냉장·동 컨테이너 교체 반영 ▪ 의약품, 행정용품 등 임무수행 필수 물자 반영	·컨테이너 교체 자산취득비(△37.5)
수송	2,360	▪ 진교대(1회) 수송 ▪ 해상재보급 및 통관수송비 반영	
통신	2,639	▪ 상용위성 사용료 실 소요(계약단가) 반영	
시설	1,243	▪ 주둔지 대피호 개선사업 715 ▪ 노후 병영기본시설(화장실, 샤워장, 세면장) 개선사업 등 420 ▪ 시설장비유지비 107	·대규모 보수 등을 위한 공사비 감액 필요 (△1,135)
기타부대운영	929	▪ 행정용품, 차량 임차료 등 반영 ▪ 업무용 스마트폰 노후단말기 교체 소요 등 반영	
민군작전	787	▪ 현지 민군작전 경비 실소요	

○ 따라서 레바논 동명부대 철수에 따른 장비획득, 물자획득 및 시설 사업에서 총 14억 6,850만원의 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해 보임.

(44) 무관부활동(5135-301) : 주재무관 소집회의 비대면 회의 활성화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무관부활동(5135-301)사업은 해외 군사정보수집, 방산 협력지원, 군사외교 및 협력을 위한 재외공관 무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무관부활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7,600만원이 증액(1.5%)된 185억 6,800만원임.

[2026년도 무관부활동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무관부활동	17,159	18,310	20,038	18,568	276	1.5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무관부활동 사업은 해외군사정보 수집 및 군사외교활동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54개국(55개국 무관부)에 77명의 무관 및 121명의 행정직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임.

○ 국방정보본부는 「재외공관 주재무관부 운영규정」제41조에 따라 매년 무관의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집회의를 개최하고, 소집회의시 무관부별 업무성과, 연구과제 발표 및 토의 등을 통해 무관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며, 관련부서 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및 개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재외공관 주개무관부 운영규정」에 따르면 소집회의 참석대상자는 임명 18개월 이내자(전반기) 및 주변국 장군무관과 임명 18개월 경과자(후반기)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정보본부는 매년 소집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하고 소집회의 개최에 필요한 참석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재외공관 주재무관부 운영규정」제41조

1. 국내 소집회의는 해당연도 파견 및 귀국예정 무관은 제외한다.
2. 국내 소집회의는 전반기에는 임명 18개월 이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후반기는 주변국 장군무관과 임명 18개월 경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3. 전년도 무관부 감사, 지도방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국내 소집회의를 국외 소집회의로 대체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소집회의 대상과 개최국은 주재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연도별 무관부활동 소집회의 개최현황]

구 분	기 간	참 석	예 산	비 고
2020	-	-	-	비대면
2021	10.25. ~ 10.29.	13개국 15명	48백만원	대면
2022	11.14. ~ 11.18.	17개국 21명	54백만원	대면
2023	10.16. ~ 10.24.	20개국 23명	71백만원	대면
2024	09.22. ~ 09.29.	18개국 21명	73백만원	대면
2025	06.21. ~ 06.18.	13개국 17명	73백만원	대면
2026			73백만원	

*자료: 국방부

○ 다만, 최근 소집회의 개최실적 및 회의방식을 보면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인 2020년에 비대면 실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대면회의로 소집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주재무관의 대면회의는 정책의 통일성 확보, 정보·경험 공유, 네트워킹 및 신뢰 형성, 보안성 강화 및 사기 진작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나, 시간·비용의 절감, 신속한 현안 대응, 참여 용이성 및 지속적·정례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대면 회의도 또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또한 「재외공관 주재무관부 운영규정」 제41조에 소집회의는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연 1회(대면회의)

만 실시하고 있는바, 비대면 회의 개최를 명문화하여 동 규정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방부(국방정보본부)는 재외무관에 대한 비대면 소집회의를 활성화하여 기존의 대면회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45) 정책기획지원(5136-302) : 주한외국무관단 안보산업현장 견학 사업 비목변경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정책기획지원(5136-302) 사업은 원활한 국방정책활동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귀환포로국군지원 사업, 전작권 전환 지원 사업, 북핵 및 WMD 대응 지원 사업, 국방정책지원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국방외교 및 국제협력 사업, 한미동맹 유대강화 사업 등으로 구성됨.

○ 정책기획지원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200만원이 증액(6.6%)된 96억 8,6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정책기획지원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정책기획지원	19,574	9,084	9,686	9,686	602	6.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국방외교 및 국제협력 사업은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의 분과회의 운용, 방위비분담 협상 지원 등 국방외교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외교 지원을 위해 매년 동 사업으로 주한외국무관에 대한 안보산업현장을 견학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이를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은 7,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에는 보험료, 입장료 등 일반수용비(210-01)와 식비지원을 위한 급식비(210-04), 대관료 집행을 위한 임차료(210-07) 등의 세부집행내용 등이 포함되나, 용역업체를 통한 사업추진의 수월성을 위해 매년 일반용역비(210-14)로 비목을 편성하고 있음.

○ 다만,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군부대 및 방위산업체 등 군사보안시설 방문으로 업체를 통한 계획·수행이 제한되고 수수료 등 추가지출 발생 등으로 국방정보본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4년도에 이어 2025년도에도 일반수용비(210-01), 급식비(210-04) 및 임차료(210-07)로 각각 세목조정을 하여 집행하였음.

[2025년도 주한외국무관단 안보산업현장 견학 사업 집행현황]

구분	비목	예산액
편성	일반용역비(210-14)	68,000,000원
집행	일반수용비(210-01), 급식비(210-04), 임차료(210-07)	210-01: 614,500원 210-04: 20,506,900원 210-07: 19,440,000원

*자료: 국방부

○ 이와 같은 세목조정을 통한 집행방식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고 있어 실제 집행 시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세목을 조정하여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을 기능별·성질별·기관별에 더하여 목별로도 구분하도록 한 취지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되도록 하는데 있다 할 것인바, 지침에서 정한 적절한 비목편성과 이에 근거한 집행은 이러한 예산의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된다 할 것임.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따라서 주한외국무관 안보산업현장 견학 사업에 대한 비목을 실제 집행예정인 비목인 일반수용비(210-01), 급식비(210-04), 임차료(210-07)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46) 한국국방연구원(R&D)(5137-301) : 보고서 발간시기 분산 필요 / 보고서 연구주제 편중 지양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한국국방연구원(R&D)(5137-301) 사업은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건비, 경상경비 등을 출연하는 사업임.

○ 한국국방연구원(R&D)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억 1,200만원 증액(2.7%)된 574억 3,3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한국국방연구원(R&D)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한국국방연구원(R&D)	54,427	55,921	59,136	57,433	1,512	2.7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한국국방연구원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임.

○ 한국국방연구원은 매년 200여 건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고서 발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첫째, 매년 월별 보고서 발간건수를 보면 특정시점(12월, 1월, 2월)에 과도하게 치우친 것(57.1%)을 볼 수 있는데, 보고서 발간이 특정시점에 집중되어 연구 결과가 시의성 있게 제공되지 못해 정책 수요나 현안 대응에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도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한국국방연구원은 보고서 발간을 연간 일정에 따라 균형있게 분산하여 연구 성과의 시의성을 높이고 보고서 발간업무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월별 보고서 발간 건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	34	32	29	8	15	3	3	6	15	14	19	37	215
'21	27	24	9	5	3	5	3	18	2	17	13	31	157
'22	12	44	1	16	-	8	4	7	10	13	11	19	145

'23	46	38	7	3	3	7	2	4	8	9	7	29	163
'24	53	43	10	4	6	4	6	11	8	9	2	29	185
'25	13	56	23	10	3	8	3	12	-	-	-	-	128
계	**185**	**237**	79	46	30	35	21	58	43	62	52	**145**	993

*자료: 한국국방연구원

○ 둘째, 한국국방연구원은 「한국국방연구원법」제6조에 따라 안보환경, 국방기본정책, 무기체계의 선정 등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사업)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2.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3. 국방인력·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4.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5.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5의2.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지원
6.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7. 국내외 연구기관·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9.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한국국방연구원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보고서 주제별 현황을 보면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에 상당히 치중(42.6%)한 것을 볼 수 있음. 연구주제 편중은 연구원의 전문성을 심화시킬 수 있으나, 다양성·균형성·정책 대응력 측면에서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2024년도에 군 인권보호 관련 연구가 2건에 불과한바 자칫 특정 분야의 주제에는 소홀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

[연도별 보고서 주제별 현황]

구 분	'21	'22	'23	'24
1.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25	32	25	21
2.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96**	**93**	**102**	**90**
3. 국방인력·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24	31	32	32
4.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11	4	8	2
5.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6	16	9	9
5의2.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지원	26	25	25	24
6.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12	13	12	12
7. 국내외 연구기관·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10	14	14	9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	-	-
9.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8	9	8

*자료: 한국국방연구원

○ 따라서 한국국방연구원은 연구주제가 편중되지 않고 균형있게 분산·확대되게 함으로써 연구원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정책 수요와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4131-485) : 방첩사 폐지 결정에 따른 2026년도 사업비 전액 삭감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4131-485) 사업은 국가유산보호구역(서오릉) 내 위치하여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이전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군사안보지원학교를 사령부 내로 이전하는 사업임.

○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72억 8,100만원이 증액(87%)된 156억 3,3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178	8,352	25,208	15,633	7,281	87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방부의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사업은 국가유산보호구역(서오릉)[107] 내에 위치하여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전 요구를 받아온 군사안보지원학교를 현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내로 이전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총사업비 575억 7,800만원 규모의 시설사업으로, 2024년 11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4월에는 조달청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었음.

당초에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친 후 공사계약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폐지' 방침이 발표되고, 국방부는 2025년 8월 25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방첩 기능만을 유지하고 주요 기능별로 업무를 이관 또는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힘[108]에 따라 현재 사업 추진이 전면 보류된 상태임.

이에 따라 2025년도에는 건설보상비 및 시설부대비 지급을 제외한 공사 착수 및 예산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107) 고양 서오릉(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92번지)
국가유산보호구역 지정일: 1970.5.26.
108) 2025.8.25.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국방부 현안보고자료 내용 중 일부.

[2022~2025년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비목	예산액	지출액
2022년	총계	518	23
	건설보상비(420-01)	143	23
	기본조사설계비(420-02)	375	0
2023년	총계	1,273	1,206
	건설보상비(420-01)	335	226
	기본조사설계비(420-02)	882	980
	시설부대비(420-05)	56	0
2024년	총계	178	388
	건설보상비(420-01)	0	61
	기본조사설계비(420-02)	143	287
	시설부대비(420-05)	35	40
2025년 ('25.9.30. 기준)	총계	8,352	2,369
	건설보상비(420-01)	1,639	2,322
	기본조사설계비(420-02)	0	0.5
	공사비(420-03)	6,358	0
	감리비(420-04)	333	0
	시설부대비(420-05)	22	47

*자료: 국방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9월 3일 제출된 2026년도 정부안 예산에는 총 공사비의 35%에 해당하는 149억 4,000만원 등 총사업비의 27.2%에 해당하는 156억 3,300만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 본 사업의 경우, 2025년도 공사비 예산은 사실상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26년도에도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 방안 및 사업 추진 재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 집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향후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다면 해당 시점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26년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사업 예산안에 편성된 156억 3,300만원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음.

(2) 부대개편 8차 (4131-489) : 국군고양병원 개편사업 설계지연에 따른 2026년 예산 감액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부대개편 8차 (4131-489) 사업은 '23년부터 1사단, 3사단, 6사단, 7군지단, 특수기동지원여단, 육군검찰단, 해체/이전부대 역사관 등 22개 부대를 미래를 부대구조로 개편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임.

○ 부대개편 8차 (4131-489)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405억 6,100만원이 증액(77.1%)된 931억 5,4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부대개편 8차 사업 및 지원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부대개편 8차	6,980	52,593	127,772	93,154	40,561	77.1
국군고양병원 개편	1,209	12,212	13,873	13,873	1,661	13.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부대개편 8차 사업 중에는 1989년도에 준공된 국군고양병원을 김포축선 및 서북도서 지역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수도군단 의무지원 강화를 위해 이전·신축하는 내역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국군고양병원 개편사업의 2025년도 공사비는 11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2025년 내 공사계약을 추진하고 철거공사 선급금 및 관급자재비를 지급하여 공사비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7월부터 조달청에서 실시한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설계 완료가 2026년까지 지연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5년 9월말 기준 공사비는 전혀 집행되지 못한 상태임.

[2025~2026년 국군고양병원 이전사업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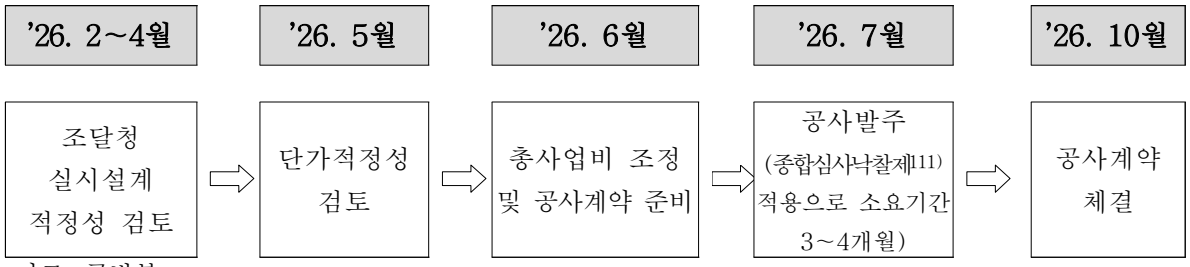
	2025('25.7월말)							2026 예산안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			
○ 고양병원	12,212	13,032	610	12,071	-	-	-	13,873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294	-	-	-	-	-	
· 실시설계비(420-02)	-	47	-	-	-	-	-	
· 공사비(420-03)	11,785	11,785	-	11,785	-	-	-	13,311
· 감리비(420-04)	402	870	609	261	-	-	-	538
· 시설부대비(420-05)	25	36	1	25	-	-	-	24

*자료: 국방부

○ 국방부에 따르면,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109] 기간이 연장된 것은 설계 과정에서 산출된 국군고양병원 설계금액이 기존 총사업비 665억 5,300만원 대비 75억 9,900만원 증가한 741억 5,200만원으로 추정되어, 총사업비 증액 또는 사업 규모 조정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임.

○ 결과적으로,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가 2026년까지 지연되고, 그 이후 조달청 단가적정성 검토[110] 및 공사계약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국방부에 의하면 공사계약 체결 시기는 2026년도 4분기로 전망되며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2027년 초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26년 고양병원 개편사업 예상 추진일정]



*자료: 국방부

109) 설계 내용이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예산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사전에 검증
110) 설계가 확정된 이후, 계약·입찰 단계에서 제시된 단가(견적·입찰가)가 합리적인지 검증
111)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입찰자격 적격자를 선정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종합심사(입찰금액, 단가심사, 하도급계획 등)를 실시하는 방식

○ 따라서 고양병원 개편사업은 2026년도가 실질적인 설계완료연도(공사계약연도)에 해당하므로, 2026년도 예산에 편성된 138억 7,300만원 중 「군 시설사업 연차별 예산배분 기준」에 따른 공사계약금 100만원 및 기 계획된 시설부대비 1,000만원[112]을 제외한 138억 6,200만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음.

[군 시설사업 연차별 예산배분 기준]

규 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200억 이상 -500억 미만	설계비 40%	설계비 40%	설계비 20%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50% (공사 1년차)	공사비 50% (잔여사업비)	-
500억 이상	**설계비 30%**	**설계비 30%**	**설계비 40%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30% (공사 1년차)**	**공사비 40% (공사 2년차)**	**공사비 30% (잔여사업비)**

*자료: 국방부

112) 조달청 설계검토위원 자문수당 납부

4.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1) 평택기지이전사업(4231-301) : 소요 인원 기준 정립과 사업관리용역비 산정기준 개편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평택기지이전사업(4232-301)사업은 용산기지이전(YRP) 포괄협정 등에 근거하여 1단계 평택 험프리스 기지 조성과 2단계 용산잔류 미군 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임.

○ 평택기지이전사업의 2026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2억 4,400만원이 감액(△43%)된 82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기존 1단계 평택 험프리스 기지 조성 사업이 마무리단계로 인한 미편성과 2단계 용산잔류 미군 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의 소규모 편성때문임.

[2026년도 평택기지이전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평택기지이전	12,073	14,522	8,278	8,278	△6,244	△43.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방부는 평택기지이전사업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1단계 평택 험프리스 기지 조성과 2단계 용산잔류 미군시설 이전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113]

2006년부터 시작된 평택기지이전사업에는 그동안 1단계 평택 험프리스 기지 조성 예산이 편성·집행되어 왔으나, 2025년 9월말 현재 1단계 평택 험프리스 기지 조성은 72개 프로젝트 중 71개가 완료되었고, 한·미 연합사령부의 대테러 및 부대방호를 위한 프로젝트 1건(2022년~2029년 예정)만 진행 중임에 따라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음.

○ 2단계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사업은 평택험프리스 등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후 용산 본체부지(메인·사우스포스트)에 산재된 미군 잔류시설을[114] 재배치하여 미군의 근무여건을 보장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부지반환 여건을 보장하여 용산공원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향후 2031년까지 총 2,5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참고로, 용산잔류 미군시설 이전사업 관련 예산은 2023년도 및

113) 당초 국방부는 평택기지이전사업을 YRP 73개 프로젝트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최근 YRP 73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을 기존 평택 험프리스 기지 조성과 별도의 단계인 2단계 사업으로 분류한다고 기준을 변경함.
114) 주한미군 복지센터, 사령관 전방사무실 및 숙소, 주 출입통제소, 시설대, 기관계 기관 연락사무소, 기타 기반시설 등임.

2024년도 등에도 편성되어 사업추진을 시도하였으나, 용산잔류 미군시설의 위치·면적·경계 등 잔류시설 소요 변경(2022. 4.)에 따라 한·미가 재협의에 착수하면서 2023년 미측의 설계업체 선정이 중지된바 있었다는 점에서 2020년에 양국 공동으로 수립한 시설종합계획(MP)을 기반으로 2026년도부터 정상적인 사업이행이 중요하다고 보임.[115)]

정부는 2026년도 평택기기지이전 사업 예산안에 본격적으로 2단계 용산잔류 미군시설과 C4I 기반공사에 소요되는 기본설계비를 국제부담금 비목((340-02))으로 46억 1,600만원 편성하였고, 이와 별도로 사업관리용역비를 감리비 비목(420-04)으로 36억 6,200만원 편성하는 등 총 8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평택기지이전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제 부담금 (340-02)	공사비 (420-03)	감리비 (420-04)	시설 부대비 (420-05)
계		8,278	4,616	-	3,662	-
1	용산잔류미군시설	4,383	4,383	-	-	-
2	용산잔류미군시설 C4I	233	233	-	-	-
3	사업관리용역비	3,662	-	-	3,662	-

*자료: 국방부

115)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 2024년 8월, p. 224.

평택기지이전사업에서 기본설계는 미국 측이 담당하므로, 용산잔류미군시설 및 C4I에 대한 기본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제부담금으로 편성하여 미국 측에 지급하는 것임.

○ 다만, 평택기지이전사업 시작 후 매년 반영되어온 사업관리용역비는 2026년도 36억 6,200만원으로, 이는 우리나라와 미군 측이 공동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관리컨소시엄(PMC)에 대한 한국 측의 부담분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나, 예산안 편성의 산출근거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사업관리컨소시엄은 한·미를 위해 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통합된 단일 사업체를 지칭하고, YRP사업(용산기지이전계획; Yongsan Relocation plan)[116]과 한·미가 합의한 LPP(연합토지관리계획; Land Partnership Plan)[117]의 사업관리 절차와 책임을 규정한 기술양해각서의 사업관리 절차서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 주요과업은 한·미사업관리용역, 하자보증, 설계변경, 기술지원 등임.

○ 국방부는 해당 사업관리용역비를 '과업에 비례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026년 기준인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25명으로 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116) 주 사업목적은 용산미군기지와 주변기지 등 9개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임.
117) 전국에 산재된 미2 미군기지를 평택·대구, 미2사단 등으로 통·폐합하여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국토활용을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그러나 2026년 과업에 소요되는 인원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과업량이 계량화되지 않음에 따라 과업에 소요되는 기준인원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2026년 사업관리용역비 예산안 산출 근거 및 기준인원]

구 분	내 용
산출 근거	• 한측 과업 : 8명 x (인건비+간접비+기타직접비+이윤) = 1,365백만원 • 한·미 공동과업(시설) : 14명 x (인건비+간접비+기타직접비+이윤) / 2 = 1,807백만원 • 한·미 공동과업(C4I) : 3명 x (인건비+간접비+기타직접비+이윤) / 2 = 489백만원
세부 편성 기준	① 인건비 : 52주 x 40시간 x 단가(공동과업 50%, 한측과업 100% 부담) ② 간접비 : 4대보험, 본사 관리비 등 / 인건비의 50% ③ 기타직접비 : 각종 수당, 사무실 경비, 차량 임대, 출장비 등 - 한·미 공동과업 : 인건비의 약 35% - 한측 과업 : 인건비의 약 30% ④ 이윤(Fixed Fee) : 인건비+간접비+기타직접비의 8%(정액보수)

*자료: 국방부

○ 또한, 사업관리용역비의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 사업관리용역비 53억 1,300만원 중 44억 5,500만원만 집행하고, 11억 7,700만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나, 이월금액에 해당하는 사업관리용역비 11억 7,700만원을 창고시설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자체조정(2025년 5월 14일)하여 집행하였음.[118]

또한, 2025년 사업관리용역비 9월 진도율이 48.9%으로,[119] 2024년

118) 국방부는 2단계 사업의 지연으로 사무소 이전이 불투명함에 따라 해당 판결금의 이자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동월의 진도율 62.8%보다 13.9%p 낮아 집행이 부진함.[120]

특히, 2026년도에도 2단계 용산잔류 미군시설 이전의 본격적인 착공이 아닌 미국 측이 주도하는 기본설계 단계에 머무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관리용역비의 편성과업에 해당하는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과업과 한·미 공동과업의 과업량과 소요 인원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음.[121]

○ 따라서 국방부는 사업관리용역 기준인원을 구체적인 과업량에 근거하도록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정립하고 사업관리용역비 산정기준을 개편함으로써 향후 사업관리용역비를 체계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119) 평택기지이전사업은 1단계 평택 험프리스 기지 조성에서 2단계 용산잔류 미군시설 이전으로 사업 중심이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점으로, 2025년인 경우에는 1단계 평택 험프리스 기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추가공사 프로젝트 중 통신센터 전력선로공사는 2025년 7월 종료됨에 따라 사업관리용역 과업이 적음.

120) [사업관리용역비 예산 및 집행 내역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한 지출액(진도비)			다음연도 이월액
				7월	8월	9월	
2024년	5,313	-	5,632	2,011 (48.6%)	2,212 (53.5%)	2,597 (62.8%)	1,177
2025년	3,556	△1,177	3,556	112 (3.1%)	613 (17.2%)	1,739 (48.9%)	-

*주: 2024년도 진도비는 사업관리용역비 예산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액 대비임.

121) 국방부는 2026년도 과업은 종합사업관리(기획, 계획, 비용/일정 관리, 변경 관리 등), 평택 프로젝트 잔여 과업 추진, 용산잔류 미군시설 이전 사업협의 및 설계 과업 추진 등으로, 2단계 용산잔류 미군시설 이전사업이 2026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2026년도에 편성된 사업관리용역비 전액을 집행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8610-860) : 예수원금 잔액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8610-860)사업은 미군기지이전사업비 충당을 위해 예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을 상환하는 사업임.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의 2026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87억원 감액된 2,237억원으로, 감액사유로는 예수금 7년 거치 후 원금 상환 원칙에 따라 2026년도에 상환기일 도래 예수원금 상환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370,000	432,400	223,700	223,700	△208,700	△48.3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평택기지이전사업 등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아 우선 사업비로 지출하고,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토지를 환경조사 및 치유사업을 통한 정화를 거쳐 매각한 토지매각대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상환하는 회계구조임.

○ 그러나 환경조사 및 치유사업(4232-302)에 대하여 국방위원회가 2024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정화사업 집행부진에 대한 주의를 채택한 바와 같이[122] 반환받은 일부 기지들에 대한 정화사업이 지연되어 이후 추진되는 매각절차의 지연이 초래되었음.[123]

○ 토지매각대 실적은 2023년 5,783억원과 2024년 561억원이었으나, 이와 같은 매각절차의 지연과 함께 최근 부동산PF 위축 등으로 인한 토지 매입수요 감소추세가 결합되어 정부는 2025년(예산)과 2026년(예산안)의 토지매각대를 각각 359억원과 330억원으로 낮게 편성함.

122) 국방부는 향후 기지별 설계 및 정화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관리 미흡으로 집행률 저조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23) 2024년 집행부진이 발생한 반환기지로는 캠프 마켓(인천), 캠프 킴(서울 용산) 등임.

[연도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등의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토지매각대	561	359	330	△29
기금예수금(C)	4,315	5,350	3,239	△21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D)	3,700	4,324	2,237	△2,087
기금예수금과 예수원금 상환 차이 (C-D)	615	1,026	1,002	△4
예수원금 잔액	28,981	30,007	31,009	1,002
예수이자상환	651	776	781	5

* 주: 2024년 결산 예수원금 잔액은 2025년 예수원금 잔액으로부터 추정하였고, 2026년 예수원금 잔액은 국방부 요구안이 아닌 정부 편성안 기준을 적용함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재구성

○ 이로 인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기금예수금은 2025년(예산) 5,350억원으로 예수원금 상환 4,324억원보다 1,026억원 더 커서 예수원금 잔액이 3조 7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6년(예산안) 기금예수금은 3,239억원으로 예수원금 상환 2,237억원보다 1,002억원 더 커서 예수원금 잔액이 3조 1,009억원으로 추정됨.

○ 이로 인해 이미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1단계 평택 험프리스 기지 조성이 마무리되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원금 잔액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00억원 이상 증가함에 따라 동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및 중장기적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전액 상환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예수원금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연동하여 별도 세부사업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도 2024년 651억원에서 2025년 776억원, 2026년 78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 특별회계의 중장기적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반환 기지에 대한 정화추진계획과 매각추진계획을 긴밀히 연계되게 수립함으로써 조속한 토지매각을 통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으로 예수원금 잔액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군인복지기금

(1) 재정운용 총괄 : 장병복지 향상을 위한 안정적 수익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가) 계획안 개요

○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 주거지원계정 및 학자금대부계정 등 3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군인복지기금의 2026년도 수입·지출 계획안에는 전년 대비 285억 3,600만원이 감액(2.8%)된 9,832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계정별로 전년 대비 복지계정은 821억 1,000만원 증액되었고, 주거지원계정은 1,074억 2,500만원, 학자금대부계정은 32억 2,100만원 각각 감액되었음

[2026년도 군인복지기금 계정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총 계	965,893	1,011,823	1,026,434	983,287	△28,536	△2.8
복지계정	636,090	620,111	742,841	702,221	82,110	13.2
주거지원계정	232,909	353,232	248,334	245,807	△107,425	△30.4
학자금대부계정	96,894	34,480	35,259	35,259	△3,221	△8.4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2026년도 군인복지기금의 재정운영표 계획(안)은 순수익 1,013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계획 순수익 761억 800만원 대비 262억 6,500만원 증액되었음.

2024년도 재정운영결과 결산 순원가(순손실)은 338억 6,700만원으로, 전년 2023년도 926억 7,200만원 순이익 대비 재정운영결과가 1,265억 3,900만원 악화됨에 따라 그동안 순이익을 기록해왔던 군인복지기금이 순원가(순손실)로 전환된바 있음.

이와 같은 군인복지기금의 수익성 저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 전반의 수익창출능력과 비용지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2026년도 군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재정운영]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말 실적	2024년말 실적	2025년말 계획		2026년말 계획(B)	증감 (B-A)
			당초	수정(A)		
1. 프로그램순원가	(20,020)	65,114	1,561	1,561	△36,300	△37,861
2. 관리운영비		-	-	-	-	-
3. 비배분비용	11,722	9,911	-	-	-	-
4. 비배분수익	84,121	40,964	10,489	10,489	11,976	1,487
5. 재정운영순원가 (5 = 1+2+3-4)	(92,419)	34,061	△8,928	△8,928	△48,276	△39,348
6. 비교환수익	253	193	67,180	67,180	53,097	△14,083
7. 재정운영결과 (7 = 5-6)	(92,672)	33,867	△76,108	△76,108	△101,373	△25,265

*자료: 국방부

○ 이에 군인복지기금의 3개 계정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자체적인 수익사업 등을 영위하는 복지계정의 2026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복지시설 운영수입 및 인건비 지출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자체수입을 388억원(7.7%) 증액한 5,413억원, 사업비 지출을 184억원(7.1%) 증액한 4,992억원을 편성하는 등 복지계정의 총규모를 7,022억원으로 편성하였음.

[2026년도 복지계정 수입·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억원, %)

구 분		'25년 계획(A)	'26년 계획안(B)	증감 (B-A)	증감 %
수입	ㅇ자체수입	502,493	541,292	38,799	7.7
	- 토지대여료	125	125	0	0.0
	- 건물대여료	24,873	21,816	△3,057	△12.3
	- 기타재산이자수입	4,883	5,029	146	3.0
	- 변상금	25	36	11	44.0
	- 위약금	100	105	5	5.0
	- 기타경상이전수입	4,225	3,602	△623	△14.7
	- 입장료수입	125,744	128,826	3,082	2.5
	- 기타잡수입	342,518	381,753	39,235	11.5
	ㅇ여유자금회수	116,598	100,027	△16,571	△14.2
	ㅇ정부내부수입	1,020	60,902	59,882	5,870.8
	- 기금예탁원금회수	0	60,000	60,000	순증
	- 기금예탁이자수입	1,020	902	△118	△11.6
계		620,111	702,221	82,110	13.2
지출	ㅇ사업비	480,800	499,236	18,436	3.8
	- 복지시설운영	374,133	400,579	26,446	7.1
	- 복지시설확보	40,366	48,025	7,659	19.0
	- 장병격려사업	40,427	24,591	△15,836	△39.2
	- 부대시설운영지원	8,290	8,250	△40	△0.5
	- 장학사업	2,400	2,900	500	20.8
	- 취업활동지원	15,184	14,891	△293	△1.9
	ㅇ정부내부지출	60,000	0	△60,000	△100.0
	- 공공관리기금예탁	60,000	0	△60,000	△100.0
	ㅇ여유자금운용	79,311	202,985	123,674	155.9

*자료: 국방부

○ 특히, 2026년도 복지계정 계획안은 마트 수수료 인상(2%, 연 357억원 증액) 등을 통해 수입을 확대하여 복지시설 개선 등 장병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화 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주요 수입 및 지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먼저, 주요 수입 항목을 살펴보면, 입장료수입은 체력단련장(그린피) 및 골프연습장 수입(신규 국방대 22억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0억 8,200만원(2.5%) 증액한 1,288억 2,600만원 편성하였음.

기타잡수입은 마트 부문의 판매확대율(10%) 적용 및 판매수수료 인상(2%)에 따른 356억 8,700만원 증액을 포함하여 체력단련장, 복지회관, 휴양시설 직영운영 수입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92억 3,500만원(11.5%) 증액한 3,817억 5,300만원 편성하였음.

○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지출 사업인 복지시설운영을 살펴보면, ① 인건비에서 공무직근로자 증원(4명) 및 처우개선(월보수 8.3% 인상) 169억 1,700만원 증액과 ② 운영비에서 행복기숙사 관리비(3억 9,000만원) 및 국방대 체력단련장('26년 개장) 운영비(8억 2,100만원) 등 3건의 신규사업 51억 8,100만원 등을 포함하여 163억 8,700만원 증액 등 264억 4,600만원(7.1%) 증액하여 4,005억 7,900만원 편성하였음.[124)]

124) 로카우스호텔 임대료의 비목전환(상환지출→임차료 112억 2,000만원)을 포함하고 있음.

복지시설 확보 사업은 캠핑·글램핑장 신축(20억 7,800만원)과 국방대 체력단련장 안전펜스 설치(5억원) 등 4건의 신규사업 38억 9,100만원 편성과 계룡대 체력단련장 클럽하우스 개선(13억 9,600만원), 무열대 체력단련장 전동승용카드 도입(23억 8,900만원), 청주·충주 체력단련장 클럽하우스 개선(22억 200만원) 등 계속사업에서의 전년대비 증액편성 등을 합한 76억 5,900만원 증액한 480억 2,500만원으로 편성됨.

[복지계정 사업별 수익 추이]

(단위: 억원)

연 도	계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군 휴양시설	군 마트
2020	507	241	-65	331
2021	665	328	-82	419
2022	876	370	-12	518
2023	1,027	365	15	647
2024	1,135	329	28	778
2025(예상)	1,228	329	34	865

*자료: 국방부

○ 이와 함께 복지계정의 3개 자체 수익사업인 군 체력단련장, 군 휴양시설, 군 마트의 수익 추이를 살펴보면, ① 군 체력단련장은 2022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의 골프인구 감소에[125] 따른 비회원인 일반인 입장료 수입 비중도 감소 추세임에 따라[126] 2025년(예상)

125) 2023년 우리나라 전체의 골프장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5.7% 감소한 4,772만명으로 집계되어 2021년 5천만 명 돌파 이후 감소세로 전환됨.
126) 그린피 단가가 높은 비회원의 입장료 수입 비중도 2022년 76.2%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23년 71.0%과 2024년 65.7%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수익이 329억원으로 정체되어 있고, ② 군 휴양시설은 2022년까지 적자에서 2023년 수익으로 전환되어 2025년(예상) 34억원으로 예상되며, ③ 군 마트는 지속적인 수익 확대에 따라 2025년(예상) 86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수익 추이를 분석해보면, 군 체력단련장의 수익성이 정체 내지 중장기적으로 하향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군 휴양시설의 수익 규모는 미미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군 마트 이외의 수익사업들은 기금의 수익성 개선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복지시설운영과 확보에서 군 체력단력장에 대한 지출(클럽하우스 개선 등)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나, 중장기적으로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사업비 지출은 비용효과성이 높거나 안전성 유지 등에 필수적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사전검토하여 기금 지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 복지기금의 구체적인 지출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복지시설을 확보하고 운영함으로써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중장기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장학사업(2239-646): 신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교육지원금의 소관 세부사업 변경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기금 집행내역

○ 장학사업(2239-646)은 군 자녀 중 대학 신입생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장학사업의 2026년도 계획안에는 전년 대비 5억원이 증액(20.8%)된 2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4억원) 및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교육지원금(1억원)임.

[2026년도 장학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장학사업	2,678	2,400	2,800	2,900	500	20.8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장학사업에는 2026년 개교하는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영천고)에 학생역량개발 등 학원 지원을 위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교육지원금 1억원**이 신규편성되었음.[127]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제2항제4호는 복지계정의 용도로서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장학(奬學)”의 사전적 의미는 ‘학문을 권장·장려하거나 경제적 원조를 하여 학생의 학업을 돕는 행위’로서(표준국어대사전), 그 본질은 학생 개인의 학업 수행을 직접적으로 금전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임.

이는 「교육기본법」 제12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와도 같이 “장학사업”은 그 법문상 개별 학생 단위의 경제적인 학업 장려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군인복지기금법」상 “장학사업의 지원” 규정에 따른취지는 군인복지기금 장학사업(꿈도전지원금)의 실제 운영 연혁에서도 확인됨.

장학사업은 1999년 도입 이래 대학 신입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어 왔으며, 지원대상의 범위와 성적기준

127) 국방부, 교육부, 교육청에서 학교별 연 1억원씩 지원 계획에 기반함.

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군인 또는 군무원 자녀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형태를 취하여 왔음.

이는 곧 장학사업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법적 근거 모두에서 개별 군인자녀의 학업 지원을 전제로 한 “장학금” 지급을 의미함.

○ 한편, 2026년도 계획안에 신규 편성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교육지원금(1억원)은 그 집행 방식이 군인복지기금 복지계정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비목을 통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전액(100%)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128)]

이는 곧 군인자녀 개인이 아니라 학교 운영자(교육청)를 통하여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로 지원하는 형태로, 특정 학교에 대한 지원은 ‘장학사업’이 아니라 ‘특정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이와 같이, “장학사업”은 사전적 의미와 관계와 법령·관행을 종합할 때 학생 개인의 학업 장려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본질로 함.

실제로 국가장학금, 보훈·군인 장학, 지역기반 및 민간 장학재단 모두 소득·성적 등 기준을 두고 학생 개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

128) 참고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 이므로, 일반회계를 통하여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는 방식으로 집행되어 왔음.

[장학사업의 정의와 대표사례 및 교육지원과의 구별]

구분	정의·법적 근거	주체	지급대상	전형 요소	집행 형태	대표 사례
사전적 의미	학문 장려·경제적 원조로 학생 학업 지원 (표준국어대사전)	-	학생(개인)	-	금전 지급	-
교육기본법 · 국가장학금	교육기본법 제12조: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가능	국가·지자체	대학생 ·저소득층	소득구간 ·성적·이수학점	등록금 감면 ·현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보훈·군인 장학	군인복지기금법 (장학사업), 보훈 관련 법률 (보훈장학)	국방부 ·국가보훈부	군인·군무원 ·보훈대상자 자녀	신분·성적 기준	장학금 현금 지급	군인복지기금 장학금, 보훈장학
지역기반 장학재단	조례·재단 정관	지자체 ·공익재단	지역 인재 · 취약계층	성적·소득	장학금 지급 ·프로그램 병행	서울장학재단, 경기도 인재육성재단
민간·기업 장학	재단 정관 ·사회공헌 규정	기업재단 ·비영리재단	저소득층 ·우수학생	가정형편 ·성적·잠재력	장학금 지급 + 멘토링 ·캠프	00꿈장학재단, 00000재단
교육지원 ·인재육성사업	별도 사업명으로 표기 (교육지원, 역량개발, 기자재 지원 등)	국가·지자체 ·기업	학교·단체 (학생 집단 간접 지원)	필요도 ·정책 방향	운영비 ·프로그램비	지방교육청 교육지원금, 기업 사회공헌 교육사업

*자료: 관계 법령 및 사례조사 후 재구성

동 교육지원금의 신규 편성은 본질적으로 「군인복지기금법」상 “장학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소지가 있음.[129]

129) 국방부는 교육지원금이 장학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지원금이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제2항 제3호와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군인 가족에 대한 격려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금 내 장병격려사업으로 전환하여 편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입장임.

○ 한편, 군인복지기금의 용도에 대해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부사관 및 준사관의 가족에 대한 위로 및 격려’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인복지기금은 군인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장학사업”이 아닌 “장병격려” 세부사업에 편성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군인자녀 온라인학습지원 예산(2026년도 예산안 일반용역비 11억 5,000만원)을 “장병격려사업”에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교육지원금은 군인복지기금법상의 법적 근거 규정을 고려하여 “장학사업” 세부사업이 아닌 “장병격려사업” 세부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3) 취업활동지원(2239-647) : 전반적인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성과 지향적 사업개편방안 마련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취업활동지원(2239-647)은 전역예정장병에 대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국방전직교육원을 통한 보조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임.

○ 취업활동지원사업의 2026년도 계획안에는 전년 대비 2억 9,300만원이 감액(△1.9%)된 148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내역사업인 취업활동지원에서 병력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찾아가는 진로도움프로그램 예산 12억 9,900만원 감액하였기 때문임.

[2026년도 취업활동지원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취업활동지원	15,149	15,184	14,891	14,891	△293	△1.9
전직교육원 운영	4,127	4,055	4,156	4,156	101	2.5
· 전직교육지원	4,116	4,289	5,063	5,063	774	18.0
· 취업활동지원	6,491	6,554	5,466	5,466	△1,088	△16.6
군직무표준화 추진	415	286	206	206	△80	△28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정부는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방전직교육원을 통해 취업활동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전직지원교육과 취업활동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그간 정부는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을 위하여 국방전직교육원의 전직지원교육과 취업활동지원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왔음.

특히, 정부는 2018년 73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나, 2020년부터 그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입해왔음.

[취업활동지원 사업비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사업비	7,372	11,939	15,337	15,184	14,891

*자료: 국방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46.6%였던 구직희망자의 취업률은 2024년 41.6%로 오히려 5.0%p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구직희망자 취업률 추이]

(단위: %)

구 분	2018	2019	2020	2022	2024
취업률	46.6	46.0	41.8	40.7	41.6

*주: 동 사업은 2022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일자리평가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목표와 실적을 기재하지는 않음. 다만,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업률을 산출하면, 2024년은 41.6%임.
*자료: 국방부

○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동 사업의 사업비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하락함에 따라 “국방부는 취업지원 사업 성과를 엄밀히 분석하여 성과 우수 사업에 한정된 예산을 과감히 투입하고, 성과 저조 사업은 폐지·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음.

이에 국방부는 시정조치결과로 구직 희망자 취업률을 제고토록 2024년도 예산안에 진로교육과 전직기본교육을 전직교육으로 일원화하였다고 답변하였음.

이는 국회가 시정요구한 취업활동지원사업 내역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성과 저조 사업에 대한 폐지·개편이 부분적으로만 이행되었음이 확인됨.[130]

○ 또한,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는 취업활동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대상별 사업내용의 선택과 집중

130)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 시 국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부분적 이행 노력만 이루어졌음”으로 평가

등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사업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음.

이와 같이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동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성 평가는 2022년도 결산과 2025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공통되므로, 국방부와 국방전직교육원은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지향적 사업으로의 개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방부와 국방전직교육원은 취업활동지원사업의 내역사업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세사업별로 효과성 측정이 가능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들로 신규기획하거나 확대하도록 종합적인 사업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군인연금기금

(1) 군인연금기금 : 연례적인 연금기여금 수입 과다 추계 등으로 인한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

(가) 예산안 개요

○ 군인연금기금은 직업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 등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군인연금법」[131]에 따라 설치된 기금임.

○ 군인연금기금의 2026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안에는 전년 대비 4,945억 1,700만원이 증액(10.7%)된 5조 996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수입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4조 1,095억 4,400만원, 연금기여금 7,851억 4,7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 전입금은 군인연금의 국가부담금이 1조 4,583억 100만원이며 급여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보전금이 2조 6,512억 4,300만원임.

지출은 퇴직급여가 4조 1,489억 2,700만원으로 81.4%를 차지하고

131)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부담금·보전금·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있으며, 퇴직수당이 4,183억 3,000만원, 재해보상급여가 1,422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기금관리비는 3억 8,700만원이며 나머지는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3,897억 5,200만원임.

[2026년도 군인연금기금운용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수 입	4,363,884	4,605,166	5,101,609	5,099,683	494,517	10.7%
관유물대여료	1,930	4,043	2,844	4,150	107	2.6%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8,376	54,136	15,307	30,894	△23,242	△42.9%
연금기여금	724,788	774,940	742,409	785,147	10,207	1.3%
기타경상이전수입	14,548	19,948	13,636	19,948	0	0.0%
일반회계전입금	3,416,961	3,702,094	4,277,413	4,109,544	407,450	11.0%
여유자금회수	167,281	50,005	50,000	150,000	99,995	200.0%
지 출	4,363,884	4,605,166	5,101,609	5,099,683	494,517	10.7%
퇴직급여	3,819,530	3,908,823	4,167,365	4,148,927	240,104	6.1%
퇴직수당	378,053	334,739	414,030	418,330	83,591	25.0%
재해보상급여	147,317	138,321	149,244	142,287	3,966	2.9%
기금관리비	315	353	442	387	34	9.6%
여유자금운용	18,669	222,930	370,528	389,752	166,822	74.8%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연금기여금(55-501)은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7.0%를 국고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2026년 계획안은 전년 7,749억 4,000만원 대비 102억 700만원이 증가한 7,851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기금 수입 및 지출항목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적정수준의 보전금을 지급받는 것이 기금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중요하나, 기금 자체수입의 주요 항목인 연례적인 연금기여금 수입에 대한 과다 추계 오차가 발생하였고, 2026년도 연금기여금 계획안도 과다 추계된 것으로 보임.[132)]

[연도별 연금기여금 수입 오차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기여금 납부인원(1~2월 평균)	오차율	오차금액
	당초	수정(A)						
'22	719,369	719,369	719,369	704,530	704,250	190,827	2.1	15,119
'23	736,572	736,572	736,572	716,779	716,779	190,527	2.7	19,793
'24	760,909	760,909	760,909	724,797	724,788	185,409	4.7	36,121
'25.8월	774,940	774,940	774,940	491,937	491,918	179,728	-	-
'26(안)	785,147	-	-	-	-	-		

*자료: 국방부

132) 연금기여금 수입이 실제보다 과다 추계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보전금 산정 규모가 감소되어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적자분을 보전하여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됨.

연금기여금 수입은 수납액 대비 2022년 151억 1,900만원(오차율 2.1%), 2023년 197억 9,300만원(오차율 2.7%), 2024년 361억 2,100만원(오차율 4.7%) 등 연례적으로 과다추계되었고, 과다추계 규모와 오차율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133)]

[2026년 연금기여금 수입 계획안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 계획	당초	774,940	• 기본기여금 : 748,532 - **인원 : 185,409명**('24년 1~2월 기여금 납입 평균인원) - 단가 : '24년 계획단가 × '25년 처우개선율 3% • 소급기여금 : 15,120 - 기본기여금×2.0%(최근 5년 기여금 대비 소급기여금 비율) • 기재부 수입 조정액 : 11,288
	수정	-	
2026계획안		785,147	• 기본기여금 : 748,514 - **인원 : 183,370명**('25년 계획인원 × 5개년 평균 기여금인원 증감률 △1.1%) - 단가 : '24년 실적단가 × '25년 처우개선율 3% × '25년 처우개선율 3.5% • 소급기여금 : 15,494 - 기본기여금×2.1%(최근 5년 기여금 대비 소급기여금 비율) • 기재부 수입 조정액 : 21,138

*자료: 국방부

133)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과다추계 규모와 오차율이 확대된 원인은 연금기여금 중 가장 규모가 큰 기본기여금 계획안을 해당 연도 1~2월 기여금 납부인원 평균 등을 활용하여 추계하였기 때문임. 구체적으로, 해당연도의 1~2월 기여금 납부인원 등을 활용하여 기본기여금 계획안을 추계하게 되면, 기여금 납부인원은 2023년부터 군간부 획득 저하 및 중견 간부들의 조기 퇴역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여금 납부인원이 연말이 되면 감소추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계획 납부인원이 다음연도의 실제 납부인원보다 과다하게 산정됨.

○ 2026년도 연금기여금 계획안은 추계방식을 변경하여 ‘25년 기본기여금 계획인원 185,409명과 최근 5개년 평균 기여금인원 증감률 △1.1%을 적용하여 계획인원 183,370명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음.

그러나, 최근의 군 간부 획득률 및 조기퇴역 간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충원률 감소[134] 등의 추세 지속으로 인하여 기여금 납부인원은 2024년 1월 185,881명에서 2025년 1월 180,226명, 2025년 8월 177,55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이미 2026년 계획안의 편성근거인 2025년 계획인원 185,409명은 2025년 1월 180,226명보다 5,000명 이상 많아서 내년도 기여금 수입의 납부인원의 기준으로 할 경우, 2026년도 연금기여금 계획안도 예상 수납액에 비하여 과다편성될 소지가 있음.[135]

[최근 월별 연금기여금 납부인원]

(단위: 명)

구 분	1월	2월	7월	8월
2024년 기여금납부인원	185,881	184,929	182,634	182,314
2025년 기여금납부인원	180,226	179,226	177,918	177,550

*자료: 국방부

134) 군 충원율은 2022년 100.1%, 2023년 95.5%, 2024년 93.6%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초급간부 및 중견간부의 충원율 저하와 해군 및 해병대 등을 중심으로 병 충원율 저하가 주요 원인임.
135) 국방부도 ’26년 기여금(안)은 예상 수납액 대비 과다 추계되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힘.

○ 이와 같이 2026년도부터 연금기여금 계획안의 추계방식을 변경하였으나. 2025년 계획인원을 기준으로 기본기여금을 추계함에 따라 수입이 과다편성됨.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기여금 납부인원(군 간부인력) 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연금기여금 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의 연례적인 연금기여금 수입 과다 추계와 2025년도까지 지출항목인 퇴직급여[136]와 퇴직수당의 과소 추계 등으로 인하여, 기금 계획 수립 시 국가보전금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과소 편성되고 있음.

이로 인해 기금적립금 규모는 2021년 1조 3,408억원에서 2024년 8,90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기금적립률은 2021년 4.6개월에서 2024년 2.5개월로 감소했음.

국방부는 기금적립금의 적정 수준을 연금지출액의 6개월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나,[137] 최근 군 간부 이탈 등에 따라 예상치 못

136)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퇴직급여는 집행액 대비 계획액이 4,228억 5,600만원 과소편성되었고, 퇴직수당은 집행액 대비 계획액이 1,516억 6,500만원 과소편성되었음.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와 2026년도 계획안 수립 시부터는 단계적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추계하여 반영하고 있음.

137)국방부는 '16년도에 실시한 '군인연금기금 책임준비금의 적정규모 기준설정 연구'에서 군인연금의 경우 정부의 추가적인 적립 없이 1년치 연급지출액을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으며, 기금의 상황 및 여건을 반영하여 연급지출액의 6개월치를 기금적립금의 적정 규모로 제시하였음.

한 퇴직급여 지출에 기금 적립금을 우선 충당한 결과, 퇴직급여 등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 적립률 수준인 3개월에도 미달함에 따라 전반적인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낮아지고 있음.[138]

[연도별 기금적립금]

(단위: 억원, 개월)

연도	급여지출액	기금적립금 (부동산+금융자산)	기금 적립률 (기금적립금/연 급여지출액)
2021	35,327	13,408	4.6개월
2022	37,258	12,003	3.9개월
2023	40,785	10,304	3.0개월
2024	43,449	8,903	2.5개월

*자료: 국방부

○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연금기여금 수입 등을 포함한 수입 및 지출 항목들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은 추계방식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적정 국가보전금을 수입계획안에 반영함으로써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139]

138) 국방부는「군인연금법」제48조 4항에 따라 연금지출에 사용한 적립금을 차차년도 보전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전금 확보시 재정건전성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139) 국방부는 2026년도 수입계획안의 일반회계 전입금인 국가보전금이 증액심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기여금수입만을 국회에서 감액심사하는 것은 군인연금 수입 확보 측면에서 곤란하므로, 향후 2027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부터 연금기여금 등의 추계방식을 개선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